



2022.8.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한예슬 예산분석관
심성택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자영 행정실무원
주석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에 산정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5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

II. 주요 현안 분석

1.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4
1-1. 정확한 정보조사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수 제고 및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8
1-2. 사업 기반 환경에 대한 검토 미흡에 따른 부적절한 사업 설계 주의 필요	26
1-3.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의 재정립 필요	34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사업 분석	38
2-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43
2-2. 지방비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50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의 전용 예산 규모 및 수익계약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54
2.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사업의 확산대상사례에 대한 검토 강화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통합 방안 마련 필요	61
3.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의 사업 추진 체계 점검 필요	70
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76
5.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목적·내용이 다른 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주의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83
6. 공공시설옥상녹화 사업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사업운영방안 마련 필요	96
7.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01
8.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108
8-1.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면밀한 설계 및 공공기관 배정방식 개선·성과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111
8-2. 공공빅데이터 인턴십사업의 사업준비 미흡 및 운영방식 개선 필요	118
9.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125
10.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33

[인사혁신처]

I. 결산 개요

- 1. 현 황 141
-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8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9

II. 주요 현안 분석

- 1. 공무원연금 150
 - 1-1.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 운용 현황 및 재정수지 154
 - 1-2.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대출가능 총액 확대 검토 필요 등 158

III. 개별 사업 분석

- 1. 국가공무원 시험관련 물품 구매·제작비용 집행방식 개선 필요 165
- 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품질 제고 노력 필요 170

[경찰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175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0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1

II. 주요 현안 분석

- 1.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82
 - 1-1.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187
 - 1-2. 자치경찰 예산 및 업무의 구분 명확화 필요 191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위기청소년 선도 활동 사업의 치유선도 인프라 확충 필요 199
- 2. 국제치안활동강화(ODA)의 부적절한 예산 이월 및 선금 지급 주의 필요 205
-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지자체 협의 강화 및 집행률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211
- 4.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사업의 운영수량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부처간 협의 강화 필요 218
- 5. 전기공급시설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전기공급시설 활용방안 검토 필요 2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결산 개요

- 1. 현 황 233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7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8

II. 주요 현안 분석

- 1. 위탁선거관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39

III. 개별 사업 분석

- 1. 대통령선거관리사업 분석 251
 - 1-1. 위법행위 예방단속 예산의 과다 편성 개선 필요 253
 - 1-2. 대통령 선거 예산 편성 및 배정시기의 법적 정비 필요 258

[소방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265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69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70

II. 개별 사업 분석

1.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설치 계획 미흡	271
2. 시·도 소방장비도입 시 계약절차 개선 검토 필요	274
3.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사용 집행관리 필요	278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17억 8,300만원이며, 3,977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7.8%인 2,696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1,281억 6,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9,339	59,339	59,339	389,284	264,208	125,068	8	67.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444	2,444	2,444	8,498	5,399	3,099	0	63.5
합계	61,783	61,783	61,783	397,782	269,607	128,167	8	67.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2조 6,507억 3,6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72조 4,484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856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63억 8,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6,746,184	71,828,244	71,910,592	71,735,638	59,261	115,396	99.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698,883	698,883	740,144	712,810	26,349	985	96.3
합계	57,445,067	72,527,127	72,650,736	72,448,448	85,610	116,381	99.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322억 8,400만원(507.3%)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5,498	61,783	61,783	397,782	335,999	332,28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68,949,213	57,445,067	72,527,127	72,448,448	△78,679	3,499,23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다.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산은 11조 4,582억 900만원, 부채는 1,167억 9,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1조 3,414억 1,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335억 8,000만원, 투자자산 101억 6,300만원, 일반유형자산 10조 9,417억 7,600만원, 무형자산 2,684조 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2억 8,000만원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667억 2,000만원(9.2%)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7,854억 7,9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반납액 관련 미수채권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자산 1,016억 3,800만원 증가 및 소프트웨어 취득 등에 따른 무형자산 767억 5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63억 3,500만원, 장기차입부채 593억 5,300만원, 장기충당부채 11억 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72억 200만원(17.3%)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금융리스 계약 증가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64억 2,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1,458,209	10,491,489	966,720	9.2
Ⅰ. 유동자산	233,580	131,942	101,638	77.0
Ⅱ. 투자자산	10,163	7,810	2,353	30.1
Ⅲ. 일반유형자산	10,941,776	10,156,297	785,479	7.7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68,409	191,704	76,705	40.0
Ⅵ. 기타비유동자산	4,280	3,736	544	14.6
부 채	116,792	99,590	17,202	17.3
Ⅰ. 유동부채	56,335	55,167	1,168	2.1
Ⅱ. 장기차입부채	59,353	42,930	16,423	38.3
Ⅲ. 장기충당부채	1,105	1,349	(244)	(18.1)
Ⅳ. 기타비유동부채	0	144	(144)	(100.0)
순 자 산	11,341,417	10,391,899	949,518	9.1
Ⅰ. 기본순자산	4,043,523	4,043,523	0	0
Ⅱ. 적립금및잉여금	2,517,244	2,680,844	(163,600)	(6.1)
Ⅲ. 순자산조정	4,780,650	3,667,532	1,113,118	30.4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4조 326억 2,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74조 646억 3,800만원, 관리운영비 4,176억 600만원, 비배분비용 5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22억 8,300만원, 비배분수익 4,378억 9,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조 2,017억 6,700만원(7.6%) 증가한 74조 326억 2,200만원이며, 총 2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부세프로그램(59조 1,699억 2,600만원)과 지방재정경제프로그램(9조 8,732억 1,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970억 8,300만원과 경비 1,205억 2,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등 기타비용 5억 5,300만원, 비배분수익은 지출금반납금 3,671억 1,400만원,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 623억 3,200만원 및 기타

수의 84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74,052,355	68,491,746	5,560,609	8.1
가. 프로그램총원가	74,064,638	68,501,624	5,563,014	8.1
나. 프로그램수익	12,283	9,878	2,405	24.3
II. 관리운영비	417,606	407,999	9,607	2.4
III. 비배분비용	553	518	35	6.8
IV. 비배분수익	437,892	69,408	368,484	530.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74,032,622	68,830,855	5,201,767	7.6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74,032,622	68,830,855	5,201,767	7.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0조 3,918억 9,9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11조 3,414억 1,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495억 1,800만원(9.1%) 증가 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74조 326억 2,2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1조 1,131억 1,800만원 발생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73조 8,690억 2,2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 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 달 등 재원의 조달 74조 1,460억 7,6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 의 이전 2,770억 5,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이익 1 조 1,131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 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0,391,899	9,977,536	414,363	4.2
II. 재정운영결과	74,032,622	68,830,855	5,201,767	7.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3,869,022	69,039,977	4,829,045	7.0
IV. 조정항목	1,113,118	205,242	907,876	442.3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1,341,417	10,391,899	949,518	9.1

자료: 행정안전부

라. 재정 구조

2021 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결산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1건(예비비 7,322백만원) 이었다.

[2021 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예산안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②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③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고도화 사업**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내역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의 실소요 등을 고려해 188억원이 감액(931억원→743억원)되었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도 사업의 이월, 불용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규모를 1,000명(12%)축소하여 감액(1,997억원→1,863억원)되었고,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고도화 사업은 행정기관 5G망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기관을 축소(10개→5개)하여 90억원 감액(241억원→151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재난대책비 사업**, ② **정보보호 인프라구축 사업**, ③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재난대책비 사업은 '20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상황을 위하여 6,200억원이 증액(2,000억원→8,200억원)되었고, 정보보호인프라구축 사업은 '21년 모바일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하여 101억원이 증액(100억원→201억원)되었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은 파주 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등 추가 소요를 반영하여 95억원이 증액(959억원→1,054억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집행성과 및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으로 **희망근로지원 사업** 이 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 생계지원 공공일자리 제공의 필요가 있어 2,13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으로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③ **희망근로지원 사업** 등이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8조 6,22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지원 규모 확대(15조→20조) 필요성이 있어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1,4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희망근로지원 사업**,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 내 방역관리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역인원(5~10인)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한다.”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가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① 국민주도 사회적 문제해결 확산과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해 **열린혁신 선도**, ② 지자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증진**,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한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 ④ 정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과학수사의 신뢰 제고**, ⑤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⑥ 재난대응·안전역량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하여 ① 정확한 정보조사·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수제고 및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② 사업 기반환경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에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 설계 시 제반 환경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수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③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전환 목표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균특회계)사업과 관련하여 ①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으로 기존 사업과 사업목적·내용 등이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이를 명시 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②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사업의 도입 취지·내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건설훈회계의 제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③ 사업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업준비가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이월 예산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등의 정보자원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IT 자원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어 긴급하고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규모 전산실¹⁾에 비해서 대규모 민간클라우드 시설이 보안관리 수준이 높다는 점, 민간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클라우드 이용 경험 부족,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미흡 등을 이유로 그 동안의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은 활성화 정책에는 한계²⁾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³⁾에서 클라우드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중 내용연수(6년 이상)를 경과한 정보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5년 동안 8,741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10,009개)⁴⁾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 1)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산실 중 60% 이상이 소규모 전산실(100㎡ 미만)로서, 지진, 재해복구 및 장애 대처 역량이 미흡하여 보안침해사고 우려가 있다.
- 2) 국가정보화예산 대비 클라우드 이용금액이 미국은 2021년 기준 12.1%이나 국내는 2020년 기준 1%였다.(「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p.9)
- 3) 2021.9.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4) 대상 정보시스템은 전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15,369개 중 클라우드 전환을 별도

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⁵⁾

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전체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IT방식을 기준으로, 클라우드사업자가 관리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범위의 차이에 따라 클라우드는 IaaS, PaaS, SaaS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유형과 관계없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클라우드의 유형 분류]

직접구축	IaaS	PaaS	Saa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SW (DB, WEB/WAS 등)			
운영체제	운영체제	운영체제	운영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

이용기관이 관리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

자료: 행정안전부

클라우드에는 공공클라우드⁶⁾와 민간클라우드가 있다. 국가안보, 수사·재판, 내

로 추진 중인 정보시스템(차세대지방세시스템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국가 클라우드센터에 입주해 있는 시스템, CCTV 등 특정 장소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등을 제외하고 물량을 산출하였다.

5)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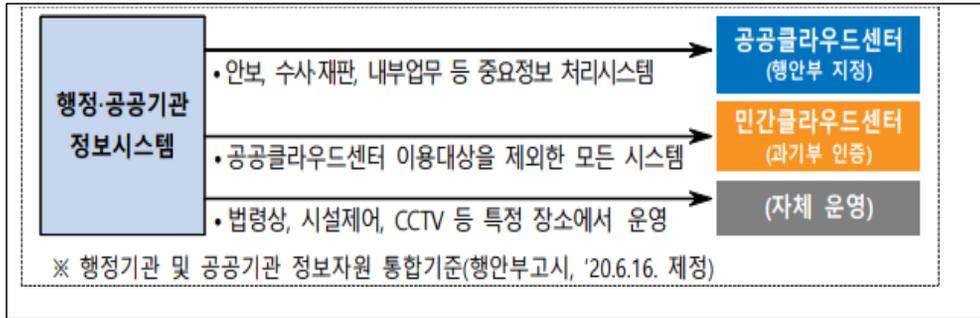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G-클라우드를 의미한다.

부업무 처리 등을 다루는 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클라우드센터, 이를 제외한 정보시스템은 보안 및 안정성을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기본적 구조였다.

[기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공공/민간클라우드 이용 분류]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정부는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⁷⁾하고, 보안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공공클라우드 또는 민간클라우드⁸⁾로 전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는 전체 클라우드⁹⁾로 전환하는 행정·공공기관 시스템의 97% 이상⁸⁾을 민간클라우드⁹⁾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25억원의 예산으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자원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전환비용 및 전환용이성 등 정보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 통합시기를 결정하여 모든 정보시스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⁹⁾하였다.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7호, 2022. 3. 31., 전부개정)

8) 2022년 전환 목표인 2,149개 정보시스템 중 2,100개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⁹⁾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9)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자원이 6년 이상 경과하고 클라우드⁹⁾전환 소요 비용과 특정 제품 의존도가 낮은 시스템을 우선 이전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2021년 발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환 대상시스템	10,009	430	2,149	3,169	1,892	2,369
예산	874,171	57,000	240,193	235,084	123,945	217,949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이러한 계획은 정보시스템 보유·운영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수요가 직접 반영된 계획은 아니고, 정보자원의 내용연수, 연계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클라우드 전환 물량 계획이다. 예를 들면, 2021년에는 430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상 시스템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매년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독려하여 430개의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전환되는 실제 정보시스템 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목표 수치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1. 정확한 정보조사·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수 제고 및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¹⁾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신규 사업이다. 2021년 예산 570억원 중 569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34,769	134,769	0	0	134,769	133,057	134	1,578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129,394	129,394	0	0	129,394	127,954	132	1,308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57,000	57,000	0	0	57,000	56,954	0	45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을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된다.

1)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7)의 내역사업인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의 내내역사업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비목	예산액	집행액
클라우드 전환사업	행정·공공기관 등이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출연금 (350-02)	54,935	54,935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민간 클라우드 초기이용료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000	2,000
사업운영 경비	기관설명회, 대상기관 방문 등	행정안전부	일반수용비 (210-01) 등	65	19

자료: 행정안전부

이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출연금이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이 소규모 전산실에서 직접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2021년 사업출연금은 예산 549억 3,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환추진계획 로드맵은 정보시스템 보유·운영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수요가 직접 반영된 계획은 아니고, 정보자원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클라우드 전환 물량 계획이므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사업 실시 이전에 정보자원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 여부, 대상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현재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하고,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요소 등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도출하는 ‘상세설계’를 진행한다. 상세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이관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환사업을 거쳐 클라우드 전환이 마무리되면, 행정·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에게 매년 내게 되는 구독료 중 1년간의 구독료를 행정안전부가 지원한다.

[클라우드 전환사업 사업추진 절차]

절차	물량확보	상세설계	전환사업	이용료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전환계획 ▶수요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대상 선정 ▶전환 설계 ▶전환 예산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계획 수립 ▶사업발주 ▶전환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료 지원(1년)
관련 예산 지원	-	상세설계비	클라우드 설치비, AP전환비, 상용라이선스비, 데이터이관비,	1년간의 이용료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 중 실제 전환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시스템의 비율이 높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 조사 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세설계 완료 후 전환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는 430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여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2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만 전환사업을 추진하였고, 128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적행률은 52.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클라우드 전환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구분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클라우드 전환사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4,935	0	54,935	28,816	26,119	0	52.5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클라우드 전환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 계획과 실적]

(단위: 개)

구 분		계획	실적
계		430	302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42	10
	지자체	144	106
	공공기관	244	186

자료: 행정안전부

미전환 시스템인 128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전환사업 추진 대상 시스템으로 확정하였으나, 상세설계만 완료하고 전환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각 시스템의 미전환 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연관 서버의 존재하는 경우²⁾ 72개, 다수의 연계시스템이 존재³⁾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⁴⁾ 22개, 클라우드 이용료가 부담되는 경우 34개 등이다.

[2021년 클라우드 전환사업 미전환 물량 사유별 현황]

(단위: 개)

구 분	미전환 물량 합계	내용연수 미도래 연관서버 존재	다수 시스템 연계, 특정 SW 종속 등	클라우드 이용료 부담
시스템 수	128	72	22	34

자료: 행정안전부

먼저,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목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이전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년에 클라우드 전환이 불가능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430개 정보시스템을 조사하여 2021년 전환 추진 대상 시스템으로 확인한 이후, 상세설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상세설계 결과, 정보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 전체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 2) 하나의 정보시스템은 여러 개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시스템이 사용 중인 서버 중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서버가 존재하거나, 해당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타 정보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3) 해당 시스템이 다수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운영되어, 해당 시스템만의 클라우드 전환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클라우드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4) 오라클 등 클라우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어 클라우드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서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거나, 해당 시스템과 연계된 타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스템이 미전환물량 128개 중 72개였다. 또한, 사업대상인 시스템이 다수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어 클라우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22개였다.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목록을 제출받고 있으나, 시스템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시스템 사용 서버의 내용연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세부 정보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정 수준의 오차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에는 이러한 정보 파악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세설계만 진행하고 전환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게 된 시스템이 전체 목표 물량인 430개 중 94개(21.9%)⁵⁾로 그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관 서버, 시스템의 유형 등을 행정·공공기관 등에 조사 시 미리 공지하여 내용연수가 미도래한 연관 서버·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업 추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시스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21년에 상세설계 사업 추진 이후 이용료 부담을 이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시스템도 34개 있었다. 행정·공공기관은 상세설계⁶⁾ 이후에야 현재 보유·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향후 지출해야 하는 클라우드 이용료의 규모를 알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첫 1년은 이용료를 지원해주지만, 매년 발생하는 클라우드 이용료는 그 이후에도 행정·공공기관의 부담이 되므로, 기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이용료의 규모가 클라우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행정·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 전환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용료가 기존 시스템의 1

5) 미전환물량 128개 중 클라우드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지 않은 34개를 제외한 수이다.

6) 상세설계는 현재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하고,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요소 등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년간 유지보수 비용보다 많아 전환 여부 및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2021년 클라우드 전환 상세설계 결과 산출된 이용료 사례]

(단위: 원)

기관명	정보시스템명	AS-IS	TO-B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연이용료)								
		1년 유지보수비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관제, 운영지원	시스템 SW	SW 기술 지원료	합계
○○ 군	○○○ 홈페이지	2802,470	1,663,200	264,000	594,000	1,320,000	3,696,000	5,280,000	0	9,900,000	22,717,200
△△ 군	△△ 시스템	695,200	831,600	264,000	858,000	1,320,000	1,848,000	2,640,000	0	1,320,000	9,081,600

주: AS-IS의 1년 유지관리비는 백업, 네트워크, 보안, 관제·운영지원 항목은 제외됨(기관 단위에서 네트워크, 보안 등 기본 인프라는 공통으로 유지관리 중)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세설계만 완료하고 클라우드 이용료 부담을 이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행정·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환사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보시스템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이용료 규모의 적정성 및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최적 시기 등에 대한 검토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다. 다만,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상세설계를 완료한 이후 전환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스템이 많아질 경우 예산의 불용 규모가 커지게 되며, 상세설계를 완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스템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세설계를 다시 진행하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에 상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전환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전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 시스템 목록을 관리하고, 해당 시스템을 보유·운영하는 행정·공공기관과 클라우드 전환사업 추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및 클라우드 업체와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클라우드 이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동 사업은 수요조사, 상세설계, 전환사업, 이용료지원의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수요조사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2021년 예산에 반영된 비용은 상세설계, 전환사업, 이용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전환사업 2021년 평균적인 사업추진 시기]

절차	물량확보	상세설계	전환사업	이용료 지원
2021년 사업 시기	전년도 하반기 수요조사	2월 발주의뢰 3월 발주 4월 상세설계 계약	7월 이후 발주 10월 이후 전환사업 계약	전환완료 후 1년간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클라우드 전환사업 사업의 ‘평균적인’ 추진 시기를 살펴보면, 발주절차 등으로 인하여 상세설계를 4월에야 시작하였고, 상세설계 완료 후 다시 전환사업의 발주 절차를 거쳐 10월 이후에야 전환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환사업은 22년 6월말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2022년 9월까지 지원 예정이며, 이용료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될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가 선행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전환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 구조로 각 사업의 조달절차에만 각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사업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⁷⁾

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 전환사업, 이용료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회계연도에 완료하도록 2021년 사업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2021년 상세설계·전환사업의 발주시기 및 실제 사업추진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빨리 전환사업을 추진한 1차 전환사업 발주 물량의 경우⁸⁾에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

7)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시스템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질병청 정보시스템을 긴급하게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사업계획이 긴급하게 변경됨에 따라 수행기간이 추가 이연되었다.

8) 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시스템별로 상이함에 따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환사업은 21년 7월부터 22년 2월까지 4차례에 나누어 실시하였다.

는 등 연도 내에 모든 단계를 마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2021년 상세설계·전환사업의 발주시기 및 실제 사업추진기간]

	구분	발주시기	추진기간
상세설계	상세설계(1차)	'21.2월	'21.4월 ~ '21.12월
	상세설계(2차)	'21.10월	'22.1월 ~ '22.5월
전환사업	1차	'21.7월	'21.10월 ~ '22.2월
	2차	'21.8월	'21.11월 ~ '22.4월
	3차	'21.10월	'21.11월 ~ '22.5월
	4차	'22.2월	'22.4월 ~ '22.9월
이용료 지원	전환사업 추진 완료 이후 1년 간 이용료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전체 사업소요기간과 회계연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2021년회계연도의 실적행률은 상세설계 41%, 전환사업(이용료지원을 포함한 금액) 5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클라우드 전환 사업 각 단계별 지원예산 2021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단계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상세설계	8,697	8,697	0	8,697	3,570	41
전환사업 (이용료지원포함)	42,023	42,023	0	42,023	21,867	52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설계 시 각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각 단계의 조달 소요 기간·사업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연차별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9)

9)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3년부터는 사업 1차년도에는 상세설계단계와 전환단계를, 2차년도에는 이용료 지원단계로 구분할 계획이다.

1-2. 사업 기반 환경에 대한 검토 미흡에 따른 부적절한 사업 설계 주의 필요

가. 현 황

행정안전부는 2021년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¹⁾의 예산(570억원) 중 2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예산 20억원 중 13억 5,000만원은 집행하고, 6억 5,000만원은 불용하였다.

[지자체의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2,000	1,350	0	650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클라우드 중 S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기 이용료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기업이 구축·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클라우드를 의미한다.²⁾

1)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7)의 내역사업인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의 내내역사업

2) 15p. 표(클라우드의 유형 분류) 참고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와 SaaS와의 차이]

구분	정보시스템 직접구축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구매유형	라이선스 구매 (SW 인증서, 라이선스 증서)	서비스 구매(이용약관)
인프라 구축·관리	사용자가 인프라 구축·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 이용
비용유형	구축비(HW/SW구매, 개발), 운 영비(유지관리, 인건비 등)	서비스 이용료 지불 (월단위 또는 년단위)
초기비용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초기 자본투자 필요	없음 (별도의 IT 인프라 구축 필요없음)
서비스 운영비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발생 시 추가비용 발생	없음(서비스 이용료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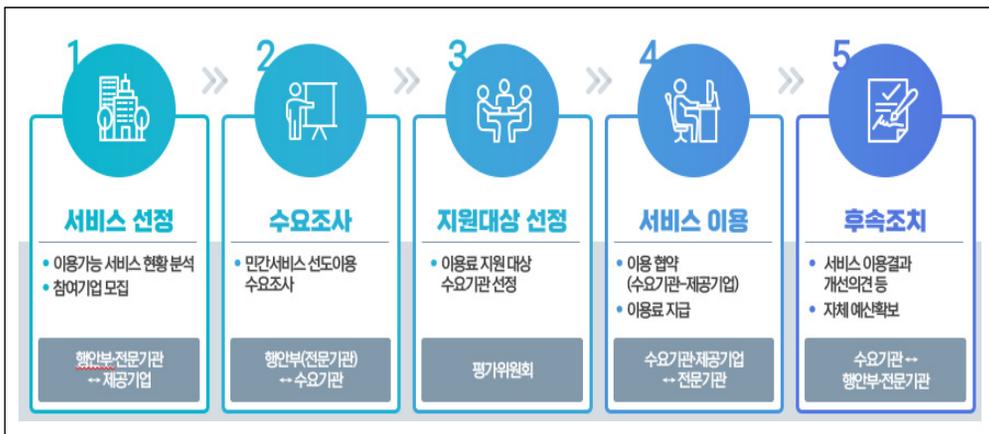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사업 기반 환경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에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 설계 시 민간 시장 현황, 법제도 등 사업 기반 환경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수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먼저 이용가능한 SaaS서비스를 선정하고, 민간서비스 선도이용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조사한 후,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과 클라우드 전문업체가 이용 협약을 맺으면, 해당 협약에 따라 수요기관이 지급해야하는 1년간의 초기 이용료를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주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사업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활용에 용이한 SaaS 서비스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SaaS는 클라우드 기업이 구축·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방자치단체는 이용료를 지급하고 사용만 하는 형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SaaS의 목록을 보고 필요한 기능에 해당하는 SaaS를 선택하여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4월 기준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SaaS의 수는 23개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SaaS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³⁾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해당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의 전체 수가 23개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를 획득한 SaaS 목록]

번호	서비스명	제공기업	개요
1	G-Cloud 메일솔루션	(주)메일플러그	공공기관 전용 메일서비스
2	M-Console SaaS	인프라닉스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장애예방 등)
3	WEHAGO V(위하고-V)	(주)더존비즈온	공공업무시스템-협업서비스(메신저, 일
4	이체크폼	(주)솔비텍	정관리, 메일 등)
5	TOAST-G Workplace Dooray!	엔에이치엔	전자행정 서식 솔루션
6	크리니티 G-Cloud 공공메일	크리니티(주)	협업 도구서비스(프로젝트, 메신저, 메
7	이젠티치	(주)두드림시스템	일, 화상회의 등)
8	이젠티이	(주)두드림시스템	공공메일 서비스
9	보다(영상회의)	(주)새하컴즈	도서관/자료실 업무 자동화 등
10	StrategyGATE	이즈파크	장난감 관리/대여 업무 자동화 등
11	System Security Checker	네이버클라우드	화상회의, 세미나 플랫폼
12	Web Security Checker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성과관리 솔루션
13	엔로비 방문예약시스템	(주)엔로비	운영체제·WAS 보안 설정 점검
14	AI챗봇 카카오 커넥트톡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웹서비스 주요 취약점 자동 진단
15	M.Cloud 지능형관제 서비스	지케스	방문객 출입관리
16	AI의료영상분석보조서비스	(주)엘지씨엔에스	기술융합 AI챗봇 서비스
17	KT GiGAsafe 스마트시설관리서비스	(주)케이티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관제서비스
18	Security Monitoring	네이버클라우드	폐질환 관련 의료영상분석 서비스
19	HR솔루션 inAIR(채용)	(주)마이더스인	재난 대응 종합 안전관리서비스
20	HR솔루션 inAIR(인사관리)	(주)마이더스인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화 보안 서비스
21	Jump	(주)이메인텍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플랫폼
22	비디오헬프미(Videohelp.me)	클라운지	맞춤형 인사평가 및 성과관리 솔루션
23	VURIX-Cloud	이노덱	공공기관용 설비·시설관리 솔루션

자료: 행정안전부

3) 해당 가이드라인은 '22.3월에 폐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정('22.3월)

또한, 보안인증을 받은 SaaS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였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로 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도 등과 연계해야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내부 업무시스템을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간 SaaS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기 어려웠다.

[내부업무시스템과 클라우드 관련 보안 방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0조제1항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6조제4항

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제2절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보안기준

보안 기본원칙

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본원칙

- 업무망·인터넷 분리 원칙에 따라 기관의 내부 업무시스템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서는 안됨

제3절 SaaS 환경 보안기준

보안 기본원칙

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본원칙

- 외부 공개용 SaaS 영역은 내부 업무용 SaaS 영역과 분리되어야 함
 - 외부 공개용 SaaS 가상머신은 DMZ 영역 내에 위치
 - 외부 공개용 SaaS 영역과 내부 업무용 SaaS 영역 간에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적었고, 행정안전부는 사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2021년 기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의 경우 내부 업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업무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였음에도 2021년 예산의 20억원 중 13억 5,000만원(67.5%)만 집행되고, 6억 5,000만원은 불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민간클라우드 선도이용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분류	기관명	도입 SaaS	제공기업	집행액
지 자 체	강원도	WEHAGO V(협업)	더존	149
	구리시	AI 의료영상분석보조서비스	엘지씨엔에스	16
	군산시	M.Cloud 지능형 관제서비스	지케스	206
	세종시	M.Cloud 지능형 관제서비스	지케스	41
	세종시	AI 챗봇 카카오키넥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200
	안산시	AI 의료영상분석보조서비스	엘지씨엔에스	43
	제주시	AI 챗봇 카카오키넥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200
	충주시	보다(영상회의)	새하컴즈	12
	파주시	이젠터치(도서관관리)	두드림시스템	18
		소 계		
공 공 기 관	김대중컨벤션센터	크리니티G-Cloud 공공메일	크리니티	8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엔로비(방문객 예약·출입관리)	엔로비	15
	대구도시철도공사	보다(영상회의)	새하컴즈	12
	부산관광공사	HR솔루션 in AIR(인사관리)	마이다스인	28
	부평구시설관리공단	JUMP(공공기관 설비·시설관리)	이메인텍	2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JUMP(공공기관 설비·시설관리)	이메인텍	2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체크폼(전자행정서식)	솔비텍	17
	수원도시공사	G-Cloud 메일 솔루션	메일플러그	13
	수원도시공사	KT GIGAsafe스마트시설관리	케이티	21
	안양도시공사	JUMP(공공기관 설비·시설관리)	이메인텍	20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이체크폼(전자행정서식)	솔비텍	17
	원주시시설관리공단	JUMP(공공기관 설비·시설관리)	이메인텍	20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체크폼(전자행정서식)	솔비텍	17
	이천시시설관리공단	G-Cloud 메일 솔루션	메일플러그	10
	인천교통공사	크리니티 G-Cloud 공공메일	크리니티	15
	제주관광공사	Dooray!(협업)	엔에이치엔	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KT GIGAsafe스마트시설관리	케이티	35
	충북개발공사	크리니티G-Cloud 공공메일	크리니티	8
군포도시공사	크리니티G-Cloud 공공메일	크리니티	6	
	소 계			29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 설계 당시 내부 업무 시스템과 SaaS의 연계가 국
정원의 보안 방침에 따라 어렵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기반 환경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에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 설계 시 민간 시장 현황, 법·제도 등 사업 기반 환경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수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의 재정립 필요

가. 현 황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민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정보자원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전환비용 및 전환용이성 등 정보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통합시기를 결정하여 모든 정보시스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¹⁾하였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2021년 발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환 대상시스템	10,009	430	2,149	3,169	1,892	2,369
예산	874,171	57,000	240,193	235,084	123,945	217,949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이러한 계획은 정보시스템 보유·운영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수요가 직접 반영된 계획은 아니고, 정보자원의 내용연수, 연계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클라우드 전환 물량 계획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 물량 계획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실제 추진계획은 조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430개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302개 정보시스템만 전환하였고, 2022년 물량 계획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목표 2,149개에서 1,590개로 조정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감액된 물량은 추가경정예산 당시인 2022년 5월까지 설계발주가 되지 않은 물량 559개였다.

1)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자원이 6년 이상 경과하고 클라우드전환 소요 비용과 특정 제품의 존도가 낮은 시스템을 우선 이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에 따른 추진계획 변경 현황]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당초	10,009	430	2,149	3,169	1,892	2,369	-	-
예산 (백만원)	874,171	57,000	240,193	235,084	123,945	217,949		



조정 예산 (백만원)	10,009	302	1,590	2,311	2,295	2,127	1,384	
예산 (백만원)	1,257,864	57,000	178,693	162,615	259,066	279,897	240,581	80,012

주: 물량계획과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물량과 투입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전환 목표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²⁾에서 클라우드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추진됐던 302개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전환유형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부분만 클라우드로 전환한 IaaS 유형의 경우가 297개였고,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까지 클라우드로 도입한 SaaS 유형은 5개였다.

[2021년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클라우드 유형별 도입 현황]

유형	IaaS	PaaS	SaaS
전환 시스템 수	297	0	5

자료: 행정안전부

²⁾ 2021.9.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021년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SaaS 도입 현황]

구분	수요기관	이용 서비스
1	서귀포시	이젠티치(도서관관리)
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3	영화진흥위원회	
4	도로교통공단	크리니티 G-Cloud 공공메일
5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일반 서버·스토리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IaaS 유형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용료 과금정산 방식부터 내부 업무 절차와 조직 운영 특성 등 여러 부문에서 민간 시장과 차이가 많은 공공부문 시장에 SaaS 사업자가 기존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솔루션을 제공하기엔 제약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SaaS를 도입하기 위해 2021년 추진한 민간 클라우드 선도이용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의 SaaS 공급여건, 국정원 보안지침에서 제시하는 망분리 보안요건이라는 법적·제도적 제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IaaS가 필요한 정보자원의 양만큼 서버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IaaS로의 전환이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다 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³⁾ 그러나, 단순히 운영 서버·스토리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 시스템과 기능적인 의미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은 SaaS를 활용해 인공지능(AI)나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IaaS뿐만 아니라 SaaS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단순히 5년 내에 전체를 공공부문의 모든 정보자원을 전환하겠다는 단순한 시스템 단위의 물량계획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법적·제도적 제약을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환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제반요건

³⁾ 클라우드 전환 이후 CPU(Core 수)는 47.3%, Memory(GB)는 46.8% 절감

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제약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환사업 추진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에 대한 총괄부처로서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2021년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¹⁾ 사업과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²⁾ 사업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맞춤형 납세서비스의 도입, 업무절차 간소화, 수기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주요기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체납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3,14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3년 개통, 2027년까지 3,45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간 세외수입 정보 공동 활용 및 체납관리 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까지 31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개통 계획이었으나, 역시 사업 지연 등으로 2023년까지 426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333-500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1333-503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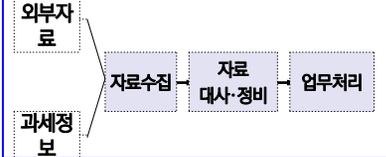
시스템명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부사업	지방세정보화추진	차세대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시스템 개요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리시스템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등 처리시스템
시스템 방식	클라우드 기반 통합 환경	
시스템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납세서비스 등 대국민 납부 편의 개선 · 업무절차 간소화 및 수기업무 자동화 ·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공간정보 융합 등 신기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 징수, 체납 등을 단일 시스템으로 처리 · 지자체간 세외수입 정보 공동활용 및 체납관리 기능 강화
총사업비 (지방비포함)	당초: 3,144억원 (구축비 1,608억, 운영비 1,536억) 변경: 3,451억원 (구축비 1,743억, 운영비 1,708억)	당초: 315억원(구축비) 변경: 426억원(구축비)
사업 기간	당초: (구축) 2019년~2021년 (운영) 2022년~2026년 변경: (구축) 2019년~2022년 (운영) 2023년~2027년	당초: 2019년~2021년 (구축) 변경: 2019년~2023년 (구축)

주: 2021년 12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이라 한다.) 개발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 표준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세 납부서비스(위택스) 또는 자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지방세 등을 관리해왔다.³⁾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연계해 납세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기반 통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³⁾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

[차세대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변화(지방세 분야)]

구분	현세대(As-Is)	차세대(To-Be)
납세자 정보 통합	자치단체별 납세자 정보 분산관리	전국 납세자 정보 통합 일원화
물건 통합 관리	<p>자치단체·세목별 물건 별도 관리</p> 	<p>전국 물건 정보 통합 관리</p> 
업무편의 및 효율성 개선	<p>제한적 정보 활용, 수기업무 과다</p> <p>자료 수집·대사·정비 정보 활용</p>  <p>수기 처리</p>	<p>정보 연계 확대 및 업무처리 자동화</p>  <p>자동 처리</p>
전자 신고 창구 일원화	지자체 인터넷 창구별 운영→ 자치단체별 민원 신청해야 하는 불편	여러 자치단체 일괄 신청 가능
자동 채움	신고내용 수기 입력	행정자료를 활용, 신고내용 입력 간소화

자료: 행정안전부

[차세대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변화(지방세외수입 분야)]

구분	현세대(As-Is)	차세대(To-Be)																																	
업무 시스템 통합	29개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체납·결산	1개 시스템 통합																																	
납부자 정보 단일화	<p>지자체별 개별관리</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A 지자체</td> <td>납부자명</td> <td>홍길동</td> </tr> <tr> <td>전화번호</td> <td>010.123.4567</td> </tr> <tr> <td>거주지</td> <td>경기도 수원시 장안구</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B 지자체</td> <td>납부자명</td> <td>홍길동</td> </tr> <tr> <td>전화번호</td> <td>043.123.4567</td> </tr> <tr> <td>거주지</td> <td>충청북도 청주시</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C 지자체</td> <td>납부자명</td> <td>홍길동</td> </tr> <tr> <td>전화번호</td> <td>010-1234-4567</td> </tr> <tr> <td>거주지</td> <td>전라남도 순천시</td> </tr> </table>	A 지자체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B 지자체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43.123.4567	거주지	충청북도 청주시	≠			C 지자체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4567	거주지	전라남도 순천시	<p>전국 통합관리</p> <table border="1"> <tr> <td>납부자명</td> <td>홍길동</td> </tr> <tr> <td>전화번호</td> <td>010-1234-5678</td> </tr> <tr> <td>주소</td> <td>경기도 수원시 장안구</td> </tr> </table> <p>↑ ↑ ↑</p> <p>A 지자체 B 지자체 C 지자체</p> <p>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공동활용</p>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 지자체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B 지자체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43.123.4567																																	
	거주지	충청북도 청주시																																	
≠																																			
C 지자체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4567																																	
	거주지	전라남도 순천시																																	
납부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세입 과목 정비	<p>유사·중복 2,293여개</p> <table border="1"> <tr> <th>세입과목 코드</th> <th>세입과목명</th> </tr> <tr> <td>210001</td> <td>중마 시장사용료</td> </tr> <tr> <td>210002</td> <td>광양 시장사용료</td> </tr> <tr> <td>210003</td> <td>옥곡 시장사용료</td> </tr> </table>	세입과목 코드	세입과목명	210001	중마 시장사용료	210002	광양 시장사용료	210003	옥곡 시장사용료	<p>564개 통·폐합</p> <table border="1"> <tr> <th>세입과목 코드</th> <th>세입과목명</th> <th>운영항목</th> </tr> <tr> <td rowspan="3">212001</td> <td rowspan="3">시장사용료</td> <td>001(중마)</td> </tr> <tr> <td>002(광양)</td> </tr> <tr> <td>003(옥곡)</td> </tr> </table>	세입과목 코드	세입과목명	운영항목	212001	시장사용료	001(중마)	002(광양)	003(옥곡)																	
세입과목 코드	세입과목명																																		
210001	중마 시장사용료																																		
210002	광양 시장사용료																																		
210003	옥곡 시장사용료																																		
세입과목 코드	세입과목명	운영항목																																	
212001	시장사용료	001(중마)																																	
		002(광양)																																	
		003(옥곡)																																	
대 장 통폐합	시스템별 대장(27) 관리, 중복 발생	차세대 시스템 통합(15개) 관리																																	
수기업 무자동화	<p>유관시스템 연계</p> <table border="1"> <tr> <td>세외 수입</td> <td>← 6개 기관, 16개 시스템, 104종</td> <td>유관 시스템</td> </tr> <tr> <td></td> <td>← ※ 17개 기관, 30개 시스템, 119종</td> <td></td> </tr> </table>	세외 수입	← 6개 기관, 16개 시스템, 104종	유관 시스템		← ※ 17개 기관, 30개 시스템, 119종		<p>유관시스템 연계 확대</p> <table border="1"> <tr> <td>세외 수입</td> <td>← 23개 기관, 223종 (수기업무 제로화)</td> <td>유관 시스템</td> </tr> <tr> <td></td> <td>46개 시스템</td> <td></td> </tr> </table>	세외 수입	← 23개 기관, 223종 (수기업무 제로화)	유관 시스템		46개 시스템																						
세외 수입	← 6개 기관, 16개 시스템, 104종	유관 시스템																																	
	← ※ 17개 기관, 30개 시스템, 119종																																		
세외 수입	← 23개 기관, 223종 (수기업무 제로화)	유관 시스템																																	
	46개 시스템																																		

자료: 행정안전부

2-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1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174억 2,300만원 중 171억 9,100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1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방세정보화추진	20,063	20,063	0	0	20,063	19,818	0	245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7,423	17,423	0	0	17,423	17,191	0	232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1,000	1,000	0	0	1,000	1,0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대로 시스템이 개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시스템 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2개 사업의 집행률은 높으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2021년 교부액 165억 6,600만원 중 6억 6,800만원만 실집행되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10억원 중 4,300만원만 실집행되어 위탁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 사항에서도 실적행률(5.5%)이 저조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¹⁾을 받은 바 있으나, 2021년에 실적행률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위탁기관의 2021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부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21.12월)	실집행액 (22.3월말 기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6,566	15,898	-	668(4%)	9,213 (55.6%)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1,000	957	-	43(4.3%)	593 (59.3%)

자료: 행정안전부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①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0년 2단계(1차) 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이 2021년 1월에야 체결되면서 2021년 2단계(2차) 사업 역시 순연되었으며, ② 뒤늦게 추가된 서울특별시 통합 부분에 대한 계약이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2022년 7월 현재도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① 차세대 시스템 사업은 2019년 1단계 사업²⁾은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나, 2020년 2단계 사업은 2021년 1월에야 사업자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2020년 사업 대상 범위에 서울시가 추가되면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공고 후 3차례 유찰³⁾ 후 사업자가 선정되어 2021년 사업 2단계(2차) 역시 순연된 것이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시정조치요구사항 (54) 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의 집행실적 부진 문제 해소 필요 등

2) 2019.8.-2020.4.

3) 구축하려는 시스템의 난이도가 높아 민간업체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 유찰이 되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시스템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이월액	실집행액	실집행 저조 사유
2019	지방세 시스템	9,816	9,816	0	9,816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1,000	1,000	0	1,000	
2020	지방세 시스템	21,767	21,767	20,563	1,204	총사업비 증액 협의, 유찰 등으로 2단계(1차)사업의 사업자 선정 지연 (계약기간: 2021.1.-2022.1.)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1,000	1,000	944	56	
2021	지방세 시스템	16,566	16,566	15,898	668	2020년 사업 지연으로 2단계(2차)사업 착수 지연 (계약기간: 2021.12.30.-2023.2.18.)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1,000	1,000	957	43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액이 발생한 주요 이유는 당초 시스템 사업 범위에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20년 5월에 서울시가 시스템 포함 의사를 표명하여 서울시가 사업 범위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차세대시스템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정보시스템 외에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더이상 별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여 1단계 사업부터 참여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⁴⁾하였다.

4) 서울특별시와 소관 자치구의 경우 별도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에 포함된다는 점, 기존 운용하던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가 구축하려는 차세대 정보시스템과 기능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 통합된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개별 수요에 따른 추가 기능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와의 지방세 시스템 통합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왔으나, 기존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9년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속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로 서울시가 1단계 구축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 5월 뒤늦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를 변경('21.2월)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21.8월)하게 되었다.

기존에 개별 시스템에서 납부·징수·체납·결산 등을 하던 것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이 차세대시스템의 도입 목적이라는 점,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에서도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통합·연계가 전제되어야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1차 구축 사업부터 서울특별시가 함께 참여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②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차세대시스템사업이 먼저 추진⁵⁾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통합 부분의 시스템 구축 계약을 기존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공고하였다. 그런데, 서울시 통합 부분에 대한 계약은 유찰로 인하여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5) 2단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20.3.20.), 위탁협약('20.5.25.), 조달청 분리발주 사전 검토('20.5.28.) 등 기추진 중이었다.

[차세대시스템 2021년 계약 체결 현황]

1. (16개 시도 통합 부분) 2단계(1차, 2차) 계약사항 등
 - (사 업 명)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 (사 업 자) 메타넷대우정보(주) 컨소시엄
 - (계약금액) 102,120백만원
 - (1차(2020년) : 56,073백만원, 2차(2021년) : 46,047백만원)
 - ※ (차세대 지방세) 79,676백만원, (차세대 세외수입) 22,444백만원
 - (사업기간) '21. 1. 29. ~ '23. 2. 18.(25개월)
 - 2단계 1차 : '21. 1. 29. ~ '22. 1. 29.(12개월)
 - 2단계 2차 : '21. 12. 31. ~ '23. 2. 18.(14개월)
 - ※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기간 중첩(1개월)으로 전체 사업기간은 25개월

2. (서울시 통합 부분) 계약사항 등
 - (사 업 명)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서울시 통합 구축
 - (사업예산) 21,000백만원
 - ※ (차세대 지방세) 15,298백만원, (차세대 세외수입) 5,702백만원
 - 유찰로 체결되지 못한 상황임

주: 계약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 민간 시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찰되었으나,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연계 부분의 차세대시스템도 2024년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추진 일정대로 2024년에 개통되더라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및 지방세입 관련 업무를 차세대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⁶⁾ 시행일(2023.1.25.) 이후에 서울시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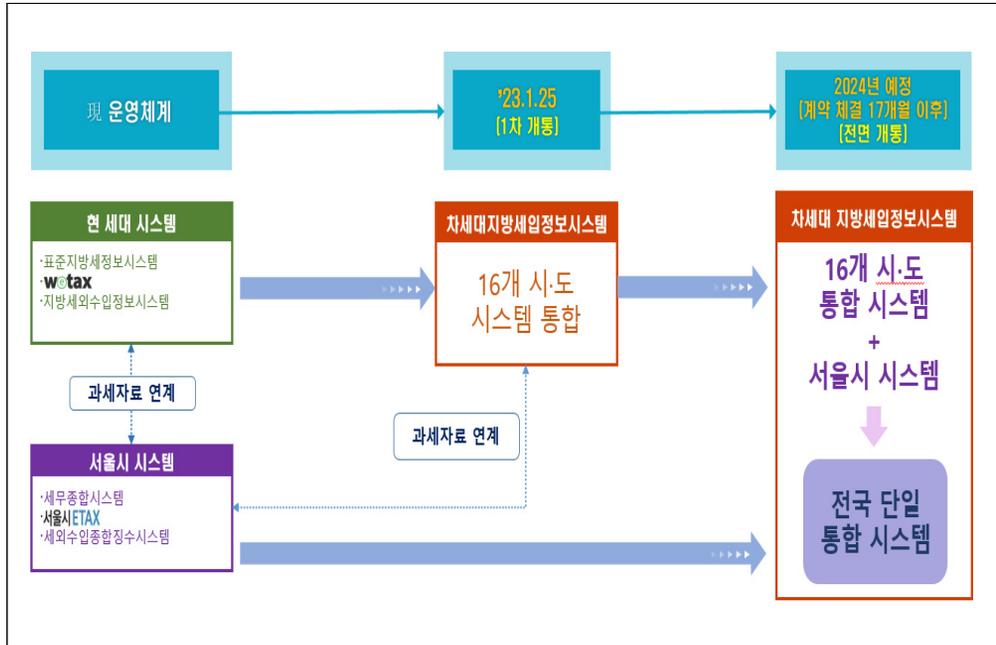
6)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합 부분의 차세대시스템이 개통되게 된다.

[차세대시스템 개통흐름도]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⁷⁾ 시 2021년 구축 사업을 종료하고 2022년 초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개통할 수 있을

가. ~ 바.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조세의 불복·쟁송, 범죄 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⑦ (생략)

7) 지방세기본법[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22년 2월 3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개통 시기가 당초보다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을 다시 개정⁸⁾하여 시행일을 2023년 1월 25일로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2023년 1월 25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시스템은 2023년 1월에 개통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서울시를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될 때까지는 현행 서울시 세무 종합시스템(이택스 포함)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⁹⁾ 이에 따라 서울시 통합 부분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당초 차세대시스템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전국 납세자 정보의 시스템 단일화 등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16개 지방자치단체 통합 사업의 계약 유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서울시 통합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시행일까지 서울시 통합부분 시스템이 개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8) 지방세기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6854호, 2021. 12. 29, 일부개정]

9)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2023.1.25.) 이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서울시 이용 자체 시스템을 포함할 예정이고, 과세 정보는 시스템간 연계되어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시스템과 서울특별시 시스템의 통합 개통이 지연되더라도 서울시가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2. 지방비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기준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여러 시스템 즉, 국가보급 표준시스템인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¹⁾, 서울행정 정보시스템²⁾, 자치단체 시스템인 자치단체 개별업무시스템³⁾, 공사·공단징수시스템⁴⁾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스템마다 서비스 제공 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려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억원의 예산을 위탁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교부하였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편성·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1,000	1,000	1,000	307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의 성격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2019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298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268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 1) 217개 자치단체(서울 제외) 사용 중. 국공유재산, 도로점·사용료 등 대부분의 세외수입 과목(2,100여 종)에 대한 부과징수채납관리
- 2)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4개 과목 관리
- 3) 자치단체가 업무편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도입·사용
- 4) 공사·공단 업무처리용. 자치단체 위임사무 처리시 행정망 사용이 불가능하여 자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⁵⁾이었으나 이후 315억원, 426억원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시스템 개통일도 1년 가량 지연되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당초	변경
사업기간	2019년~2021년	2019년~2023년
총사업비	298억원	426억원
국비 예산	30억원	33억원
시스템 개통일	2022년 2월 3일	2023년 1월 25일

주: 시스템개통일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통합부문의 개통일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매칭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의 비중은 2022년 현재 기준으로 8.4%로, 지방비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2019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비의 비중이 10.1%로 높지 않았으나, 총사업비가 128억원 증가하는 과정(298억원→426억원)에서 국비는 3억원만 증가(30억원→33억원)하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더 낮아지게 되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총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증액사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년 예산 편성 당시	298	30	10.1	268	89.9	
2019년	315	30	9.5	285	90.5	
2021년	364	30	8.3	334	91.7	
2022년	426	33	8.4	395	91.6	서울시 추가

자료: 행정안전부

5)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BPR/ISP('16. 4. 15. ~ '16. 10. 12) 기 실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국비분담비율이 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국비 분담 비율 비교]

(단위: 백만원, %)

	국비(A)	지방비	합계(B)	국비분담비율 (A/B)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42,935	53,106	96,041	44.7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51,466	122,749	174,215	29.5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3,307	39,291	42,598	8.4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국비로 부담하고,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시스템별 부담비율이 달라졌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⁶⁾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대부분(80~90%)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경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148억원)의 일부(33억 700만원, 22%)만 국비로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⁶⁾ 시도·시군구의 지방재정(예산, 지출, 결산 등 15개 분야)업무 및 통계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지자체 공동이용시스템별 지방비 분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국비	지방비	국비:지방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지방비 비율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42,634	1,969	96:4	0	49,286	0:100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51,040	8,202	86:14	0	111,558	0:100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3,307	11,542	22:78	0	27,749	0:100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 시스템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용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 사업 계획 당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의 대략적인 규모를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시스템의 구축 이후의 유지보수 예산에도 시스템 구축 예산의 국비 비중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⁷⁾, 시스템 구축 예산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의 총괄부처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표준적인 국비-지방비 분담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7)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투입 국비예산에 유지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을 편성하게 된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의 전용 예산 규모 및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황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¹⁾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섬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6억 5,700만원을 이·전용하고, 15억 3,2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이·전용 금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1억 8,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섬진 흥원 지원	0	0	0	657	1,532	2,189	2,149	0	4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은 인력 채용 계획·공사 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전용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산 전용 시 예산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²⁾가 신설되어 2021년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242-300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15억 3,200만원을 배정받아 한국섬진흥원에 출연하여 기관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³⁾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 지역발전활성화사업⁴⁾ 예산 등으로부터 6억 5,700만원을 전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1년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 예비비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한국섬진흥원 지원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20	한국섬진흥원 설립('21.6.8.)
	건설비	실시설계비	50	
		공사비	943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519	
합 계			1,532	

자료: 행정안전부

2) 개정 당시(2020년 12월)에는 「도서개발 촉진법」이었으나, 이후 21. 6. 에 법 제명이 변경되었다.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목포시 삼학도에 위치한 옛 향운노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다.

4)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최하는 국제 자전거 대회인 tour de DMZ대회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개최되면서 해당 예산을 전용하였다.

[2021년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1.9.14.)	지역발전활성화 (303)	201-14	550	한국섬진흥원 지원(300)	350-01	한국섬진흥원 설립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원(300)	330-03	107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15억 3,200만원 중 14억 9,200만원(97.3%) 집행되었으나, 한국섬진흥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해 전용된 예산은 6억 5,700만원 2억 4,100만원(36.7%)만 실집행되었다.

[2021년 전용 및 예비비 세부 산출 내역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 산출 내역	2021년 예산	2021 실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이월액
전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12명) 410 • 운영비 193 • 여비 4 • 연구용역비 50 	657	241 (36.7%)	0	416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비 20 • 건설비 993 • 자산취득비 519 	1,532	1,492 (97.3%)	40	0
합계		2,189	1,733 (79.1%)	40	416

자료: 행정안전부

실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예산 전용 당시(2021.9.14.)에는 총 12명에게 3개월분(10월~12월)의 임금을 주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년 9월에 2명만 채용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주었고, 2021년 12월에야 3명을 추가 채용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집행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섬진흥원 인력채용 현황]

	채용일	채용인원	채용 대상
2021년	'21.09.02	1명	원장
	'21.09.13	1명	수행비서관
	'21.12.06.	3명	경력직 직원(팀장급 3명)
2022년	'22.01.03.	7명	신규직 직원(주임급 7명)
	'22.04.01.	19명	경력직 직원(실장급 1명, 팀장급 3명, 선임급 2명, 부연구위원 7명) 신규직 직원(주임급 2명, 연구원 4명)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당초 원장 임명 및 주요 직위(경영지원실장, 경영관리팀장, 운영지원팀장)를 특별채용한 후 나머지 인원(8명)을 9월 중 공개경쟁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조직 안정화 및 채용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차량운전원 1명만 특별채용하고 나머지 인원(10명)을 모두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예산 전용 시 인력채용 계획, 리모델링 공사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사업 간의 유사성, 시급한 필요성,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⁵⁾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용 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최소한의 예산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의 인력채용계획의 세부사항, 공사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전용한 시점(2021.9.14.)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계약(2021.9.7.)이 체결된 이후여서 11월이 되어야 준공⁶⁾된다는 점

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인건비 예산의 불용을 행정안전부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은 공사 일정 및 인력채용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면서 예산 운용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산 전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섬진흥원 공사 관련 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하였으나, 기관의 설립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체결한 계약은 건축기계공사(관급자재) 계약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⁶⁾ 건축기계공사(2021.9.7.~2021.11.5.)

[한국섬진흥원 관련 공사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 금액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방법
실시설계용역	50	AD건축사 사무소	2021.7.28.~2021.8.18.	수의
석면철거공사	32	(유)서진철거산업	2021.7.30.~2021.8.27.	수의
석면폐기물처리용역	5	바다환경(주)	2021.7.30.~2021.8.28.	수의
건축기계공사	597	(유)승광건설	2021.9.7.~2021.11.5.	수의
건축기계공사(관급자재-금속제창)	64	지엘아이(주)	2021.9.16.~2021.11.15.	조달 계약
건축기계공사(관급자재- 냉난방공조)	62	삼성전자(주)	2021.9.16.~2021.11.15.	조달 계약
전기공사	91	(주)에이치에스산업	2021.8.20.~2021.10.18.	수의
통신공사	31	(유)엘에스시스템즈	2021.8.18.~2021.10.16.	수의
소방공사	24	(주)미래소방이엔지	2021.8.18.~2021.10.16.	수의
소방공사 감리용역	1	세종유비스	2021.8.23.~2021.10.21.	수의
합계	992	-	-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섬 발전 촉진법」이 2021년 6월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 법률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 긴급한 사유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사유]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섬진흥원의 근거 법률이 시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에 준하는 수준의 긴급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⁷⁾⁸⁾

따라서, 한국섬진흥원 공사 계약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7) 일례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인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경우 2021년 12월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본·실시설계를 8월까지 진행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12.7. 제정, 2022.6.8. 시행))

8) 한국섬진흥원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 마련이 필요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차 등을 통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임차공간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지출(임차비, 이사비용 등)보다 조속한 공사 추진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환경 조성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사업의 확산대상사례에 대한 검토 강화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통합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¹⁾ 사업은 지역의 제안·우수사례 등 혁신 성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13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8,216	8,216	57	0	8,273	7,542	0	731
지방행정혁신 역량 강화	1,357	1,357	0	0	1,357	934	0	42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지원 사업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사례를 확산대상사례로 선정하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확산대상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지방행정혁신 역량 강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 우수 사례를 발굴 연구, 성과 확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사업에 2021년 10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의 내역사업

[2021년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1,357백만원
 - 지자체 정부혁신 선도과제 및 거점지자체 육성 : 33백만원
 - 지방행정 혁신 홍보 추진 : 12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포럼 운영 : 50백만원
 - 지방행정 혁신 핵심과제 발굴 연구 추진 : 30백만원
 - 지자체(243개) 정부혁신 평가 : 97백만원
 -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지원(30개 지자체) : 1,02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사업은 우수사례 경진대회·제안·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이하 “확산대상사례”라 한다)를 행정안전부가 선정하고, 공모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 및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비: 국비 1,020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 지방비 50% 매칭)
- 사업목적: 우수사례 경진대회·제안·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례를 선정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2021년 확산대상 사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 사업 절차: 확산대상사례 선정(21.1~4월) → 공모선정, 사업비 지원(4~5월) → 사업 수행, 컨설팅(6월 ~) → 성과도출(12월)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사업은 2021년 편성된 예산액 10억 2,000만원 중 6억 4,000만원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교부한 금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금액은 4억 6,95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 수준이었다.

[2021년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8,216	8,216	57	0	8,273	7,542	0	731
지방행정혁신 역량 강화	1,357	1,357	0	0	1,357	934	0	423
지방행정혁신 성과확산지원	1,020	1,020	0	0	1,020	640	0	38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사업 실적현황]

(단위: 개, 백만원)

확산 대상 사례	대상 지자체 수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6	25.3	24.3	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21	615	445.2	169.8
합 계		640.3	469.5	170.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공모 대상으로 선정된 27개 지방자치단체 중 21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을, 6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 실적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확산대상사례로 선정된 2개 사업 중 ①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②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자체명	확산 대상 사례	교부액	교부일	집행액	불응액
1	부산 서구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1	2021.11.9.	1	0
2	광주광역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10	2021.11.9.	10	0
3	울산광역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1.5	2021.11.9.	1.5	0
4	울산 울주군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0.8	2021.11.9.	0.8	0
5	경기 안성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2	2021.11.9.	2	0
6	전북 익산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10	2021.11.9.	9	1
7	서울 강동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8.26.	30	0
8	서울 종로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8.26.	30	0
9	대구 달서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8.26.	13	17
10	대구 북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15	2021.9.28.	7.1	7.9
11	대구 수성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20.4	9.6
12	광주 동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8.13.	12.8	17.2
13	광주 서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12.3	17.7
14	대전 대덕구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4.9	25.1
15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9.	30	0
16	강원 정선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8.13.	30	0
17	강원 횡성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8.13.	30	0
18	충북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30	0
19	충남 논산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9.	0	30
20	전남 나주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21.5	8.5
21	전남 구례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14.7	15.3
22	전남 완도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8.13.	30	0
23	전남 함평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9.	28	2
24	전남 해남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30	0
25	경북 영천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30	0
26	경남 통영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24.2	5.8
27	경남 남해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30	2021.9.28.	16.3	13.7

자료: 행정안전부

먼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은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진출입할 때 주차장 차단기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²⁾를 인식함으로써 대기 없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개선하는 비용³⁾을 지원하는 사업(자치단체 경상보조)이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제

2)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번호(998 ~ 999)를 부여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제2021-202호, 2021.11.1. 발효)

3) 유지보수업체의 직원 출장비, 소프트웨어 개선 비용 등

안되어 심의를 거쳐 확산대상사례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확산대상사례로 선정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이 수혜 아파트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여 지원하는 집행방식이고, 법령 및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⁴⁾이 있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자동차 차단기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대상 아파트를 공모·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집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 및 확산대상 사례 선정에 이미 상당시간이 소요⁵⁾되어, 조례 제정이나 사업 집행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단기 개선비용 대신 사업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뒤늦게 사업을 변경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나, 해당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을 위해 21개 지방자치단체에 6억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및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확산대상사례로 선정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과 유사하고, 국고보조금이 9월말에 교부되어 사업 추진기간도 부족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⁶⁾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는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1.9%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2021년

4)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기본계획·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세부시행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2021.10.25.)이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의 경우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5) 확산대상사례를 선정한 후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것이 10월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이 2021.10.25.였다.

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지원(융자)(코드: 4151-301)사업의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집행한다.

에는 본예산과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203억원의 대출 계획을 세웠고, 9,104억원을 집행하였다.

두 사업을 비교하면, 이차보전과 용자라는 지원방식의 차이, 업종 제한 범위 외에는 저신용자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 6등급 이하 저신용자라는 사업 대상 등에서 유사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와 중복 지원 대상자를 배제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으므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적었다.

[행정안전부 사업과 중소기업벤처부 사업 비교]

	행정안전부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용자
세부사업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소상공인지원(용자)
사업목적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지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지원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6등급 이하)
지원업종	제한없음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 감소) 업종 소상공인
지원방식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지원	용자
2021년 예산 규모(백만원)	615	1,020,300
차별점	지역 거버넌스 활용	-

자료: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확산대상사례 선정이 5월에 이루어지고, 공모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9월 말에야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선정·심사할 시간도 짧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동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확산대상사례로 선정될 경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확산대상사례 선정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1년 확산대상사례의 경우 법적 검토의 부족, 다른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선정된 확산대상사례가 효과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해당 사업의 도입 효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적 문제점, 다른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산대상사례를 선정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혁신사례 확산 지원’을 위해 교부되고 있는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와 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에도 재원만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두 사업의 통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사례의 확산을 위해 동 사업과 함께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로 ‘지역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사업에는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혁신사례 확산 지원’을 위한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20억원이 교부되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확산대상사례를 선정한 이후, 선정된 사례의 유형을 판단하여 시설 구축 및 기반형사업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로, 경상비를 지원하는 서비스형 사업은 지방행정혁신 성과확산 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기본적인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등은 동일하며, 사례 선정 절차·집행절차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총 12개의 확산대상 사례를 선정하였고, 이 중 2개의 사례를 지방행정혁신 성과확산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개의 사례는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도입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별로 공모하여, 공모사업을 심사하고 지자체를 선정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앙지방협력특별교부세 사업과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지원 사업 비교]

구 분	중앙지방협력특별교부세 지역혁신사례 확산지원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지원
2021년 예산	22억원	10.2억원
사업 절차	확산대상사례 선정(3~4월) → 도입희망 지자체 공모(5~6월) →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협의회(22명) 공모사업 심사, 지자체 선정(6월) → 사업 추진(~ 12월)	
2021년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② 마을관리소 조성 ③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제공 ④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⑤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 ⑥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⑦ 도심 속, 한평정원 ⑧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⑨ 지적행정 ONE- STOP 시스템 구축 ⑩ 로드킬 음성신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②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지원내용	시설구축 및 기반형 사업 -장비비, 시설구축비 등 지원	서비스형 사업 - 자문료,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비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정과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는 그 목적과 의의를 고려할 때,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 또는 시책 수행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교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방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 교부하는 것은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사업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혼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동 사업에 소요된 재정지출

과 성과의 파악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 ‘지역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과 지방행정혁신 성과 확산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에도 재원만 분리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양자를 통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¹⁾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신규사업으로 2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2,000만원(16.4%)만 집행하고 16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5,538	5,538	0	△350	5,188	3,452	0	1,73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2,300	2,300	0	△350	1,950	320	0	1,63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이수율이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²⁾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632-301의 내역사업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312호, 2020.5.26. 제정, 2020.11.27. 시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미술관 박물관과학관 등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전국에 총 9만 4,086개의 어린이이용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77만 5,426명이다.

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보건법」등에 따라 초·중등학교, 유치원 등 일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유치원 이외에도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 제정 이전 응급처치 관련 교육]

근거법률	교육대상자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응급의료법」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주: 법 제정 이후에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 명)

시설명	시설개수	교육대상 추산인원	비고
어린이집	39,171	333,42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8593	75,737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6087	212,54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특수학교	177	10,501	
학원	36,050	125,76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아동복지시설	837	10,15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697	69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유원시설	43	130	
전문체육시설	201	201	
공연장	71	142	
박물관	76	76	
미술관	25	25	
외국교육기관	2	30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 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139	139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연면적이 1만㎡ 이상)
공공도서관	1,096	1,096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면적 264㎡ 이상)
사회복지관	468	46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16	16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 을 위한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9	30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 애인 거주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 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76	276	
국제학교	4	94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및 대 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39	2,174	
대안학교	9	305	
합 계	94,077	775,121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 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³⁾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이용시설에 의사간호사 등 전문강사요건을 충족하는 소속 종사자가 있을 경우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을 준수하여 해당 종사자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은 관리 주체가 부담하며, 안전교육비용은 전문기관마다 그 특성·교육 형태 등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⁴⁾ 종사자의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21년 예산은 23억원으로, 전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 수준인 7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3) 행정안전부는 교육콘텐츠 등을 갖춘 120개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였다.

4) 어린이집, 학원 등의 소규모 민간시설 중 ①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②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20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예산 구성]

구분		계약 내용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 (22억원)	안전교육 실시 (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 : 대한적십자사 ○ 계약금액 : 18.5억원 ○ 계약기간 : '21.5.17. ~ '21.12.13.
	안전교육 의무화 홍 보 (1억원)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기획홍보 (8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 : (주)카멜월드와이드 ○ 계약금액 : 74백만원 ○ 계약기간 : '21.8.24. ~ '21.12.22.
신문광고 (2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정부광고 집행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방법 안내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개요]

- 사업비: 교육비 22억원(일반용역비), 홍보비 1억원(일반용역비)
- 사업목적: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을 지원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사업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전체 종사자 76만명의 10% 수준)
- 사업내용: 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별 1인 교육비를 무상지원
- 사업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교육운영 및 홍보 실시 → 실적관리 등 사
후관리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2021년 계획했던 7만명 중 4,304명(6.1%)에게만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이수가 저조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교육이 제한되었다는 점과 비대면교육 실시에 따라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용역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업추진체계 등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먼저,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사

업자와 교육콘텐츠·활용시스템 등이 변경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120개의 전문기관 중 하나인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5월) 이후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8월어야 교육이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사업 실시예 필요한 온라인교육 신청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2021년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으나, 2022년도에는 온라인교육신청시스템을 갖춘 한국보육진흥원과 계약하여 4월말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일정이 앞당겼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매년 행정안전부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 따라 교육콘텐츠와 활용시스템이 바뀌므로, 적합한 사업자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사례와 같이 교육콘텐츠 보강과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사업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입장에서도 매년 교육을 신청·이수하는 사이트가 변경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교육콘텐츠와 시스템이 개발·구축되어 있는 용역계약업체와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의 총괄 부처이자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동 사업의 참여자 수는 용역업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나, 2021년 전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안전교육 이수자 수 등에 대한 자료는 조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⁶⁾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린이 안전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업체마다 개별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이수하게 된다.

6) 행정안전부는 '21년 이수자 중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인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전체 이수자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22년 어린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현황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¹⁾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9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9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9,284	9,284	0	0	9,284	9,280	0	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은 2021년도 사업의 준비가 미흡하여 실질행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실시를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고,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21년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내역사업 중 5.18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사업, 5.18스트리트 뮤지엄구축사업과 민주기념관건립사업(부산, 대전, 경남)의 실질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435-300

[2021년 내역사업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 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본예산	추경(A)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 사업회)	348	348	348	348	0	348	348	0	0	100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2,400	2,400	2,400	2,400	0	2,400	2,310	0	90	96.2
부산광역시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308	308	308	308	0	308	307.9	0	0.1	99.9
광주광역시 (5.18자유공원 및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1,500	1,500	1,500	1,500	0	1,500	1,397	0	103	93
광주광역시 (5.18피해자 실태조사용역사업)	500	500	500	500	0	500	20	480	0	4.2
5.18민주화운동기 록물 통합DB구축	1,071	1,071	1,071	1,071	0	1,071	867	0	204	81
5.18스트리트뮤지 엄구축	1,000	1,000	1,000	1,000	0	1,000	2	998	0	0.2
부산광역시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661	661	661	661	305	966	0	966	0	0
대전광역시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504	504	504	504	315	819	0	819	0	0
경상남도 창원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981	981	981	981	488	1,469	44	937	0	4.5

자료: 행정안전부

먼저, 5.18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5.18 피해자의 주거환경, 가계소득 등 을 파악하려는 사업으로, 편성된 금액 5억원 중 2,000만원만 집행되고 4억 8,000 만원은 이월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대상인 광주광역시가 당초 5.18 피해자 관련 단체에 위탁

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 대상과 사업 주체가 구분되지 않아 최종 산출물 등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실 있는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가 필요하여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다.

[5.18 실태조사용역사업 2021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사전기획연구 : 20백만원(수의계약)
 - 발주금액 : 20백만원
 - 과업기간 : `21.9.1.~`21.11월말
 - 계약금액 : 19.6백만원
 - 계약상대방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2022년 추진 일정
 - 재공고(1차 공고 3.23.~4.13. 입찰 참가 업체 없음) : 4.14.~4.25.
 - 제안서 접수 : 4.25.
 - 제안서 업체 선정 심의(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4.29.
 - 계약기간 : 5.10. ~ 12.10.(7개월)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를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5.18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5.18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연되었다.

다음으로, 5.18스트리트 뮤지엄구축사업은 증강현실(AR) 기법을 활용하여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건·현장을 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편성된 예산 10억원 중 2,000만원만 집행되고 9억 9,800만원은 이월되었다.

동 사업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 등의 용역 사전작업 추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2021년 9월에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는데, 이후에도 보안성검토 등 정보화사업 실시를 위한 사전절차로 인하여 2021년도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였다.²⁾

[5.18 스트리트 뮤지엄 구축사업 2021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 2021년 사업 지연이유

- 내실있는 수행을 위해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 등의 용역 사전 작업 추진에 따른 기간('21.3월~'21.7월) 소요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기간 소요(3개월 소요)
-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21. 9월)
-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완료('21. 9월)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21. 10월)
- 市 회계과 계약의뢰 및 기술협상 완료('21. 10월~12월)

□ 2022년 추진 일정

- 5·18 민주화운동 가상박물관(Street Museum) 구축 계약('22.1월)
 - 계약금액 : 계약금액 772,800천원
 - 계약기간 : 22. 1. 3. ~ 9.23.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조사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민주기념관 건립사업은 부산, 대전, 경남에 각각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민주기념관 건립사업은 2020년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에서도 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최대 3.2%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사업의 추진 경과를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³⁾

2) 2022년에는 2021년 이월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56) 민주인권기념관 등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를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 필요

[민주기념관 건립사업 개요 및 예산현황]

구분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경남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 사업개요			
위치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2가 99-13외 4필지 (부산 중앙공원 내)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7-10번지 일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친수공간사업 부지 내
규모	부지면적 3,582㎡ 건축면적 715㎡ 연면적 2,034㎡ 지하2층/지상3층	부지면적 1,482㎡ 건축면적 569㎡ 연면적 2,987㎡ 지하2층/지상3층	부지면적 9,000㎡ 건축면적 3,817㎡ 연면적 7,894㎡ 지상 3층
사업기간	2020~2024년 (총 5년)	2020~2023년 (총 4년)	2020~2024년 (총 5년)
주요시설	수장고, 사료전시실, 체험교육장	상설기획전시실, 민주도서관, 소강당	수장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도서관
□ 예산현황			
2020년	315백만원	315백만원	496백만원
2021년	661백만원	504백만원	981백만원
2022년	661백만원	1,679백만원	3,264백만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부지 선정,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부지교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부산과 대전은 0%, 창원 은 4.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기간 변경현황 및 부진사유]

사업명	사업내용	당초	변경	부진사유 등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사업 기간	'20.1~ '23.12	'20. 2.~ '24. 11.	· 부지매입(1년 소요),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 공공건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물리적시간 소요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하였으나, · '22년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2년 연내 착공 예정
	착공 및 준공	'21.6.~ 23. 9.	'22. 11.~ '24. 11.	
대전 3·8민주의 거 기념관 건립	사업 기간	'19.12.~ '23.6.	'19. 12.~ '23. 12.	·부지 선정 ·공공건축심의를 따른 사업 지연 ·'21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억 400만원 전액 이월 ·21년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후 실시설계 중 ('21.9.~22.8.), '22년 연내 착공 예정
	착공 및 준공	'21.10.~ '23.6.	'22. 10.~ '23. 12.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 기간	'20.1~ '24. 10	변경없음	· 해수부와 창원시 간의 건립부지 교환 협의 등에 따른 사업 지연 ·'21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 8,100만원 전액 이월 ·'22.4월 건축공사 착공
	착공 및 준공	'22.1.~ '23. 6.	'22. 4.~ '24. 3.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관리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교부해야 하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

[2021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총계	2,146	1,108.1	3,254.1	1,053.4	5,604	
부산	소계	661	305.1	966.1	207.4	661
	설계비	-	305.1	305.1	207.4	-
	건축공사비	617	-	617	-	461
	전시공사비		-	-	-	110
	감리비	43	-	43	-	43
	시설부대비	1	-	1	-	47
		☞('21) 공정률 5% 반영, ('22) 누적공정률 10% 반영				
대전	소계	504	315	819	315	1,679
	설계비	-	-	-	-	-
	건축공사비	-	-	-	-	788
	전시공사비	504	315	819	315	796
	감리비	-	-	-	-	92
	시설부대비	-	-	-	-	3
		☞('21) 공정률 10% 반영, ('22) 누적공정률 40% 반영				
창원	소계	981	488	1,469	531	3,264
	설계비		488	488	488	
	건축공사비	981		981	43	1,364
	전시공사비					1,400
	감리비					500
	시설부대비					
		☞('21) 공정률 10% 반영, ('22) 누적공정률 42.4% 반영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목적내용이 다른 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주의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황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고령화 및 원도심 침체 등으로 인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유공간으로 조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²⁾ 사업은 제주지역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2021년 예산 43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사업은 2021년 예산 4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47,040	47,040	0	0	47,040	47,040	0	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43,000	43,000	0	0	43,000	43,000	0	0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4,500	4,500	0	0	4,500	4,5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시·도)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지역자율계정이란, 지역의 일반적인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131-301의 내역사업

2)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31-30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 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 직접편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1년 예산안 편성 지침」

지역자율계정(시·도)의 편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각 시·도별로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시·도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요구금액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요구한다. 각 부처는 시·도의 예산요구내역을 보고 사업별 의견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요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을 조정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절차]

① (기재부 예산실) 17개 시도 별로 기본한도 통보(4.16)
② (시·도) 기본한도내 예산안을 마련하여 부처·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4.30) ·13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③ (각 부처)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5.31) ·지자체의 신청서 및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요구서 작성 ·시·도 신청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④ (기재부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균형위 하위평가 사업은 조정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⑤ (기재부 예산실)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7월말) *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순수 추가한도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⑥ (기재부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지출한도는 준수

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1년 예산안 편성 지침」

나. 분석의견

첫째,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으로 기존 사업과 사업목적·내용 등이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설명자료만으로는 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급증한 공공의 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해 청년지원센터, 주민문화공간 등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이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20~25개소의 공간조성사업을 지원해왔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년~ 계속 (보조율) 50%
- (사업내용) 공공 유휴·저활용 공간을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주민참여 공간조성
- (사업예산)

(단위 : 억원)

연도	사업건수	공간조성비	국비	광역시	기초
2021년	20개(계속1 별도)	978.8(균특)	475.0	187	316.8
2020년	24개(계속1 별도)	280.1(균특)	132.2	57.4	90.6
2019년	25개(신규)	237.1(균특)	85.0	75.0	77.1

- (공간조성 예시) 청년지원센터, 주민문화공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조성



〈 강원 삼척 청년창업지원공간 '모임' 〉



〈 충북 옥천 주민소통공간 '누구나'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의 2021년 예산 430억원 중 360억원 (83.7%),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사업 전액(45억원)은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 사업이 아니라,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에 집행되었다.

[2021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집행액	사업건수
	본예산	추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43,000	43,000	43,000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사업	7,000	7,000	7,000	9개 시·도 12개소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	36,000	36,000	36,000	8개 시·도 8개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4,500	4,500	4,500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사업	0	0	0	0개소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	4,500	4,500	4,500	1개소

자료: 행정안전부

혁신도시³⁾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은 혁신도시에 양육지원공간, 어린이체육시설, 체험관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제주를 포함한 9개 혁신도시⁴⁾에 총 405억원(보조율 50%)이 지원되었다.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 개요]

○ (지원대상) 혁신도시의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 SOC 건립비
○ (사업내용)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필수 시설물(돌봄, 복지, 보육, 여가 등) 및 해당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체험 등 다목적 시설물 설치 및 운용
○ (지원규모) 보조율 50%, 국비지원 45억원 / 9개 혁신도시 총 405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으로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을 건립하게 된 이유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사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 부산, 대구, 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재원이 여유로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동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예산안 설명자료 제출 전인 8월 말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하였다.

그러나,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은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사업과는 사업의 목적·내용·소요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1개소당 5억원~9억원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단년도 지원한다. 반면,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은 혁신도시의 정주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육아·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부지에 신축되며, 3년 가량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 사업과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 사업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
사업 목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급증한 공공의 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주도·운영으로 지역활력 제고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육아·교육공간 조성
사업내용	공공의 유휴·저활용시설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공간조성	지자체 또는 공공 소유 부지에 신축
사업 기간	단년도	3년
국비지원 규모 (2021년 기준)	1개소 당 5~9억원	1개소당 45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두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지역기반 활성화 공간조성사업과 다른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에 2021년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2021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명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국회에 제출된 사업설명자료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에 대한 설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행

정안전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료만으로는 2021년에 동 사업으로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의 80% 이상이 지원된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

[2021년 예산 산출근거]

사업명	산출 근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 ('20예산) 12,721백 → ('21예산) 43,000백(+30,279백, ↑238%) - 인구감소, 원도심 침체 등에 따른 주민주도 활동공간을 마련, 지역활력 제고 - 86,0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 20개소(11개 시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제주) : ('20예산) 500백 → ('21예산) 4,500백(+4,000백, ↑800%) - 인구감소, 원도심 침체 등에 따른 주민주도 활동공간을 마련, 지역활력 제고 - (산출) 9,0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 × 1개소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제출 이전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예산으로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미처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면질의, 소위 심사 시에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SOC사업에 집행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하였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⁵⁾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확정 기능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의 편성근거와 대상 사업은 예산안 심사 시 국회에 명시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국회에 이러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업설명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별도의 질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

5)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기존 사업과 사업목적·내용 등이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국회가 사업설명자료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가 혁신도시 관련 사업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세출예산에 해당하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요 세입원이다.⁶⁾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입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따라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혁신도시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771억 7,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77,170	77,170	0	0	77,170	77,170	0	0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8,670	28,670	0	0	28,670	28,670	0	0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 ⁸⁾	48,500	48,500	0	0	48,500	48,500	0	0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으로 혁신도시에 도서관 등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시설, 청년창업공간 등이 있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라는 점, 지자체·공공기관의 유희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인다.

실무적으로도 행정안전부가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가 각 시·도의 혁신도시 관련 부서이며, 그동안 주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추진단과 협력해온 경험이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활하게 사업이 집행될 가능성이 더 높은 측면이 있다.

10.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코드: 5538-309

8)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연계협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국토교통부의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

지역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주요시설	진행현황('21.4월)
1 전북 (완주)	5,000	2,500	혁신도시발전재단, 완주창업 베드센터, 방과후강의실, 커 뮤니티 공간 등	· 실시설계 준공('19.11월) · 착공('20.3월) · 준공 및 개원('21.1.25)
2 전북 (전주)	15,000	7,500	어린이·부모 커뮤니티 공간, 창업공간, 트윈세대 미디어 공간 등	· 실시설계 준공('20.6월) · 공사계약 및 착공('20.9월) · 준공 및 시운전('22.4월)
3 제주	29,900	9,900	혁신도시발전재단, 어린이 집, 문화취미교실, 수영장, 북카페 등	· 실시설계 준공('20.5월) · 공사착공('20.10월) · 준공 및 시운전('22.6월)
4 경남	23,700	9,900	보육시설, 기획 / 상설전시 실, 강의실, 기업지원실, 창 업공간, 홍보관 등	· 실시설계 준공('20.5월) · 공사 착공('20.11월) · 준공('22.3월)
5 경북	36,300	9,900	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문 화 강좌실, 청년취업·창업 센터 등	· 실시설계 준공('20.5월) · 공사착공('20.12월) · 준공 및 시운전('22.8월)
6 울산	19,000	9,500	다목적 체육관, 스쿼시·헬스 장,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 실시설계 준공('20.6월) · 공사착공('20.12월) · 준공 및 시운전('22.8월)
7 강원	28,800	9,900	수영장, 문화센터, 건강증진 지원센터, 창업 공간 및 일 자리지원센터 등	· 실시설계 준공('20.6월) · 공사착공('20.12월) · 준공('22.7월)
8 충북	19,800	9,900	문화센터, 실내 어린이놀이 터, 공연장, 지역사회공헌센 터, 창업지원센터 등	· 실시설계 준공('20.10월) · 공사착공('21.3월) · 준공 및 시운전('22.8월)
9 대구	28,200	9,900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창업공간, 재단사무실 등	· 실시설계 준공('21.3월) · 공사착공('21.3월) · 준공 및 시운전('22.12월)
10 부산	15,000	7,500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전 시공연장, 창업시설, 회의공 간 등	· 실시설계 준공('21.4월) · 공사착공('21.6월) · 준공('22.12월)
11 광주, 전남	49,000	19,000	문화교실, 전시관, 육아지원 시설, 수영장, 청년창업지원 센터 등	· 설계공모 공고('21.2월) · 착공('21.9월 목표로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사업이므로,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편성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도별 한도를 활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사업의 도입 취지·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다는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9)

셋째, 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이월 예산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 사업은 76%의 실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은 9.1%로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47,540	47,540	9,075	19.1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사업	7,040	7,040	5,347	76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	40,500	40,500	3,691	9.1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9개 혁신도시의 어린이·가족 특화 SOC를 살펴보면, 전주와 제주만 착공하였고, 나머지 7개 시·도는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

9) 다만,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세입의 93.4%가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금예수금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는 등, 자체 세원의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세입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2022.8., 국회예산정책처, p.194)

다. 착공하지 못한 7개 시·도의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21년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시군구	사업내용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추진현황
부산	영도구	영도두드림(Do-Dream)E-빌리지 -다봄돌봄센터, E스포츠센터, VR체험관, 가족세미나실 등	450	52 (1.2%)	-실시설계(22.4~22.9) -공사(22.10~23.12)
대구	동구	상상놀이터 -주민사랑방,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450	0 (0%)	-실시설계(22.2~22.8) -공사(22.11~23.12)
전남	나주시	'빛가람가족 행복 충전소' -어린이 양육지원공간, 장난감대여실 등	450	0 (0%)	-실시설계(22.4~22.10) -공사(22.12~23.12)
강원	원주시	품:다 -어린이·부모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공간, 체험형·미디어 미술관	450	245 (5.4%)	-실시설계(21.11~22.9) -공사(22.9~23.10)
충북	진천군	'꿈틀꿈틀하우스' -문화예술체험실, 열린체육실, 공동작업실, 다목적실 등	450	186 (4.1%)	-실시설계(21.10~22.11) -공사(22.12~23.12)
전북	전주시	어린이 가족친화 공간 -다목적놀이공간, 어린이체험관, 체육시설 등	450	1,225 (27.2%)	-실시설계(21.1~21.11) -공사(21.12~22.12)
경북	김천시	상상 날개 '깨비나라'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목적실, 체험놀이시설, 야외놀이터 등	450	314 (7.0%)	-실시설계(21.9~22.5) -공사(22.10~23.12)
경남	진주시	행복 드림(Happy Dream)센터 -돌봄공간, 작은도서관, 체육시설, 다목적실 등	450	0 (0%)	-실시설계(22.2~22.10) -공사(22.12~23.12)
제주	서귀포시	꿈자람(Dream Up)센터 -돌봄센터, 다목적실, 카페, AR·VR 체험관, 진로교육관	450	1,669 (37.1%)	-실시설계(21.6~21.11) -공사(21.12~23.11)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리모델링 위주의 소규모 공사인 기존 유형의 공간조성사업과 달리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이 각 사업별 90억원(국비 45억원)의 대규모 건축공사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 이전에 부지 확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은 실시하지만, 예산 편성 이후에도 사전행정절차¹⁰⁾ 이행, 설계 공모(1개월) 및 설계(5~6개월), 공사(9~23개월) 등 일련의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소규모, 대규모 공사의 사업 절차 비교]

구분	사업 추진 절차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당해년도	차년도
소규모 공사	사업기획(조사연구), 부지확보	공간조성	공간운영
총사업비가 10억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사	사업기획(조사연구), 부지확보	설계, 착공	공사진행 또는 완료

자료: 행정안전부

대규모 공사의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이 실제로는 2~3년 정도의 연차별 사업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단년도로 예산을 설계하였고,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SOC 사업은 실제 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설계하여 실질행이 저조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을 재설계 시 주의해야 할 것이며, 이월된 예산의 규모가 크므로 이월 예산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가. 현황

공공시설 옥상녹화¹⁾ 사업은 도시 열섬현상²⁾을 완화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다. 2021년 예산 29억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시설 옥상녹화	2,930	2,930	0	0	2,930	2,93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목적인 폭염 피해 예방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업 형태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환경부·산림청 등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폭염피해에 대한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³⁾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733-306

2)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장은 노년층 등 폭염 취약계층⁴⁾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을 갖춘 곳으로, 해당 지역 내 노인시설, 경로당, 보건소, 주민센터 등 주로 공공시설의 실내 공간 일부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⁵⁾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현황]

(단위: 개소)

실내										실외
실내 계	노인 시설	복지 회관	마을 회관	보건소	주민 센터	읍면동 사무소	종교 시설	금융 기관	기타	
59,555	42,898	901	3,428	390	1,641	725	63	1,634	909	6,96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 총괄부처로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지정·운영을 위한 지침 수립, 무더위쉼터 현황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노인, 에너지 빈곤층, 저소득 가구 등을 말한다.

5) 실내 공간이 아닌 야외 공간일 경우 냉방기 설치가 곤란하여 무더위쉼터로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피해 예방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완료 다음 해부터 5년간 무더위쉼터 지정해제 금지
- 사업내용 : 현재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었거나 추후 무더위쉼터 지정 예정인 공공시설에 옥상녹화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사업 지원
 - * 공공시설은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공공재 성격의 공공시설로 제한

<사업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 또는 향후 무더위쉼터 공간을 마련하여 지정될 예정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공공시설은 사업완료 다음 해부터 5년간 무더위쉼터 지정해제가 금지된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옥상정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1층 실내 공간 등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한 공공시설의 일부 공간에 무더위쉼터를 유지하거나 신설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는 구조이다. 즉,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향후 5년동안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사업을 실시한 64개소의 공공시설 중 기존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던 공공시설은 28개소였으며, 옥상녹화사업 이후 공공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공공시설은 36개소였다.

[2021년 사업 실시 대상 현황]

구 분	기존 무더위쉼터 지정된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준공 후 무더위쉼터 지정(예정)	합계
공공시설 (개소)	28	36	64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의 옥상녹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지역에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폭염 피해를 조금씩 줄여가는 데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매년 발생하는 폭염피해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공시설의 옥상녹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1개소당 평균 4,500만원⁶⁾임을 고려할 때, 폭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더위쉼터의 추가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고, 관리·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⁷⁾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식일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환경부의 도시 소생태계 사업,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숲 사업과 그 사업내용·추진방식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림청 사업 모두 도심 내 공공시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옥상에 비오톱⁸⁾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생활밀착형 숲 사업으로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실외, 옥상·실내공원 등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6) 지방비를 제외하고, 국비만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에 지방비 50%가 더해지면 총 사업비는 9,000만원 정도가 된다.

7) 행정안전부는 폭염이 있는 경우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폭염 대책에는 무더위쉼터 운영비 등 지원 등이 포함된다.

8) 비오톱은 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를 말한다.

[부처별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

구 분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사업명	공공시설 옥상녹화	도시 소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생활밀착형숲
추진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33조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도시숲법」 제11조
사업기간	'21년~'25년	'15년~계속	'20년 ~ 계속
사업 목적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 피해 경감	도시홍수 예방,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자연학습장 활용	녹색생활공간 확충 및 국·공유지 활용도 제고
사업 내용	공공시설 옥상녹화	공공건축물 옥상 비오톱조성	다중이용시설에 실외, 옥상실내정원 등 조성
21년 예산 (백만원)	2,750	600	15,000
21년 사업규모	64개소	4개소	34개소
사업 대상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 또는 지정될 예정인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보조율 50%	보조율 50%	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에 별도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폭염 피해 예방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업 형태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¹⁾ 사업은 지자체의 노후·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사업이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5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000	5,000	0	0	5,000	5,0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설계가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가 계측기의 설치기준·임계치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 유형을 공유하는 등의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IoT감지기 등 계측 감지기²⁾를 설치하면, 해당 계측감지기가 수집한 계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담당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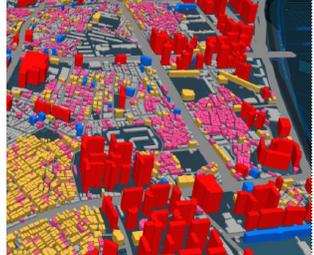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2631-301의 내역사업

2) 진동, 온도, 갈라짐, 기울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IoT 감지기 및 통신모듈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내용
 - 지역내 노후·위험시설에 계측감지기 설치하고 계측정보를 실시간 수집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측정보 분석·관리, 위험요인 사전인지 등 평시 지자체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① IoT 감지기 + 통신망	② 데이터 관리·분석	③ 시설안전관리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감시감지기(기울기, 진동, 온도) + 확장모듈(크랙 등) • 통신모듈(LTE, IoT자 가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리, 시설별 위험성 분석 • 기존 지리·건축물·시설물 정보와 안전정보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안전관리 모니터링, 개별 안전관리 업무 활용 • 외부 데이터 제공(GIS, QR코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신규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 후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실질행률은 74.4%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5,000	5,000	5,000	5,000	0	5,000	3,720	1,280	0	74.4

자료: 행정안전부

[2021회계연도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 용산	800	0	800	800	0	0	0
인천 광역시	1,000	0	1,000	720	280	0	72
경기 고양	800	0	800	800	0	0	0
경북 포항	600	0	600	600	0	0	0
전북 군산	800	0	800	800	0	0	0
제주도	1,000	0	1,000	0	1,000	0	0
합 계	5,000	0	5,000	3,720	1,280	0	74.4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① 사업 초년도여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본예산에 동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② 사업 경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하여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해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센서 설치·모니터링시스템 설계·구축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2021년과 2022년 1월에 공모를 추진하여 2월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추가경정예산

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3)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는 사업 전년도에 공모를 완료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시기를 앞당긴다면 사업 실질행률이 2021년보다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현황]

지자체	예산			집행					이월액 (국비, 지방비 포함)
	예산 합계	국비	지방비	소프트웨어 구매		용역계약			
				구매 일자	구매 금액	발주일	계약기간	금액	
서울 용산	1800	800	1,000	'21.9.14	917	'21. 8. 26	2021.10.21. ~2022.4.19	864	450
인천 광역시	2,000	1,000	1,000	'21.12.21	912	'21.11.12	'21.12.23. ~'22.10.21	1,049	557
경기 고양	1,600	800	800	'21.6.10	907	'21. 6.30	'21.8.23. ~'21.12.31.	668	-
경북 포항	1,200	600	600	'21.9.17	608	'21. 7.10	2021.9.14. ~2022.5.31.	575	289
전북 군산	1,600	800	800	'21.12.23	917	'22.3.21.	2022.6.~	608	680
제주도	2,000	1,000	1,000	-	-	'21.10.17	'22.3.24 ~'22.12.23	1,614	2,000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전북 군산과 제주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한참 후인 2022년이 되어야 용역사업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대략적인 사업 방향성만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건축물의 선정, 위험 건물의 안전도 측정에 필요한 센서·시스템의 조건 등을 설계하여 용역을 발주를 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설계를 위한 내부 검토 및 용역 발주를 위한 발주 조건 구체화 과정4)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3) 제1회 추경으로 5월에 지방비가 확보된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반면, 제2회 추경으로 10월에 지방비가 확보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4) 제주도의 경우 최초 사업 발주 이후 발주요건을 구체화해달라는 조달청의 요청으로 여러번 사업 발주

[지자체별 사업프로세스]

단계	① 사전분석	② 모듈설계	③ 통합시스템 구축	④ 운영·유지관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 설치 위치 선정 ▶ 평시 해당 지자체 안전관리 업무 분석 ▶ 기존 안전관리 정보 통합·표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모듈 규모 산출 ▶ IoT 센서 운영 기준 마련(시범 설치, 계측값 수집을 통한 판단 기준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집·통합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설계·구축 ▶ GIS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 ▶ 외부자료제공을 위한 모듈 설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유지관리 체계구축 ▶ 위험도 판단기준 관리 ▶ 추가 센서 설치·운영 ▶ 시스템 유지·보안관리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는 건물, 용벽, 교량, 항만 등 다양한 위험대상 건축물이 존재하고, 위험대상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위험요인도 균열·진동·화재·침수 등 다양하다. 따라서, 건축물 위험감지시스템을 설계·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험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계측 센서의 종류⁵⁾,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 선정, 건축물에 센서를 부착해야 하는 최적 위치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센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시스템까지 설계·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한 시설물의 종류와 측정하고 싶은 위험요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기 용이하도록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동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결과⁶⁾를 보면, 사업 추진 절차가 IT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사업의 본질인 위험시설의 규명과

가 반영되었다.

5) 계측기도 감지하려는 위험에 따라 경사계, 균열계, 진동계, 온도계, 습도계 등 다양하다.

6)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22.5. p.44.

관측 위치 분석이 간과될 우려가 있으며, 안전관리 대상물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센서를 사용하고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축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전반적인 사업 설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 사업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실시 결과를 보면,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위험 공공시설은 교량, 육교, 옹벽, 항만, 시장 등 다양하더라도 계측기는 모두 진동, 기울기, 균열만을 설치하는 계측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⁷⁾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수행 내용]

지자체	계약 금액	계약상대방	사업내용
서울 용산	864	(주)○○○	위험 공공시설(교량, 육교, 옹벽 등)과 민간시설 135개소에 계측기(진동,기울기,균열)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	1,049	(주)○○○ (주)△△△	위험시설물(건물, 옹벽, 항만, 시장 등) 130개소에 계측기(진동,기울기,균열)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기 고양	668	(주)○○○	위험시설물(공동주택, 교량, 육교 등) 146개소에 계측기(진동,기울기,균열)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북 포항	575	(주)○○○	노후 위험 시설물 60개소에 계측기(진동,기울기,균열)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북 군산	608	(주)○○○	노후 공동주택 131개소, 교량 2개소에 계측기(진동,기울기, 균열)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도	1,614	(주)□□□	위험시설물(교량, 건물, 옹벽 등) 50개소에 계측기(진동,기울기,균열)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2년에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이 완료된 고양시의 운영사례와 계측감지기 종류별로 필요한 요구 성능을 공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7)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발주를 하였음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용역업체(주)○○○를 선정하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019년에 행정안전부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서울 구로구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단순히 시스템의 구축이 아니라 내실 있는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운영사례 및 계측기의 요구 성능의 공유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위험 시설물 종류별·위험요인별 계측 센서의 종류, 요구성량, 임계치, 부착해야 하는 최적 위치 및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고, 화재·침수·붕괴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위험 관측에 필요한 센서 및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공공데이터 일자리¹⁾’사업과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²⁾’ 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품질 관리·실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은 참여자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배치되어 기관별로 빅데이터분석과제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을 비교해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참여자가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된다는 점은 양자가 동일하나, 업무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이 용이한 형식으로 변환³⁾하거나(개방), 공개된 데이터의 최신성·상호연계성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하고(품질관리), 실제와 데이터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업무(실측)를 지원한다. 반면,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소 입지 분석·민원데이터 분석 등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 1) 코드: 일반회계 2046-502의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가속화 사업의 세사업
- 2) 코드: 일반회계 2046-502의 내역사업인 공공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사업의 세사업
- 3) pdf로 되어있는 파일을 개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그 예시다.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과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사업의 비교]

구분	공공데이터 일자리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목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 추진 및 일경험 제공	데이터 분석 분야 인재 양성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을 배치하여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관리·실측 등의 업무를 지원	데이터 분석 수요가 있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 참가자를 배치하여 기관의 데이터 분석 업무 지원
대상자	청년(만 19세 ~ 만 34세) 학력·전공 등 제한 없음	청년(만 19세 ~ 만 34세) 학력·전공 등 제한 없음
참여자 신분	일경험수련생	일경험수련생
사업 방식	출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행 업무	공공데이터 개방 및 목록정비, 기관보유 DB 품질진단,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 품질 개선 등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개선 업무 수행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기관별 데이터 분석과제 기획 및 분석업무 수행

주: 두 사업의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경험 수련생의 지위를 가진, 일경험 수련생이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는 아님. 행정안전부가 참여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됨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은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신규 반영되었다. 2020년에는 8,440명을 대상으로 885억 8,000만원이, 2021년에는 7,660명을 대상으로 982억 2,600만원이 반영되었다.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은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0년 본예산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19억 8,200만원만 반영되었으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4억 7,2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021년에는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 1,020명 대상으로 163억원이 반영되었다.

[데이터 관련 일자리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대상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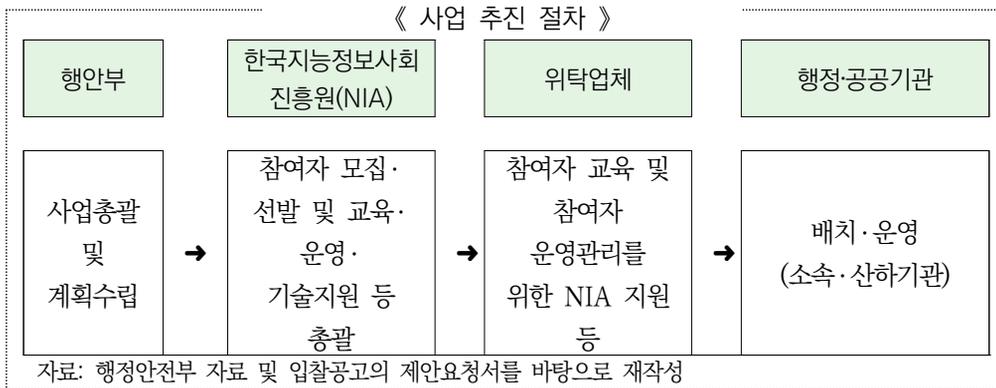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공공데이터 일자리	예산	0	0	88,580	98,226	98,226	34,321
	대상인원	0	0	8,440	7,660	7,660	2,500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예산	1,639	1,982	9,472	16,300	16,300	7,220
	대상인원	94	100	610	1,020	1,020	350

주: 2022년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처럼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가공 수요가 있는 행정·공공기관과 250개 과제에 데이터 전문기업을 매칭하고, 선정된 전문기업이 청년을 채용(과제별 10명씩 총 2,500명)하여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두 사업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참여기관 선정, 참여자 모집·선발 등을 담당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다시 용역을 발주하여 위탁업체에 세부적인 관리 등을 맡기고 있다.



8-1.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면밀한 설계 및 공공기관 배정방식 개선·성과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730여개)에서 데이터 개방·품질관리·실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에서 처음 편성(885억 8,500만원)되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데이터교육(2주) 후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관리·실측 등의 업무를 3~6개월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예산 982억 2,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186,288	186,288	0	0	186,288	186,288	0	0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	98,226	98,226	0	0	98,226	98,226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은 계획과 달리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하지 못했으며, 최종 수요 인원도 당초 모집 계획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사업 추진 시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982억 2,600만원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였다.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집행액은 774억 2,500만원(7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던 2020년 사업의 실집행률(83.7%)보다 낮은 수치이다.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 실적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액	추경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0년	0	88,580	0	74,131	0	15,130	83.7
2021년	98,226	0	0	77,425	0	20,801	78.8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실적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일경험수련생 중도 포기에 따른 수련 지원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집인원 7,660명과 예비선발인원 1,877명을 합한 전체 모집인원 9,587명 중 교육 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하고 7,610명을 각 기관에 배치하였다. 기관 배치 이후에도 포기한 인원이 1,731명으로, 최종 수료 인원은 당초 모집계획인원의 76.7%인 5,879명이 최종 수료하였다.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 실적현황]

(단위: 명)

모집 인원	선발 인원	예비 선발인 원	중도탈락인원			최종 수료인원
			교육후 포기인원 (기관배치인원)	기관배치후 포기인원 (최종수료인원)	합계	
7,660	7,660	1,877	436 (7,610)	1,731 (5,879)	2,167	5,879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참여자들의 주된 사업 포기 사유는 취업, 학습목적으로 교육만 받은 후 중도 포기, 출퇴근 원거리 등이라고 밝혔다. 참여자들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나, 1,877명을 예비 선발했음에도 전체 중도탈락 인원이 예비선발인원보다 많은 2,167명(정원 대비 28.3%)이라는 점,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유형의 평균적인 중도탈락률이 9.4%라는 점¹⁾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안전부가 업무의 유형, 기관별 수요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 2021.7.

행정안전부는 2021년 예산 심사 당시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실측·수집 3가지 유형의 일자리로 나누어서 총 7,660명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품질관리, 실측·수집 업무가 모두 유사한 측면이 있어 업무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하나의 유형으로 일자리를 운영하였으며, 시기별로 1차~3차로 나누어 모집하였다.

[2021년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 계획과 실제 운영 현황 비교]

(단위: 명)

운영 계획				실제 운영 현황		
유형 구분	모집인원	업무수행 기간	업무내용	구분	구분	공고 모집인원
공공데이터 개방 청년인턴십	2,530	6개월	·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확인 및 점검 등 ·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 실측·수집 청년인턴십	1차 (5월)	4,800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청년인턴십	2,530	6개월	· 개방DB, 파일 데이터 등 품질 진단 및 오류확인정정		2차 (6월)	1,565
공공데이터 실측·수집 일자리	2,600	3개월	· 위치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현장 실측		3차 (9월)	4,000
합 계	7,660	-	-	합계		10,365

주: 실제 운영 현황에서 공고모집인원이 실제 선발인원과 예비선발인원을 합친 수(9,537명)보다 많은 이유는 참여자들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인원 모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2021년 예산 사업 설계 이전에 각 업무의 세부 유형, 각 유형별 업무량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유형과 그 유형별 필요한 인력의 수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예산 설계 시 사전 조사 없이 예산 규모를 산정하여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유형 및 선발 계획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2021년 사업규모와 예상인원은 기관별 데이터인력 수요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각 기관별 수

요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수요가 모집인원 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전체 배치 인원 7,610명 중 3,552명(46.5%)만 개별 행정·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되었다.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실측·수집에 필요한 일자리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별 데이터 관련 업무량과 인턴 1인당 수행 가능한 업무 수준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 설계를 위하여 기관별 데이터 인력 수요, 필요한 업무량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일자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업무·기관별 수요 등을 선제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설계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각 행정·공공기관이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공간에서 단순 데이터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년들의 공공 데이터 현장 체험’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각 기관별 수요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기관별 수요가 모집인원 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기관 배정 인원 7,610명 중 4,058명(53.5%)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 기관별 배정인원]

(단위: 명)

기관명	배정인원	기관명	배정인원	기관명	배정인원
경찰청	15	방위사업청	3	강원도	72
고용노동부	60	법무부	2	경기도	415
공정거래위원회	249	보건복지부	31	경상남도	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산림청	75	경상북도	81
관세청	2	산업통상자원부	53	광주광역시	108
교육부	49	소방청	1	대구광역시	188
국가보훈처	68	식품의약품안전처	31	대전광역시	80
국무조정실	18	여성가족부	10	부산광역시	172
국민권익위원회	4	외교부	38	서울특별시	189
국토교통부	157	원자력안전위원회	7	세종특별자치시	9
금융위원회	29	인사혁신처	4	울산광역시	61
기상청	10	중소벤처기업부	7	인천광역시	346
기획재정부	9	통계청	19	전라남도	72
농림축산식품부	28	통일부	5	전라북도	103
농촌진흥청	15	특허청	7	제주특별자치도	65
문화재청	25	해양수산부	4	충청남도	59
문화체육관광부	153	행정안전부	59	충청북도	64
방송통신위원회	7	환경부	22	대검찰청	1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4,058				

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정된 인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센터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무공간은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2개소, 창원, 울산에 나누어져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는 이 인원을 수용할 규모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예산 중 2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각 지에 공간을 임차하여 참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15개소 마련하였다.²⁾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을 관리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참여자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함으로써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PDF 파일 등을 데이터화 하고, 위치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실측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데이터 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³⁾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2) 전국 각 지에 공간을 임차하여 통신망 구축 등 리모델링 공사, 사무집기 임차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였다.

흥원에 배치된 참여자들은 각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된 참여자와 업무공간의 차이가 있을뿐 ‘공공데이터 현장(실무) 체험’이라는 사업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각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된 참여자 역시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 실측·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된 참가자와 실제 수행 업무 자체는 유사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이미지를 데이터로 변환, 실제 현장에 가서 위치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의 단순 업무로, 업무 그 자체가 참여자에게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키워주는 어렵다고 보인다. 오히려 참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각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각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경험하고 기관별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현장이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로 구축한 사무공간에서 단순 데이터업무만 수행하게 되는 것은 사업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 수행 시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행정·공공기관이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로 구축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청년에게 공공데이터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는 사업 목적 달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참여자의 공공기관 배정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은 2020년과 2021년 대규모로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사업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일자리 사업 수행 시 합리적 성과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각 부처에 산재된 일자리사업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된 사업들은 예산 편성시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 연중 집행상황 관리,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구조 및 예산 등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관계부처 합동, '20.5.20)에 따라 2020

3) 공공데이터와 함께 디지털 뉴딜에 참여할 청년인재 모집(2021.4.2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6개 부처·청에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은 그 중 하나이다. 그런데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 신규로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따른 성과평가를 받지 않았다.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은 2020년 8,440명, 2021년 7,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일자리사업이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가 담당 부처로서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에 대하여 참여인원 및 참여인원의 만족도 조사 등만 수행하였다.

참여인원과 참여인원의 만족도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동 사업의 성과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 관리'에의 기여도, 취업률 등 참여자를 데이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는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교육훈련'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고용노동부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022년 사업은 기존 사업처럼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가공 수요가 있는 행정·공공기관과 250개 과제에 데이터 전문기업을 매칭하고, 선정된 전문기업이 청년을 채용(과제별 10명씩 총 2,500명)하여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과 사업 유형·사업 규모 등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수행된 유형의 데이터 일자리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일자리 사업 수행 시 합리적 성과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2. 공공빅데이터 인턴십사업의 사업준비 미흡 및 운영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¹⁾은 참여자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배치되어 기관별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빅데이터 관련 온라인 사전교육(1개월), 실습형 전문교육(2개월)을 받고,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빅데이터 분석 일경험 수련(4개월~6개월)을 받게 된다.

2021년에 청년 1,020명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 163억원을 전액 출연기관에 교부하였으며, 사업을 출연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63억원 중 145억 9,400만원(89.5%)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186,288	186,288	0	0	186,288	186,288	0	0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	16,300	16,300	0	0	16,300	16,3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출연기관 실적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액	추경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1년	16,300	0	0	14,594	0	1,706	89.5%

자료: 행정안전부

1) 코드: 일반회계 2046-502의 내역사업인 공공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사업의 세사업

나. 분석의견

첫째, 기관별 수요·참여자 수요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규모 크게 확대되면서, 실제 최종 수요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68%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규모 결정 이전에 기관별 수요·참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 본예산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공공빅데이터 인턴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10명, 2021년 예산에서는 1,020명으로 그 대상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빅데이터 인턴십사업은 사업 규모를 급격하게 키우는 과정에서 앞서 검토한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020년에는 중도탈락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중도탈락인원이 크게 나타났다. 2021년에는 15% 가량의 예비 인원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가 포기하여 880명만 기관에 배치되었고, 기관배치 후 포기인원까지 고려하면 최종 수요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68% 수준인 695명이었다.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모집인원 등 현황]

(단위: 명)

구 분	모집 인원	선발 인원 (예비선발 인원)	중도탈락인원			최종 수요인원
			기관배치 이전 포기인원 (기관배치인원)	기관배치후 포기인원	합계	
2021년	1,020	1,020 (149)	289 (880)	185	474	695
2020년 제3회 추경	510	510 (92)	88 (514)	41	129	473
2020년 본예산	100	100 (10)	16 (94)	14	30	80
2019년	100	100 (20)	23 (97)	13	36	84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참여자들의 주된 사업 포기 사유는 취업, 복학, 학습목적으로 교육만 받은 후 중도 포기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에는 동 사업의 중도탈락인원의 비율이 높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는 2021년에 사업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쟁률이 2020년 본예산 사업 7:1에서 2021년 3:1로 하락하고, 수요자 간 편차가 확대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21년 1,020명이라는 참여 규모는 해당 인력을 수용할 기관들의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기관별 예상 투입인원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예산 심사 당시 동 사업의 참여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45명씩 지원하고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255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실제 참여자의 기관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6명, 강원도에 2명만 배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인원은 계획 대비 적었으며, 서울·경상권·전라권을 포괄하여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에만 229명이 배치되었다.²⁾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에는 이 인원을 수용할 규모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예산 중 4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각 지에 공간을 임차하여 참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3개소 마련하였다.³⁾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에 배정된 인원은 해당 사무공간에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사업 추진 시 참여자의 권역별 수요·기관별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규모를 크게 증가시킴에 따라, 중도탈락인원이 증가하고, 계획대로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⁴⁾

2) 행정안전부는 사업 참여자들을 권역별로 모집하는데, 일부 권역의 경우 권역별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부족하여 서울권 등 지원인원이 많은 지역에 추가로 선발하게 되면서 계획과 달리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에 많은 참여자들이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3) 전국 각 지에 공간을 임차하여 통신망 구축 등 리모델링 공사, 사무집기 임차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서울, 대구, 광주)을 마련하였다.

4)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는 350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 기관 배치 현황]

(단위: 명)

권역별	구분	배치인원	권역 합계
서울권	지자체 (서울특별시)	26	255
	행정부처·공공기관	7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	
경인권	지자체(경기도, 인천광역시)	113	145
	행정부처·공공기관	32	
경상권	지자체(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06	232
	행정부처·공공기관	5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8	
강원권	지자체(강원도)	2	17
	행정부처·공공기관	15	
충청권	지자체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33	136
	행정부처·공공기관	103	
전라권	지자체(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42	79
	행정부처·공공기관	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제주권	지자체	4	16
	행정부처·공공기관	12	
합 계		880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자체 발굴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운영방식은 행정·공공기관에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인력양성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행정안전부가 기관별 수요, 참여자 수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전체 기관 배정인원 880명의 26%에 해당하는 229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정되었다.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의 목적은 ‘행정·공공기관에 빅데이터 전문인력 지원’과 ‘청년들에게 빅데이터 분석 관련 경력개발 기회 제공’ 두 가지이다. 각 기관에 배치된 참여자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과제 수행 결과는 공공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⁵⁾

5)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받은 참여자들은 기관을 통해 의뢰받은 일부 과제⁶⁾와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자체 발굴한 분석과제⁷⁾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받은 참여자들이 수행한 2021년 100개 과제 중 21개만이 기관의뢰 분석과제⁸⁾였다. 이러한 방식의 과제 수행은 청년들에게 경력 개발 기회 제공은 가능하나 행정·공공기관에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의뢰 과제가 아닌 단순 분석과제 수행 방식이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⁹⁾과의 차별화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으로 2021년 빅데이터 관련

수련기관	주요 분석과제 수행 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민원데이터 텍스트마이닝 분석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 현안을 발굴하고 (불법주정차) 최적 공영주차장 입지 후보(6곳) 도출
광주광역시 서구청	•빈집 재활용 예측분석 수행을 통해 재활용에 적합한 빈집 시설 형태를 식별하고 형태별 빈집 재활용 정책 제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머신러닝 예측분류 분석을 통해 '동작사랑상품권'의 결제 패턴을 도출하고 고 효과적인 발행정책·마케팅 방안 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
전라북도청	•머신러닝 자연어 분석 및 SNS 크롤러 개발을 통해 전라북도 소재 주요 관광지 방문 후 반응, 감성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제안(3건)

자료: 행정안전부

6) 기관 의뢰 과제 예시:

- 경기도 이천시청: 이천시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 원인 빅데이터 분석
- 전라남도 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청 정보공개청구 민원 수요 패턴 분석
- 예술의 전당: 회원 및 공연 데이터를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 고객 특성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 학교시설 증·개축 우선순위 선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I챗봇 도입을 위한 콜센터 데이터 자연어 분석

7) 개별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뢰받은 과제가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련한 가상의 과제를 의미한다.

- 예시: • 유동적인 수요 예측 모델을 통한 재고관리 효율화
- 물동량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타임 세일 이벤트 시간 제안
 - 장애인 포용성 지수 개발을 통한 서울시 내 살지 좋은 지원 주택 추천 (서울시가 확보한 빅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빅데이터 캠퍼스' 자료 활용)

8) 행정안전부는 업무특성상 데이터 외부반출이 불가한 기관들이 있어 충분한 의뢰과제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9)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코드: 일반회계 1065-300)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①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② 전체 훈련시간의 30% 이상을 분석과제 기반으로 편성하여 훈련과정을 공급함으로써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자가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거치고, 이후 분석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부처별 빅데이터 인재양성 관련 사업 사례]

구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사업명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대 상	만 19세이상~34세 이하 (학력·전공 제한 없음)	별도 제한 없음
인 원	· 2020년 100명 · 2021년 1,020명	· 2020년 2,060명 ¹⁾ · 2021년 17,000명
내 용	· 1개월 사전교육 · 2개월 종합교육 · 4~6개월 인턴십	· 세부분야별/과정별 4~6개월 교육 · 전체 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분석과제 수행

주: 1) 빅데이터 외에 AI, 사물인터넷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연간운영인원임. 이 중 2020년 빅데이터 훈련생이 288명, 2021년에는 1,992명임

1.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공공빅데이터 활용활성화 사업의 세사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은 내일배움카드의 내역사업, 청년인재양성은 DB산업육성 사업의 세사업임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¹⁰⁾에서도,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양성 훈련과정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이 있을 경우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자를 행정·공공기관에 직접 배치함으로써 청년에게는 행정·공공기관에서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행정·공공기관에는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고용노동부 사업과 행정안전부 사업의 차별점은 ‘행정·공공기관’에 참여자를 직접 배치하여,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있으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되어 자체 발굴 분석과제를 수행

¹⁰⁾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21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21.7.

하도록 운영할 경우 이러한 차별점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21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배치된 참여자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자체 발굴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운영방식은 행정·공공기관에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¹⁾ 사업은 시·군·구 간 통합 사례인 창원시와 청주시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하여 자율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와 청주시에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각 통합에 따라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²⁾한다. 이 중 1/2은 특별교부세로, 나머지 1/2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³⁾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2009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하여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고, 2014년에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31-300

2)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35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였다. 지방분권법에 따라 창원시는 통합 다음해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청주시는 2015년에서 2024년까지 10년간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추진경과]

- '09.08.26. :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 발표(통합지자체 재정지원)
- '10.03.02. :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10. 7. 1. 창원시 출범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지원)
- '13.01.23. :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14. 7. 1. 청주시 출범 (2015년~2024년까지 10년간 지원)
- '20.12.22. :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사업 기간이 5년 연장('21~'25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이러한 재정 지원 규정은 한시 규정으로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적용된다.⁴⁾ 따라서, 향후 시·군·구가 통합되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⁵⁾ 최근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별 시·군·구가 폐지되고 통합지자체가 설치된 창원시·청주시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창원시는 당초 예정대로 2011년부터 매년 73억 3,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2020년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결되어 2021년 본예산에는 창원시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2월 창원시에게 5년간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지방분권법이 개정⁶⁾되었고, 2021년 예산에는 73억 3,2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다. 다만, 2021년에는 지난 10년간의 지원률인 '통합으로 인해 폐지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으로 이전 지원 규모와

4) 법률 제11829호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35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실제로, 2014년 (통합)청주시 이후에는 시·군·구 자율통합사례가 없었다.

6) 법률 제17700호, 2020.12.22. 일부개정, 2022.12.22. 시행

동일하나,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지원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7)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청주시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원만 반영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21년 3월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73억 3,2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예산 총액 166억 8,500만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교부·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8)으로 지원된다. 창원시와 청주시는 지원대상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신청하며, 행정안전부는 대상사업 여부 확인 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2021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53	9,353	0	0	7,332	16,685	16,685	0	0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0	0	0	0	7,332	7,332	7,332	0	0
청주시 자율통합지원금	9,353	9,353	0	0	0	9,353	9,353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의 실질행이 연례적으로 2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되고 있으며, 2020년 국회의 시정요구 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월금액이 확대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법률 제17700호 부칙 제2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특례)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8) 지역지원계정은 각 부처가 사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다.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자율계정과 구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형태로 창원시와 청주시에 교부하며, 창원시와 청주시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도로포장, 지역 시설 유지·보수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으로 창원시는 다리설치, 지역 체육시설 리모델링 등 13개 사업을, 청주시는 도로정비 등 2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 2021년도 사업개요]

대상기관	주요 사업 내용
경남 창원시	- 다리 설치, 지역 체육시설 리모델링, 도로 정비 등 13개 사업
충북 청주시	- 도로 정비 및 확포장 등 22개 사업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2021년 예산 166억 8,500만원 전액을 창원시와 청주시에 교부 하였으나, 2021년도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창원시의 실 집행률은 약 43.8%, 청주시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약 65.2%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2021년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사체명	연도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창원시	2020년	7,332	1,855	9,187	7,244	1,943	2	78.8
	2021년	7,332	1,941	9,272	4,059	5,213	0	43.8
청주시	2020년	9,353	2,663	12,016	9,917	2,095	4	82.5
	2021년	9,353	2,095	11,448	7,466	3,982	0	65.2

주: 집행액은 연도 말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창원시와 청주시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각 지

⁹⁾ 2020회계연도 국회 시정조치요구사항 (1)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이월 최소화 및 집행 독려 필요

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창원시와 청주시 모두 2020년보다 낮아졌으며, 이월 규모 또한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의 경우 지방분권법이 연말에 개정되면서, 보조금 교부 시기가 3개월 정도 지연이 발생하여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며, 도로 확포장 등 다년도 사업의 경우, 설계·보상·관계부서 협의 등 착공 이전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창원시가 2021년 3월에 예비비를 배정받고, 그 이후 대상사업 선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¹⁰⁾, 2021년 창원시의 집행 부진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청주시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 점검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집행부진이 누적되면서 편성된 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예산이 2회계연도까지 이월되고 있다. 2021년 창원시의 2021년도 편성예산의 당해연도 집행률은 40.2%였으며, 청주시는 63.4%였다.

¹⁰⁾ 예비비 배정, '21년 사업선정('21. 3.) → 추경확정('21. 5.) → 지원금 이체('21. 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 실적내역]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연도	예산액	연도별 집행액						평년집행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창원시	2021	7,332	0	0	0	0	0	2,949	40.2
	2020	7,332	0	0	0	0	5,477	1,025	74.7
	2019	7,332	0	0	0	5,846	1,438	46	79.7
	2018	7,332	0	0	4,808	2,116	406	0	65.6
	2017	7,332	0	4,302	1,579	1,461	0	0	58.7
청주시	2021	9,353	0	0	0	0	0	5,928	63.4
	2020	9,353	0	0	0	0	7,371	-	78.8
	2019	9,353	0	0	0	7,679	1,561	113	82.1
	2018	9,353	0	0	3,963	5,105	985	4	42.4
	2017	9,353	0	4,436	3,216	920	0	75	47.4

자료: 행정안전부

예산이 반영된 연도를 기준으로 2회계연도까지 이월되는 금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창원시와 청주시 모두 2019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에 창원시는 8억 3,000만원 청주시는 5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2회계연도 이월액 규모]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창원시	예산편성액	7,332	7,332	7,332	7,332	7,332
	2회계연도 이월액	1,461	406	46	830	0
청주시	예산편성액	9,353	9,353	9,353	9,353	9,353
	2회계연도 이월액	920	985	113	554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예산이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의 범위에서 이월할 수 있다.¹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불구하고¹²⁾ 해당 사업에 대하여 2회계연도에 걸쳐 이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 등 주로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¹³⁾에서 사업 수행에 있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계속 사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2021년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 외에 다른 부처·기관과의 협의 지연 또는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 완료된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1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용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2021년 지자체별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의 이월사유]

지자체명	사업명	이월사유
창원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사업	관급자재 납품지연
	노후 의창동주민자치센터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법 개정('21.4.)으로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공사일정 지연
	X 게임장 리모델링 공사	주요 관급자재 (모험놀이대 등) 납품지연
	청량산~무학산 연결교 설치공사	국토부 및 산림청 업무관련 협의 지연
	서원곡 씨름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지연
	진해역 벚꽃육교 리모델링 사업	입체교차 심의절차 이행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승인 지연 (국가철도공단)
	웅천왜성 역사문화환경 조성사업	현장확인 및 설계과정에서 사업내용 조정
	여좌동~석동 벚꽃길 정비	혁신시제품 보도블록 생산지연(조달청 시범사용사업 선정 추진 협의)
	드림파크 행복나눔길 조성 사업	사업대상지 추가 및 물량변경으로 공기연장
청주시	북이 광암리 도로확포장	토지수용재결절차에 따른 공사정지
	오창 성산리 도로확포장	구간 내 상수도 공사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간 도로확포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협의 지연
	미평동 도시계획도로(남지로 주변) 개설	계속사업으로 인한 준공기한(23.12) 미도래
	남이 부용외천3리 도로정비	한국도로공사 협의 지연(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협의 불가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 추진)
	북이 서당리 도로확포장	집행잔액 재투자(1회추경)로 당해 교부액 우선 집행으로 인한 이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에 있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⁴⁾

¹⁴⁾ 다만, 2022년도 현재(6월말) 기준 실적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창원시는 51.2%, 청주시는 49.12%를 집행하고 있어 예년과 비교하여 이월 최소화 및 연내 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현 황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¹⁾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지원을 위하여 부처 협업으로 긴급대응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평가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사업비를 출연²⁾하고 있으며, 2021년 20억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R&D)	15,723	15,723	0	0	0	15,723	15,723	0	0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000	2,000	0	0	0	2,000	2,0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과제 선정 시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과제 선정 이후의 사업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다른 부처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 중복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된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³⁾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931-627의 내역사업

2) 연구개발활동비(360-05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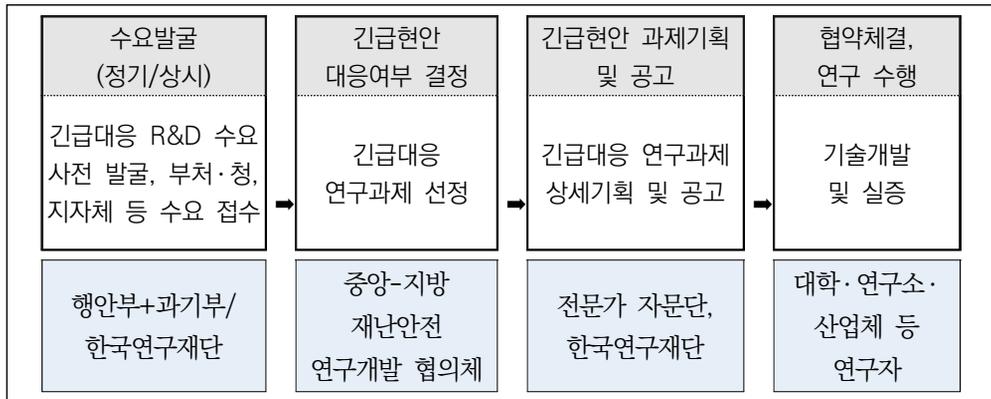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2018.3.

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전체 사업비를 7:3으로 나누어 투자하고 있다. 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양 부처의 예산을 매칭하여 과제별로 연구 수행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은 예산 확정 전년도에 과제를 선정·기획하지만, 동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연중 정기(상·하반기) 또는 상시적으로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예산 확정된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각 부처·청·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요를 발굴하고,⁴⁾ 발굴된 과제 중 중앙-지방재난안전연구개발 협의체⁵⁾가 긴급대응연구과제를 선정하면, 한국연구재단이 과제를 상세 기획하여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4)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예산 확정 전년도에 과제 선정 및 과제의 상세 기획을 하여 연초에 공고를 실시하지만, 동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이 확정된 이후부터 과제 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5)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적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등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예산 20억원 전액을 동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였으나, 한국연구재단은 20억원 중 17억원만 집행하고 3억 원은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한국연구재단	2,000	-	2,000	1,700	-	300	85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3억원의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2021년 신규 추진한 과제 16개 중 3개의 과제에 연구기관이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각 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긴급히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있어, 2021년에는 총 5차례 과제 공고를 하였는데, 11월에 실시한 4차 공고에서 2개 과제, 12월에 실시한 5차 공고에서 1개 과제에 응모한 기관이 없었다.

[2021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공고 현황]

(단위: 개)

공고일시		공고과제 수	기관 미응모과제 수
1차 공고	2021.6.1.	2	0
2차 공고	2021.6.7.	1	0
3차 공고	2021.9.8.	1	0
4차 공고	2021.11.24.	10	2
5차 공고	2021.12.3.	2	1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기관 미응모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미응모과제 명	수요기관	예산액
4차 공고	갯벌 고립사고 대응을 위한 갯벌 보행용 안전신발 개발	해양경찰청	500
	페비닐/페플라스틱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열분해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 산업공생 네트워크 모델 개발	충청북도	600
5차 공고	수소연료 기반 산물진화 소화약제 살포 BVLOS 무인드론 개발	강원도	1,100

자료: 행정안전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하였으나 응모한 기관이 없을 경우, 예산을 이월하여 2021년에 재공고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개발 과제는 각 부처의 수요를 바탕으로 발굴되고, 상세 기획까지 이루어지는 등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검토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안전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시급히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공고기간 단축, 제출 서류평가 절차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개발 사업보다도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사업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미응모된 3개 과제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시키면서, 미응모 과제들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동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양경찰청 과제의 경우 실무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었고, 강원도 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매칭 과제로 2022년 예산 미확보에 따른 것이었으며, 충청북도 과제의 경우 2022년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R&D사업과 과제가 유사하여 추진하지 않았다.

[2021년 미응모된 3개 과제의 2022년 추진포기사유]

과제명	갯벌 고립사고 대응을 위한 갯벌 보행용 안전신발 개발	폐비닐/폐플라스틱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열분해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 산업공생네트워크 모델 개발	수소연료 기반 산불진화 소화약제 살포 BVLOS 무인드론 개발
수요 부처	해양경찰청	충청북도	강원도
현안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갯벌 사고 사망자 증가 ○ 관광객 뿐 아니라 갯벌 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어민에게까지 파급될 경우 생활안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문제 등이 심각히 대두 ○ 국내 운영되고 있는 화분식 열분해의 경제·사회성을 평가하고 연속식 열분해의 성능과 효과성을 검증할 경우 에너지 전환에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대응 운용헬기 부족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특히 계절 산불 예방을 위해 현안 시급성 인정 ○ 동해안 산불방지 센터와 협업 시 성과 활용, 확산에 기여 가능
22년 미추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청 과의 실무 협의 지연 ○ 현재 해경 연구센터와 전문가 검토 중에 있음 	<p>‘22년 예산으로 재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나, 환경부 ‘22년 신규 R&D 사업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청 매칭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로, 강원도에서 다른 R&D에 응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이후, 강원도와 협의하여 행안부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23년 신규 지정과제¹⁾로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음

주: 1)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이 아닌, 별도의 연구개발 지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이 불용된 과제 중 강원도 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과제 실시여부가 변동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과제의 경우 2021년 9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인 2021년 11월에 과제를 공고했음에도, 환경부 과제와의 유사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과제선정절차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양경찰청 과제의 경우 실무협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필요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과제로 선정되었다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관리를 실시하고, 과제를 조속히 추진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동 사업의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과제 선정 이후의 사업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과제의 필요성·시급성과 함께 다른 부처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된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인사혁신처

I 결산 개요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83억 2,800만원이며, 682억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인 681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9,300만 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8,328	68,328	68,328	68,204	68,111	93	0	99.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7,724억 8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3조 7,65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104억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72,408	3,772,408	3,775,627	3,765,226	0	10,401	99.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4조 613억 9,200만원이며, 23조 2,681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7%인 23조 2,034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629억 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8억 3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4061,392	24061,392	24061,392	23,268,132	23,203,428	62,901	1,803	99.7

자료: 인사혁신처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24조 613억 9,200만원이며, 이 중 96.4%인 23조 2,034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8,579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4,061,392	24,061,392	24,061,392	23,203,428	-	857,964	96.4

자료: 인사혁신처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034억 3,000만원(2.4%) 감소한 16조 5,24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879억원(5.7%)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271	7,084	7,084	6,867	△217	1,596
기금	15,631,061	16,920,530	16,920,530	16,517,317	△403,213	886,256
합계	15,636,332	16,927,614	16,927,614	16,524,184	△403,430	887,85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87억 3,800만원(0.3%) 감소한 21조 3,256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478억원(3.6%)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75,867	204,058	204,058	196,876	△7,182	21,009
기금	20,402,004	21,180,341	21,180,341	21,128,784	△51,557	726,780
합계	20,577,871	21,384,399	21,384,399	21,325,660	△58,739	747,78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인사혁신처의 자산은 20조 9,502억 1,300만원, 부채는 955조 8,598억 1,200만원으로 순자산은 △934조 9,095억 9,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조 8,322억 4,500만원, 투자자산 9조 6,857억 8,500만원, 일반유형자산 6조 7,548억 500만원, 무형자산 196억 600만원 및 기타비유동자산 6,577억 7,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2,245억 1,700만원(6.2%)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자산재평가 및 공무원 임대주택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1조 2,191억 3,2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조 4,123억 8,800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3,970억 5,200만원,

장기충당부채 951조 972억 1,4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9,531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7조 1,561억 5,500만원(8.8%)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77조 6,408억 3,100만원 증가 및 장기차입금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828억 5,9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0,950,213	19,725,696	1,224,517	6.2
Ⅰ. 유동자산	3,832,245	3,605,686	226,559	6.3
Ⅱ. 투자자산	9,685,785	9,982,496	(296,711)	(3.0)
Ⅲ. 일반유형자산	6,754,805	5,535,673	1,219,132	22.0
Ⅴ. 무형자산	19,606	14,210	5,396	38.0
Ⅴ. 기타비유동자산	657,772	587,631	70,141	11.9
부 채	955,859,812	878,703,657	77,156,155	8.8
Ⅰ. 유동부채	1,412,388	1,552,377	(139,989)	(9.0)
Ⅱ. 장기차입부채	2,397,052	2,579,911	(182,859)	(7.1)
Ⅲ. 장기충당부채	951,097,214	873,456,383	77,640,831	8.9
Ⅳ. 기타비유동부채	953,158	1,114,986	(161,828)	(14.5)
순 자 산	(934,909,599)	(858,977,961)	(75,931,638)	(8.8)
Ⅰ.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945,127,180)	(867,956,428)	(77,170,752)	8.9
Ⅲ. 순자산 조정	5,528,674	4,289,560	1,239,114	28.9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2조 2,504억 4,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1조 246억 3,300만원, 관리운영비 1,428억 500만원, 비배분비용 312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6조 449억 1,500만원, 비배분수익 7,155억 2,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1,878억 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조 1,034억 3,200만원(21.5%) 증가한 34조 4,382억 5,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관련 비용 증가 등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 6조 2,862억 5,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34조 9,653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72억 3,400만원과 경비 755억 7,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177억 8,200만원 및 기타비용 134억 7,800만원 등으로, 배분수익은 이자수익 2,501억 5,900만원, 자산처분이익 3,785억 6,300만원, 기타 868억 600만원, 비교환수익은 정부외자산수증 등 무상이전수입 2조 1,878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4,979,718	28,693,460	6,286,258	21.9
가. 프로그램 총원가	51,024,633	44,626,178	6,398,455	14.3
나. 프로그램 수익	16,044,915	15,932,718	112,197	0.7
II. 관리운영비	142,805	89,386	53,419	59.8
III. 비배분비용	31,260	80,509	(49,249)	(61.2)
IV. 비배분수익	715,528	528,532	186,996	35.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4,438,255	28,334,823	6,103,432	21.5
VI. 비교환수익 등	2,187,808	1,736,764	451,044	26.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2,250,447	26,598,059	5,652,388	21.3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858조 9,779억 6,1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934조 9,09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5조 9,316억 3,800만원(8.8%) 감소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32조 2,504억 4,700만원 발생하고 조정항목이 △44조 8,414억 8,300만원이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1,602억 9,2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3조 7,734억 2,0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등 재원의 이전 2조 6,131억 2,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739억 1,5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조 1,651억 9,9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46조 805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858,977,961)	(788,096,827)	(70,881,134)	(9.0)
II. 재정운영결과	32,250,447	26,598,059	5,652,388	21.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60,292	564,740	595,552	105.5
IV. 조정항목	(44,841,483)	(44,847,815)	6,332	0.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934,909,599)	(858,977,961)	(75,931,638)	(8.8)

자료: 인사혁신처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 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조 5,684억원 전출되었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12억원 전입되었다.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인사혁신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정보화), ② 공무원연금대부(용자)가 있다.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정보화)은 2.1억원(65.5억원 → 63.4억원) 감액되었고, 공무원연금대부(용자)는 500억원 감액(1조원 → 9,500억원)되었다.

인사혁신처는 ①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선발·육성, ② 공직사회 포용과 상생 가치 실현 및 근무여건 개선, ③ 과학적 인사행정 기반 구축 및 인사행정 한류 확산, ④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를 2021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공무원연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고 향후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연금 대부분은 공무원들의 수요가 높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므로 대출 총액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공무원 시험관련 용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하면서 관서운영경비 최고액(500만원) 이내로 여러 번 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사 상당수가 퇴사하여 상담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상담사 수는 고정적이나 상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공무원연금

가. 제도 개요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률은 국가와 공무원이 각각 9%이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며,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 당 2021년 기준으로 1.78%이다. 연금지급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p씩, 2026~2035년까지는 매년 0.004%p 인하되어 2035년에 1.7%가 된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비공무상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비공무상장해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다. 연금급여 유형 중 퇴직연금이 대표적인데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매월 지급받게 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26만 1,421명이고, 연금수급자는 59만 4,952명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연금급여 유형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지급 -비공무상장해연금: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1~7급)로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1~7급)가 되었을 때 지급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또는 퇴직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지급																
연금 수급개시 연령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																
	구 분		수급개시연령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2000.12.31.기준 재직 20년 이상	퇴직 후 다음 달 부터														
		2000.12.31.기준 재직 20년 미만	미달연수의 2배 충족	퇴직 후 다음 달 부터													
		미달연수의 2배 미충족	<table border="1"> <thead> <tr> <th>퇴직연도</th> <th>연금수급개시연령</th> </tr> </thead> <tbody> <tr> <td>2015~2016년</td> <td>57세</td> </tr> <tr> <td>2017~2018년</td> <td>58세</td> </tr> <tr> <td>2019~2020년</td> <td>59세</td> </tr> </tbody> </table>	퇴직연도	연금수급개시연령	2015~2016년	57세	2017~2018년	58세	2019~2020년	59세						
퇴직연도	연금수급개시연령																
2015~2016년	57세																
2017~2018년	58세																
2019~2020년	59세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퇴직연도</th> <th>연금수급개시연령</th> </tr> </thead> <tbody> <tr> <td>2016~2021년</td> <td>60세</td> </tr> <tr> <td>2022~2023년</td> <td>61세</td> </tr> <tr> <td>2024~2026년</td> <td>62세</td> </tr> <tr> <td>2027~2029년</td> <td>63세</td> </tr> <tr> <td>2030~2032년</td> <td>64세</td> </tr> <tr> <td>2033년 이후</td> <td>65세</td> </tr> </tbody> </table>	퇴직연도	연금수급개시연령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퇴직연도	연금수급개시연령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월급여 수준	퇴직연금액 = 2009년 이전(A) + 2010~2015년 기간(B) + 2016년 이후(C) · A: (평균 보수월액×20년 이하 재직연수 × 2.5%)+(평균 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연수×2%) · B: 평균 기준소득월액 ¹⁾ × 재직연수× 연금지급률 · C: ①소득재분배=평균 기준소득월액× 재분배 적용비율× 재직연수× 1.0% · C: ②소득비례=평균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연금지급률 - 1%)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 '20년 1.79%→'25년 1.74%→'30년 1.72%→'35년 1.7%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p씩, 2026~2035년까지는 매년 0.004%p씩 인하되어 2035년에 1.7%)																
가입자 수	2021년 기준 1,261,421명																
수급자 수	2021년 기준 594,952명 (퇴직연금 521,486 / 비공무상장해연금 5 / 퇴직유족연금 73,461)																

주: 1)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의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2010년 이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참고〉 2016년 공무원연금 관련 주요 개정사항

항목	내용					
기여율 부담률	〈기여율·부담률 변화〉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입자기여율	8.0	8.25	8.5	8.75	9.0
	국가부담률	8.0	8.25	8.5	8.75	9.0
	합계	16.0	16.5	17.0	17.5	18.0
재직기간 상한	36년(기존 33년) (15.12.31.기준 재직기간)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5년 미만: 36년					
연금지급률	재직기간 1년당 1.7%(단계적 인하) '16년 1.878%→'20년 1.79%→'25년 1.74%→'30년 1.72%→'35년 1.7%					
소득재분배 도입	지급률 1.7% 중 1.0%(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소득상한 강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기존 1.8배)로 하향 조정					
연금지급개시 연령	'96년 이후 임용자 65세로 단계적 연장 '22년 61세→'24년 62세→'27년 63세→'30년 64세→'33년 65세					
연금수급요건	재직기간 10년(기존 20년) 이상					
퇴직유족연금 지급률	개정 이후 퇴직유족연금 사유 발생한 수급자부터 퇴직연금의 60% 적용 (기존 7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는데 동 기금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자체수입(공무원 기여금, 지자체 부담금, 용자원금 회수 등), 정부내부수입(국가 부담금 등),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공무원연금급여, 대부·주택·시설사업,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구분	항목		내용
수입	자체수입	경상이전 수입	-공무원 연금기여금: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9.0%) -지자체 연금부담금: 지자체가 납부하는 보험료(9.0%) -지자체 보전금 등
		용자원금 회수	공무원연금대부 회수금, 학자금대부 회수금
		기타	임대주택 및 회관 임대수입, 공무원연금대부 이자수익, 주택·후생복지시설 운영수입, 유가증권 투자수익 등
	정부내부수입	국가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여유자금회수	채권·주식·대체투자, 지불준비금 등 유가증권 투자 회수금	
지출	공무원연금급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출하는 각종 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대부사업	공무원연금대부금, 학자금대부금	
	주택사업	임대주택 건립비, 재건축 분담금,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시설사업	위탁사업장 운영비, 시설유지비, 보유시설 개보수비용 등	
	여유자금운용	채권·주식·대체투자, 지불준비금 등 유가증권 투자금	
	기금운영비 및 기타	기금 일반운영경비, 연금지 제작비, 연금담당자·퇴직예정자 교육비, 금융자산운용경비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1-1.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 운용 현황 및 재정수지

2021년 말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자산은 21.3조원으로 금융부문 8.1조원(38.0%), 용자부문 4.4조원(20.7%), 복지부문 6.7조원(31.4%), 기타부문 2.1조원(9.9%)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부문은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이고, 용자부문은 대여학자금, 공무원연금대출 등이다. 그리고 복지부문은 공무원 주택 건설 및 임대, 골프장, 리조트 등 후생복지사업 등이고, 기타부문은 미수 연금수익 등이 포함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운용자산 중 부문별 비중 추이를 보면, 금융부문과 용자부문은 각각 2017년 45.5%, 26.4%에서 2021년 38.0%, 20.7%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복지부문과 기타부문은 각각 2017년 25.3%, 2.8%에서 2021년 31.4%, 9.9%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부문	8.1 (45.5)	8.8 (48.3)	8.9 (47.1)	8.2 (41.4)	8.1 (38.0)
용자부문	4.7 (26.4)	4.6 (25.3)	4.5 (23.8)	4.4 (22.2)	4.4 (20.7)
복지부문	4.5 (25.3)	4.5 (24.7)	5.1 (27.0)	5.4 (27.3)	6.7 (31.4)
기타부문	0.5 (2.8)	0.3 (1.6)	0.4 (2.1)	1.8 (9.1)	2.1 (9.9)
합계	17.8	18.2	18.9	19.8	21.3

- 주: 1. 공무원연금기금 재무상태표 총자산 기준
 2. 금융부문은 각 연도 말 기준 시가평가 반영한 금액
 3. 용자부문은 대여학자금 및 공무원연금대출 자산
 4. 기타부문은 미수 연금수익 등 반영
 5. ()는 전체 자산에 대한 각 부문의 비중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금융부문 운용자산 수익률 변동폭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Delta 1.7\%$ 에서 9.6% 로 $11.3\%p$ 였다.¹⁾ 2021년의 경우 금융부문 운용자산 수익률은 2020년 대비 $1.5\%p$ 하락한 8.1%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자산유형 중 국내·외 채권 수익률과 국내 주식 수익률이 각각 전년 대비 $3.9\%p$, $24.6\%p$ 하락한 데 기인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부문	6.8	$\Delta 1.7$	8.0	9.6	8.1
채권	0.8	4.0	4.5	2.7	$\Delta 1.2$
국내	0.5	4.8	3.9	2.0	$\Delta 1.2$
해외	4.5	$\Delta 1.1$	7.6	5.2	$\Delta 1.0$
주식	22.0	$\Delta 14.8$	17.4	22.9	16.3
국내	26.4	$\Delta 17.9$	10.4	32.0	7.4
해외	10.1	$\Delta 7.8$	31.1	8.4	29.4
대체투자	4.8	8.1	8.3	7.3	18.5
국내	3.2	5.8	8.0	8.7	17.8
해외	6.5	7.8	8.8	6.2	19.1
단기금융상품	1.6	1.9	1.9	1.4	1.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기금 금융자산 수익률을 벤치마크(BM)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2017년을 제외하면 기금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양호하였다. 특히, 2021년 기금수익률은 벤치마크 대비 $3.80\%p$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기금 금융자산 수익률 BM 대비 현황]

(단위: %, %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금수익률(A)	7.05	$\Delta 1.45$	8.36	10.50	8.61
BM수익률(B)	7.06	$\Delta 1.71$	7.90	9.05	4.81
차이(A-B)	$\Delta 0.01$	0.26	0.46	1.45	3.8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1) 2018년 수익률은 $\Delta 1.7\%$ 로 나타났는데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수익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년) 결산기준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보전금은 2017년 2조 2,820억원에서 2021년 3조 2,400억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은 가입자기여금·국가부담금과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17년 12조 6,000억원에서 2021년 15조 6,647억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여금은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입자기여율과 국가부담률이 매년 0.25%p 인상되어 2020년부터 9.0%를 유지함에 따라 2017년 10조 4,359억원에서 2021년 13조 3,171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수당 국가부담금은 2017년 2조 441억원에서 2021년 2조 2,167억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출은 2017년 14조 8,820억원에서 2021년 18조 9,047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하여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5.6%를 0.6%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 (A)	가입자기여	48,676	53,376	57,107	60,399	62,088	6.3
	국가부담(사용자)	55,683	60,319	65,406	69,614	71,083	6.3
	기여금 계	104,359	113,695	122,513	130,013	133,171	6.3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20,441	20,715	23,350	25,662	22,167	2.0
	기타	1,200	150	2,674	255	1,309	2.2
수입 합계(A)		126,000	134,560	148,537	155,930	156,647	5.6
지출(B)		148,820	157,366	169,100	181,574	189,047	6.2
재정수지(A - B)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9.2
국고지원(C)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9.2
국고지원 후 당기수지(A - B + C)		0	0	0	0	0	0
연도말 누적적립금		109,506	108,379	120,429	133,087	151,752	8.5

주: 1. 가입자기여에는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등이 포함
 2. 국가부담은 연금부담금과 연금이체부담금의 합이며, 재해보상부담금은 제외
 3. 기타는 연금회계 사업외수익으로 공무원연금기금전입금, 급여환수금, 잡수익 등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유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수급자 수 연평균 증가율(5.7%)이 가입자 수 연평균 증가율(3.0%)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가입자는 2017년 112만 458명에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인해 2021년 126만 1,421명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수급자는 2017년 47만 6,184명에서 2021년 59만 4,952명으로 연평균 5.7%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가입자 수	1,120,458	1,160,586	1,195,051	1,221,322	1,261,421	3.0
수급자 수	476,184	502,507	531,828	563,414	594,952	5.7

- 주: 1. 2018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금제도 가입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연금 수급자 제외
 3. 분할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보다 높고,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이 적용(2021년 연금인상율 0.5%)²⁾됨에 따라 보전금은 2017년 2조 2,820억원에서 2021년 3조 2,400억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1-2.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대출가능 총액 확대 검토 필요 등

가. 현황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¹⁾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확보 및 기금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대부(용자)의 2021년도 계획현액 9,500억원 중 9,484억 3,000만원(99.8%)을 집행하고, 15억 7,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대부	950,000	950,000	0	950,000	948,430	99.8	0	1,570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²⁾와 공무원연금공단 내부 규정인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103조의3³⁾에 근거하여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일반대출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대부를 의미하고, 주택대출은 주택을 임차 또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대부를 말하며, 특례대출은 3자녀,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질병휴직, 자녀결혼,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등 사회 정책적 배려 대상인 공무원에 한정하여 대부하는 것이다.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42-322

2)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3)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103조의3(연금대부 종류 및 대상) 연금대부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고용원에 대한 대부

2. 주택자금대출: 주택을 임차 또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부

3. 특례대출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대출대상	구분		대상		
	일반대출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전년도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한 자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대출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 • 주택자금대출(2종): 주택구입, 주택임차 • 사회정책적대출(11종): 미취학자녀, 질병휴직,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부양, 육아휴직, 3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대출한도	(단위: 점, 만원)				
	신용점수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2,000	2,000	7,000	3,000
	665~804	1,000	1,000	5,000	2,000
515~664	500	500	3,000	1,000	
0~514	대출불가				
대출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택자금대출: 한국은행 공표 분기연동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 사회정책적대출: 연금대출 기준이자율에서 1%p를 인하 				
상환기간	(단위: 만원)				
	대출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고	
	500~2,000	12개월 이내	72개월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2,000 초과 5,000		120개월		
5,000초과	144개월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보수지급일에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출금이체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출금) 				
연체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 2022년 기준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공무원연금대부는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수요가 높고, 이자수익은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보이므로 대출가능 총액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연체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장기 연체자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거나 급여압류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공무원후생복지⁴⁾를 위하여 예상퇴직급여의 50% 범위 이내⁵⁾에서 신용점수에 따라 일반대출의 경우 2,000만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7,000만원까지, 사회정책적대출의 경우 3,000만원까지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연금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금리를 기초로 산정하고,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일반·주택자금대출은 3.91%, 사회정책적대출은 2.91%이다.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대출한도 현황]

(단위: 점, 만원)

신용점수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805~1,000	2,000	7,000	3,000
665~804	1,000	5,000	2,000
515~664	500	3,000	1,000
0~512	0	0	0

주: 2022년 기준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동 사업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018

4)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103조의2(연금대부 한도) ① 연금대부 한도는 대부를 받는 사람의 예상퇴직급여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공단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까지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상퇴직급여 2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03조의3의 대부종류별 대부한도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년, 2019년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2,000억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8,000억원을 대부분 집행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계획현액 9,000억원, 9,500억원이 대부분 집행되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대부(우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7	600,000	800,000	0	800,000	799,994	99.9	0	6
2018	600,000	800,000	0	800,000	795,412	99.4	0	4,588
2019	600,000	800,000	0	800,000	799,919	99.9	0	81
2020	900,000	900,000	0	900,000	899,971	99.9	0	29
2021	950,000	950,000	0	950,000	948,430	99.8	0	1,570

주: 수정은 추정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이와 같이 공무원 개인당 대출한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공무원 연금대부 사업의 계획현액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수익률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2.98%~3.46% 수준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운용 중인 자산인 채권과 주식 수익률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대부, 채권, 주식 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무원연금대부	3.3	3.6	3.3	3.0	2.5
채권	0.8	4.0	4.5	2.7	△1.2
주식	22.0	△14.8	17.4	22.9	16.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공무원연금대부는 퇴직시 미납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고, 공무원연금대부 연체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대부 연체율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체율	1.27	1.22	1.30	1.13	0.9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계획액이 매년 전액 집행된다는 점,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점,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출가능 총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공무원연금대부 대출가능 총액이 상향되는 경우 연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연체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월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급여원천징수 등의 방안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기금기여금은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어 적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연금대부에 대해 일정기간 장기연체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거나 급여압류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무원연금대부는 예상퇴직급여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정책적 대출은 3자녀, 신혼부부 등 정책배려 대상 공무원에 대한 대출이므로 대부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사혁신처는 신용점수가 낮은 공무원의 대출 제한 또는 대출한도 조정, 미납자에 대한 급여원천공제 요구 등 더욱 철저한 연체관리를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년부터 신용점수가 낮은 공무원의 대출한도를 일반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804점 이하 공무원은 500만원 감액하고, 사회정책적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804점 이하 공무원은 500~1,000만원 감액하였다. 그리고 공단은 6개월 이상 연체자의 재직 중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대부 상환금을 원천공제 요구할 수 있도록 대출약정서를 변경하였다.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대출한도 변경 현황]

(단위: 점, 백만원)

신용점수	은행 신용등급	2021(A)			2022(B)			차이(B-A)		
		일반	주택	사회	일반	주택	사회	일반	주택	사회
805~1,000	1~4	20	70	30	20	70	30	0	0	0
665~804	5~6	15	50	25	10	50	20	△5	0	△5
515~664	7~8	10	30	20	5	30	10	△5	0	△10
0~512	9~10	5	0	0	0	0	0	△5	0	0

주: 신용점수는 NICE신용평가정보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런데 공무원연금대부는 예상퇴직급여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정책적 대출은 3자녀, 신혼부부 등 정책배려 대상 공무원에 대한 대출이므로 적절한 범위의 대부한도 축소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회 지적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장기연체로 인한 이자 미수납액이 많은 신용점수·대출종류 범주에 있는 공무원의 대출한도를 감액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대부 미납이자⁶⁾ 현황을 살펴보면, 미납이자자는 2017년 34억 9,200만원에서 2019년 40억 3,50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33억 8,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연체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납이자 대부분이 공무원 재직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연금퇴직급여에서 향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실채권화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한, 사회정책적대출은 3자녀,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 사회 정책적 배려 대상인 공무원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연금대부 미수납액의 최소화는 대출한도 축소이외에 장기연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대부 상환금 원천공제를 요구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이고, 사회정책적 대출은 제도 취지상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대부 대출한도 축소에 대해 적절히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미납이자: 상환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이자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대부 미납이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미납이자	3,492	3,866	4,035	3,693	3,38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미납이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체기간	재직자		퇴직자		합계	
	인원	미납이자	인원	미납이자	인원	미납이자
6개월 미만	3,263	94	0	0	3,263	94
6개월~1년	526	74	0	0	526	74
1년~2년	731	180	0	0	731	180
2년~3년	710	267	0	0	710	267
3년 이상	1,745	2,766	4	3	1,749	2,769
합계	6,975	3,381	4	3	6,979	3,384

주: 2021년말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공무원 시험관련 물품 구매·제작비용 집행방식 개선 필요

가. 현황

국가시험 시행 사업¹⁾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가시험의 시행·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시험 시행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59억 4,100만원 중 157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시험 시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시험 시행	14,123	14,123	0	1,818	15,941	15,743	98.8	0	19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국가공무원 시험관련 용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하면서 관서운영경비 최고액(500만원) 이내로 여러 번 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므로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9급, 7급 공채 시험 시 사용하는 호각, 불펜 등 구매와 안내표지, 답안지 회수용 봉투, 서약서 등을 제작하면서 일반수용비 1억 6,048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업체에 500만원 이내로 여러 번 결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역이 있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631-300

는 것으로 보인다.

[2021회계연도 국가공무원 시험관련 용품(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일자	내용	집행액	집행대상
3.31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호각 등) 구매 비용지급	4,832,0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투명테이프 등) 구매 비용지급	3,504,000	공간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각종서식) 제작 비용지급	1,080,000	중앙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안내표지 7종) 제작 비용지급	4,930,000	사)한국 장애인 유권자연맹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회수용 봉투 제작 비용지급	4,940,000	미래
4.28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 시험 용품(폐답안지봉투 등) 제작비용 지급	2,464,000	중앙인쇄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용품(책임 관 봉투 등) 제작 비용 지급	3,650,000	중앙인쇄
4.29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간이소변기) 구매비용 지급	1,760,000	프리즘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종이백 등) 구매비용 지급	3,801,000	공간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적색볼펜 등) 구매비용 지급	4,882,600	오피스디포 세종청사점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용품(건전지 등) 구매비용 지급	1,494,180	오피스디포 세종청사점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확대답안지 제작비용 지급	2,200,0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물티슈 등) 구매비용 지급	4,276,000	(주)케이에스 센세이션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방역용품 (안면보호구) 구매비용 지급	4,950,000	(주)케이에스 센세이션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방역용품 (항균필름 등) 구매비용 지급	4,900,000	공간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수당용가방 등) 구매비용 지급	2,904,000	(주)케이에스 센세이션

일자	내용	집행액	집행대상
5.4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박스 등 구매비용 지급	3,280,000	미래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응시자준수사항 등) 제작 비용지급	1,440,000	미래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방역용품 (항균비누 등) 구매비용 지급	4,983,5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방송용품 (CD) 제작비용 지급	4,730,000	(주)오드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방역용품 (방역복 세트) 구매비용 지급	2,250,0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시험실 표지 등) 제작 비용 지급	3,500,000	정다운 우리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용품 (감독관 서약서 등) 제작 비용 지급	3,996,000	정다운 우리들
5.25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방역담당 관 근무요령 제작 비용 지급	4,972,0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파견관 교 육자료 제작비용 지급	4,950,000	(주)케이에스 센세이션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파견관 근무요령 제작 비용 지급	4,928,000	공간기획
7.14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방역용품 (방역마스크) 구매비용 지급	2,030,000	희망자리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용품 (감독관 리본 등) 구매비용 지급	3,125,000	동광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용품 (호각 등) 구매비용 지급	1,625,0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방역용품 (항균비누 등) 구매비용 지급	3,765,000	공간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파견관 근무요령 등 제작 비용지급	4,950,0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용품 (물티슈 등) 구매비용 지급	4,648,000	(주)케이에스 센세이션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용품 (시험실번호표지 등) 제작비용 지급	3,721,000	정다운 우리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용품 (책임관 봉투 등) 제작비용 지급	748,000	중앙인쇄

일자	내용	집행액	집행대상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감독관 근무요령 제작비용 지급	4,983,000	(사)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장용 덧신 구매비용 지급	3,768,600	(주)예인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시험용품(적색볼펜 등) 구매비용 지급	4,148,180	오피스디포세 총청사점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용품(응시자준수사항 등) 구매 비용지급	1,592,000	미로도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시험용품(답안지회수봉투 등) 구매비용 지급	4,760,000	미래
8.26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 방역물품(KF94마스크) 구매비용 지급	1,450,000	희망자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시험용품(칫솔세트) 구매비용 지급	2,695,000	다원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면접위원회회의자료 제작비용 지급	4,968,000	공간기획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시험용품(갑티슈 등)	2,581,300	(주)경성 문화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방역용품(라텍스 장갑 등) 구매비용 지급	4,367,500	(주)케이에스 센세이션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면접시험 시험용품(응시자명찰) 구매비용 지급	4,954,400	(주)케이에스 센세이션
	합계	160,477,260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상 국고금 지출원칙의 특례로서, 관서를 운영 하는데 드는 경비로 그 성질상 원칙적인 지출절차 규정에 따라 지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²⁾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2)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1조3)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4)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일반수용비 등은 관서 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지출절차 규정에 따라 지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9급, 7급 공채 시험은 연간 계획된 날짜에 시행되는 것으로 시험관련 물품 구매나 제작비용은 관서운영경비가 아니라 지출관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 지출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관련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지출관 검토를 거치는 지출의 일반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경우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 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가. 현황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사업¹⁾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원 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사업²⁾의 내역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0억 4,000만원 중 9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5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1,572	1,572	0	71	1,643	1,521	92.6	0	12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1,040	1,040	0	0	1,040	925	88.9	0	11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사 상당수가 퇴사하여 상담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상담사 수는 고정적이거나 상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2008년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말 기준 2개 권역, 총 6개소(상담사 18명)가 설치되었고, 일반용역을 통해 권역별로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사업은 2020년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2) 코드: 일반회계 1644-306

[2020~2021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권역(휴노)			2권역(한국EAP협회)		
	서울	과천	영남	세종	대전	호남
설치장소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구청사	세종청사	대전청사	광주청사
설치시기	2008	2012	2020	2014	2013	2020
상주상담사	3	3	2	5	3	2
이직자	0	2	0	7	3	1
2021년 집행액	435			490		

주: 이직자는 2020~2021년 2년 동안 이직자 수임

자료: 인사혁신처

동 센터의 사업대상은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이고, 사업 프로그램은 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특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종류]

구분	내용	시기
상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대면/비대면(전화, 화상, 이메일, 채팅 등) - 2021년: 5~10회(필요시 연장가능) - 2022년: 10회(필요시 연장가능)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심리상담: 상담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상담 - 기관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및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대면/비대면(수요조사 및 개별요청에 따라) 	상시
진단 및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 / 비대면 	상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단체프로그램 - 재해 예방 프로그램, 신규공무원 직무 적응, 개별 부서 요청에 따른 기획 프로그램 등 	월 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 민원담당공무원 특별관리 프로그램 • 고위험업무 수행자 PTSD 예방지원 프로그램 • 긴급 위기지원시스템 •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프로그램 	상시 (개별 요청에 따라 조정)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2020~2021년 2년 동안 용역수행업체의 상담인력 18명 중 13명의 이직이 발생하였고, 상담 기록물을 후속 용역위탁업체에 인계하는 경우 상담일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 상담에 대한 상담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센터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20,079건에서 2020년 23,423건, 2021년 32,279건으로 센터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을 진행함에 따라 상담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상담사 이직이 주로 세종센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택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의 이직 수요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증액 노력과 위탁용역 계약추진 시 상담사 전문성 및 우수 상담사 유지 방안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담사의 이직률이 높을 경우 공직 근무환경 등 내담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내담자별 상담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상담사 퇴직 발생 후 인력 충원 시 경력 및 전문성이 우수한 상담사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상담사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을 통해 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센터당 2~5명의 상담사로 개인 및 집단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단체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업무량도 이직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혁신처는 센터별 업무량 대비 적정한 상담사 인원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청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466억 1,800만원이며, 2조 1,552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1.0%인 1조 997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1조 503억 9,9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0억 8,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63,925	863,925	863,925	2,053,891	998,434	1,050,376	5,080	48.6
책임운영특별회계	82,693	82,693	82,693	101,330	101,306	22	1	100.0
합계	946,618	946,618	946,618	2,155,220	1,099,740	1,050,399	5,082	51.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2021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조 490억 9,100만원이며, 이 중 97.3%인 11조 7,228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64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97억 9,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경찰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1,926,669	11,930,539	11,961,652	11,639,009	16,389	306,254	97.3
책임운영특별회계	82,693	82,693	82,871	79,294	41	3,537	95.7
지역발전특별회계	4,568	4,568	4,568	4,568	0	0	100.0
합계	12,013,930	12,017,800	12,049,091	11,722,871	16,429	309,791	97.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은 16조 9,094억 7,700만원, 부채는 2,684억 3,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6조 6,410억 4,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1,020억 8,900만원, 일반유형자산 15조 6,965억 2,500만원, 무형자산 752억 2,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2조 725억 8,600만원 (14.0%) 증가하였다. 이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미수채권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654억 2,800만원 증가, 토지 및 건물 등의 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조 9,854억 9,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588억 4,200만원, 장기충당부채 886억 9,6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840억 2,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8억 2,600만원(0.3%)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 금융리스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64억 700만원 증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상황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45억 3,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6,909,477	14,836,891	2,072,586	14.0
Ⅰ. 유동자산	1,102,089	1,036,661	65,428	6.3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15,696,525	13,711,028	1,985,497	14.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75,226	53,309	21,917	41.1
Ⅵ. 기타비유동자산	35,637	35,893	△256	△0.7
부 채	268,431	267,605	826	0.3
Ⅰ. 유동부채	36,866	36,827	39	0.1
Ⅱ. 장기차입부채	58,842	52,435	6,407	12.2
Ⅲ. 장기충당부채	88,696	89,783	△1,087	△1.2
Ⅳ. 기타비유동부채	84,026	88,559	△4,533	△5.1
순 자 산	16,641,046	14,569,286	2,071,760	14.2
Ⅰ.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906,181	2,975,580	△69,399	△2.3
Ⅲ. 순자산 조정	6,836,215	4,695,056	2,141,159	45.6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3조 7,370억 4,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6,799억 8,800만원, 관리운영비 12조 4,475억 2,100만원, 비배분비용 8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88억 7,000만원, 비배분수익 3,422억 6,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억 4,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조 2,776억 9,700만원(10.3%) 증가한 13조 7,371억 9,500만원이며, 이는 토지 및 건물 등과 관련된 평가손실 증가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 대비 1조 3,490억 7,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치안인프라구축 프로그램(4,613억 2,600만원)과 교통안전·소통확보 프로그램(3,189억 3,400만원), 사회질서유지 프로그램(2,096억 2,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조 9,868억 8,300만원과 복리후생비 1조 4,898억 3,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4,500만원과 기타비용 7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631,118	1,398,993	232,125	16.6
가. 프로그램 총원가	1,679,988	1,434,932	245,056	17.1
나. 프로그램 수익	48,870	35,939	12,931	36.0
Ⅱ. 관리운영비	12,447,521	11,098,450	1,349,071	12.2
Ⅲ. 비배분비용	816	8,063	△7,247	△89.9
Ⅳ. 비배분수익	342,260	46,009	296,251	643.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3,737,195	12,459,498	1,277,697	10.3
Ⅵ. 비교환수익 등	147	156	△9	△5.8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3,737,048	12,459,342	1,277,706	10.3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4조 5,692억 8,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6조 6,410억 4,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조 717억 6,000만원(14.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3조 7,370억 4,800만원 인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3조 6,676억 4,800만원, 조정항목은 2조 1,411억 6,000만원으로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조달및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조달 14조 7,093억 8,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이전 1조 417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조 1,411억 6,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 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4,569,286	13,932,912	636,374	4.6
II. 재정운영결과	13,737,048	12,459,342	1,277,706	10.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3,667,648	12,869,431	798,217	6.2
IV. 조정항목	2,141,160	226,285	1,914,875	846.2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6,641,046	14,569,286	2,071,760	14.2

자료: 경찰청

다. 재정 구조

2021 회계연도 경찰청의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특별회계로 443억원 전출되었다.

[2021 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이 있다. “국제경찰청장회의의 2021년도 개최방식을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추진시 일방적 초청 방식이 아닌 순환 개최방식으로 변경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다. 코로나 19 대비 고용대책 지원과 관련된 증액 추경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활동비 및 부대경비 38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다.¹⁾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3.

경찰청은 ① 국민체감 경찰개혁, ② 든든한 이웃경찰, ③ 당당한 책임경찰, ④ 따뜻한 공감경찰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① 시범운영기간(6개월)을 거쳤음에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② 국가경찰 예산과 자치경찰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은 2021년 공사계약이 유찰되어 불용되었음에도 기자재 공급계약과 감리계약 등을 연말에 체결하여 예산을 이월하였고, 계약 선금을 계약예규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은 ① 어린이단속장비 운영 수량의 과다 예측으로 인하여 예산 불용 및 이·전용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예산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②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와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 설치 규모에 대하여 협의하여 경찰청에 이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감독하여 경찰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그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대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대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대안)이 의결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이 시행된 후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혁]

-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현 국가경찰 체계를 유지하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
 -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경찰신분은 국가직 유지
 - ※ 국가·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시·도지사로부터 중립성 확보
- 2021.1.1. 법 시행 후 준비된 시·도부터 시범운영 실시(~'21.6.30.)
- 제주자치경찰은 존치, 위원회에서 제주경찰청·제주자치경찰 지휘

자료: 경찰청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 및 소년범·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 등에 대한 수사사무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의 사무가 된다.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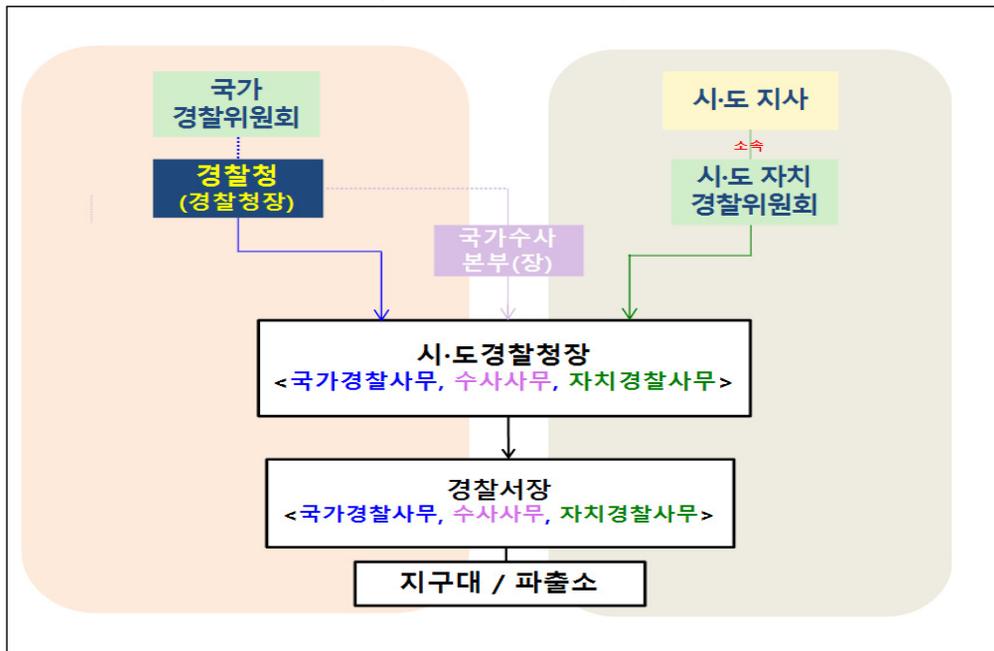
<p>◦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p> <p>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p>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p>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고, 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시·도경찰청/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담당하는 사무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 여부가 결정된다. 양자는 지휘·감독체계,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먼저,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사무의 경우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관계없이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게된다.

[경찰사무 지휘 체계도]



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되어 수사업무를 전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¹⁾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²⁾에 대해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서만 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³⁾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예산은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게 된다.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하여 임용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⁴⁾

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 자치경찰사무 중 비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7명(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 임기 3년(연임 불가) - 임명: 시·도의회2, 국가경찰위1, 교육감1, 시·도경찰위 추천위2, 시·도지사1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 공백이 없도록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경찰청장의 보충적 지원·조정 가능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의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 관련 시·도의회에서 위원장 출석요구 가능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

자료: 경찰청

1-1.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가. 현 황

자치경찰 관련 법률이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청은 2021년 예산에는 자치경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청에서 직접 집행하였다. 경찰청은 2022년 예산부터는 자치경찰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1,298억 7,600만원이다.

2022년 자치경찰지원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2021년 예산을 구분하면, 2021년 예산 중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1,134억원이다.

[자치경찰사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년 자치경찰 지원 예산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세부사업		'21년예산 (A)	'22년예산 (B)	B-A
합계		113,400	129,876	16,476
생안 국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자치)	10,680	8,892	△1,788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자치)	11,286	10,685	△601
	아동안전지킴이(자치)	54,022	64,516	+10,494
교통 국	교통안전교육홍보(자치)	4,673	4,673	0
	교통안전활동(자치)	2,919	2,994	+75
	교통과학장비관리(자치)	29,820	38,116	+8,296

자료: 경찰청

참고로, 정부가 2021년 8월 발표한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기능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어 2023년부터는 국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업 관련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¹⁾

1) 다만, 자치경찰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 3.5조원 규모가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으로 이양되어 지방재정의 충격이 예상되므로, 2026년까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계정으로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6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예산시스템과 시·도 예산시스템의 연계 구축이 되어있지 않는 등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2월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자치경찰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예산에는 자치경찰 관련 예산이 반영하지 못하였고,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경찰이 집행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의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을 시·도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시·도의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2021년 예산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청이 직접 시·도 경찰청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2021년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예산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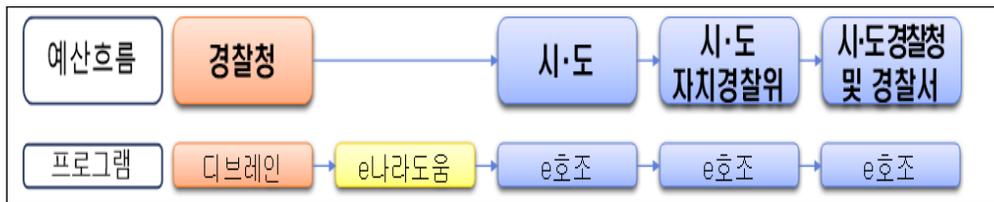
경찰청은 이에 대하여 ① 각 시·도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가 시·도 상황에 따라 불확실하였으며, ② 예산 집행을 위한 훈령 개정 및 시스템 연계 등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청이 자치경찰 관련 예산을 시·도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더라도, 시·도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도 예산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절차가 필요하다. 자치경찰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도가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인 2020년 12월에야 확정되었으므로, 시·도의 본예산에는 자치경찰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은 시·도 상황에 따라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자치경찰 관련 법률의 통과 이후 전면 시행일까지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집행을 위한 훈령의 정비, 시스템 연계 등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먼저, 자치경찰 예산은 경찰청이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시·도가 다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배정·재배정하게 된다.

[자치경찰사무 예산 흐름]



자료: 경찰청

그런데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경찰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해당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에서 시·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의 예산집행시스템(디브레인)과 시·도의 예산집행시스템(e-호조)과의 연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훈령의 정비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시·도 예산집행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일(2021.7.1.) 이후인 2021년 12월에야 완료되었다.

경찰청은 예산집행시스템의 연계 구축의 경우 전국 시·도 경찰청(18개) 및 경찰서(258개)에 e-호조 접속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으며, 훈령 개정은 행정안전부 내부 심사 절차 등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현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21.7.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3] 사업예산 운영기준 中 ‘예산 재배정’의 개념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시·도 경찰청(서) (자치경찰사무에 한함), 제1관서의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도 시·도 예산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21.12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 사무처장,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시·도경찰청(서)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업무담당관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료: 경찰청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하반기 예산 집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자치경찰 국가보조금을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경찰청의 사업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이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보이므로, 경찰청은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이를 유의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자치경찰 예산 및 업무의 구분 명확화 필요

가. 현황

경찰의 사무는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사무의 권한 체계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일반 치안행정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사무의 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에 대한 임용권은 시·도경찰위원회에 위임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역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권한 체계]

구분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일반 치안 행정사무	국가경찰 수사사무	일반 치안행정 사무			자치경찰 수사사무
			생활안전사무	교통사무	경비사무	
지휘감독	경찰청장	국가수사 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 본부장
인사	경찰청장		시·도경찰위원회 (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 임용권, 지구대 파출소 제외)			
예산 수립	경찰청		시·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			

자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경찰예산과 자치경찰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워 일선 경찰서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예산의 자치경찰사업 예산과 국가경찰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1)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치경찰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도, 유사한 사

1) 2021년의 경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이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편성대로 국가경찰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예산과 국가경찰사무 예산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에 대한 국가경찰사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은 관할구역 내 생활안전·교통·경비 및 소년범·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한 수사사무의 경우 자치경찰사무이나, 경찰청에서 정책기획이나 획일적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등은 국가경찰사무로 보아,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경찰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치경찰 지원프로그램 예산과 국가경찰사업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자치경찰 지원프로그램 예산		자치경찰지원 사업과 동일한 국가경찰사업예산	
사업명	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 주요 내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협력단체 지원 등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2,674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3,000 ·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379 · 지하철경찰대운영(수용비, 공공요금 등) 806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활동 669 · 유실물 종합관리 지원 577 · 지하철경찰대 운영(자산취득비 등) 378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활동(범죄예방교실 등) 2,583 · 위기청소년 선도(전문가 참여제 등) 3,678 · 실종예방(지문 사전등록 등) 951 · 가정폭력·아동 등 학대 근절(예방교육 등) 569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활동(청소년경찰학교 공공요금, 환경개선비 등) 1,289 ·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실종아동 찾기 등) 766 ·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모니터링) 1,231
아동안전지킴이(자치)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및 부대경비 64,434		· 아동지킴이 홍보, 현장점검 등 64
교통안전교육 홍보(자치)	· 홍보활동,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 지원	-	-
교통안전활동(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장비 615 · 교통외근용품 313 	교통안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교통부서 민원전화료 등) 9,938 · 교통장비(교통외근용품 등) 3,320
교통과학장비관리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36,901 · 음주단속장비 구매·운영 1,215 	교통과학장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우편료 등 포함) 104,399 · 음주단속장비 구매·운영 2,654

주: 2022년 국가경찰예산 교통과학장비관리는 예산편성기준인 평균운영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22년 운영장비는 총 9,996대로 국가 534대, 자치 9,482대임

자료: 2022년 예산안 경찰청 사업설명자료

그러나 실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이 아니라 각 개별관서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경우에도 국가경찰 예산사업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사무인 교통사무의 경우 각 관서에서 쓰는 공공요금, 교통경찰관에 대한 장비류 등도 국가경찰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²⁾

이에 따라 국가경찰 사업 예산과 자치경찰 사업 예산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동일한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공무원이 국가경찰 사업 예산과 자치경찰 사업 예산을 모두 집행하게 된다. 교통 관련 예산을 예시로 살펴보면, 자치경찰 사업 예산이 시·도에 보조되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시·도경찰청의 교통 관련 부서, 시·도경찰서 교통과, 지구대/경찰서로 배정·재배정되어 집행된다.

[교통 관련 예산의 국가경찰 사업과 자치경찰 사업의 예산흐름도 비교]

국가경찰 사업 예산	경찰청→시·도경찰청 교통 관련 부서→시·도경찰서 교통과→지구대/경찰서
자치경찰 사업 예산	경찰청→시·도(보조)→시·도자치경찰위 심의의결→시·도경찰청 교통 관련 부서→시·도경찰서 교통과→지구대/경찰서

실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자들은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만 담당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사무 10%, 자치경찰사무 90% 또는 국가경찰 40%, 자치경찰사무 60% 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³⁾

이러한 문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문제로도 연결된다. 자치경찰사무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에 대한 임용권은 시·도경찰위원회에 위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모두 담당하다 보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경찰사무 대비 자

2)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고속도로 순찰대는 국가사무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의 '장구류·무인단속장비·음주단속장비 등'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체납차량 적발시스템·경찰교통정보센터 등의 공공요금을 국가예산으로 분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불꽃 신호기 등 지·파출소 순찰차에서 사용하는 장비, 교통부서의 민원전화료 등 일선 경찰서에서 포함되는 공공요금과 장비류도 편성되어 있었다.

3)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II)」, 박준휘·강석구·김민영·조제성·문경환·진정일·최성락·박종승,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216,217

치경찰사무의 비율이 50% 이상인 사람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⁵⁾

명확한 구분 기준 없이 분류된 국가경찰 사업 예산과 자치경찰 사업 예산을 일선 경찰서 공무원들이 함께 집행하게 되면서, 담당자들이 사무 구분에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61.6%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간 혼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⁶⁾

따라서,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 중 정책기획이나 획일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국가경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된 제주도 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단의 명확한 업무분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전인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며,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정원 등을 조례로 정한다.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22.3.
5) 최근 울산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공무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울산자치경찰위, 임용권 범위 설정 및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위, 감독 규정 제정, 울산매일UTV, 2021.7.15.)
6) 박준휘·강석구·김민영·조제성·문경환·진정일·최성락·박종승,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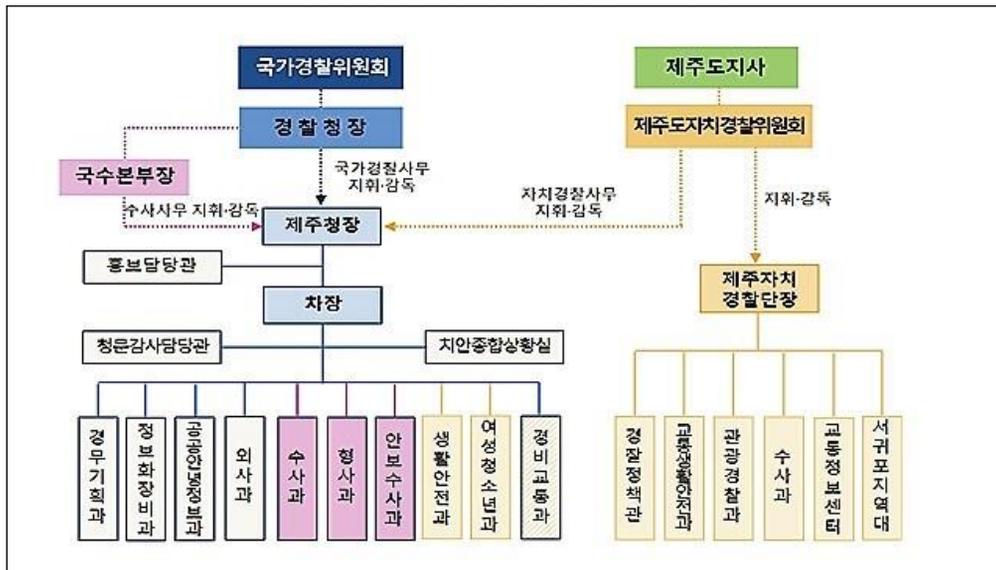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의 비교]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입연도	'06. 7. 1.	'21. 7. 1.
신분	지방직	국가직
임용권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찰청장

자료: 경찰청

2020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주도는 기존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자치경찰이 병존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기존 제주자치경찰단의 신분과 차이가 있다.

[제주자치경찰 및 제주자치경찰단 조직도]



주: 제주청장 산하조직 중 노란색 표시된 과가 자치경찰에 해당함
 자료: 경찰청

그런데, 제주자치경찰단의 업무 범위는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지역교통활동 및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이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등으로, 자치경찰 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와 그 영역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업무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5. 「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 간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의 업무분담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정원은 170명으로, 60만명이 넘는 제주도 인구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268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제주자치경찰단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관련 인력은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하였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과 도시공원을 자치경찰단 책임구역으로 한정하여 24시간 전담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112 신고·출동 사무를 수행하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사무수행 장소는 제주도 전역이고, 사무수행시간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112 신고·출동 사무는 파견인력의 복귀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양 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의 업무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위기청소년 선도 활동 사업의 치유선도 인프라 확충 필요

가. 현 황

위기청소년 선도활동 사업¹⁾은 소년법의 재범 억제 및 비행청소년·위기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선도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에 36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위기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12,882	12,882	0	0	12,882	12,746	0	136
위기청소년 선도활동	3,607	3,607	0	0	3,607	3,607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위기청소년 선도활동사업은 치유선도를 실시하기 위한 병원이 일부 지역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유선도 병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별 선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 선도활동사업은 소년법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 경찰단계 소년법 선도절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선도프로그램 운영사업에는 2021년 14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일반회계 1132-311)의 내역사업

[2021년 선도프로그램 예산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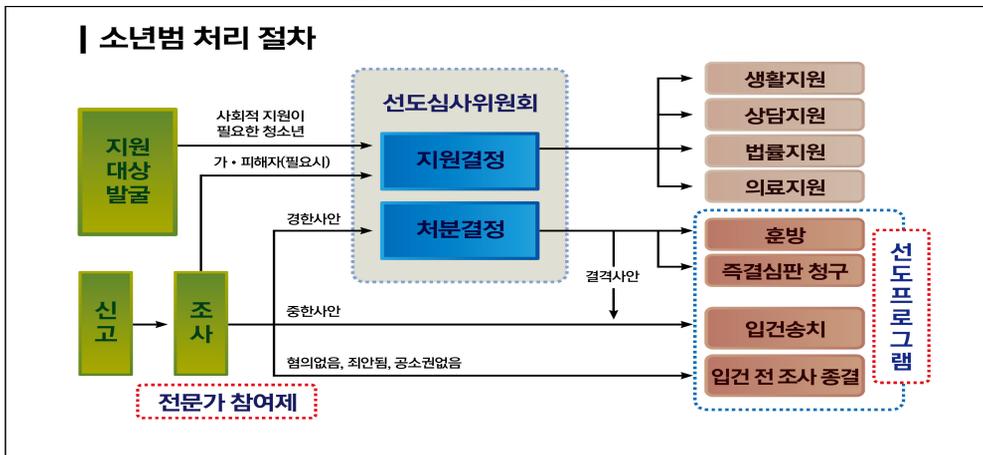
세사업 명	예산
위기청소년 선도 활동	°3,607백만원 -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1,352) - 선도심사위원회(682) - 선도프로그램 운영(1,400) - 위기청소년 발굴·지원(173)

자료: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소년범의 조기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전문가·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선도프로그램의 대상은 즉결심판 또는 훈방 대상²⁾인 경미한 소년범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가 발굴한 비행청소년 등이다. 위기청소년 또는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경찰서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찰 단계 선도절차 흐름도]



자료: 경찰청

2)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경미 소년범에 대하여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처분 등을 결정할 때 그 조건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서류에 수료증을 편철하여 이후 사법처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단계 소년사건에 대한 선도조건부 훈방의 법제화 방안』, 심명섭, 치안정책연구 2020 vol.34)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은 경찰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치유선도 프로그램 3가지 유형이 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은 경찰 자체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이며, 사랑의 교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가 집단상담·미술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치유선도프로그램은 주로 폭력성향이 나타나는 소년을 대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사가 정신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구 분	경찰 선도프로그램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치유선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학교전담경찰관(SPO)가 경찰 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가 집단상담·미술치료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상 심리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자기통제·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
선도 실시 주체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전문기관	신경정신외과 병원
진행시간	10시간		
예산	선도프로그램대상자 1명당 5만원		선도프로그램 대상자 3명 이하 100만원, 4명 이상 150만원

자료: 경찰청

2021년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0,411명이었으며, 경찰선도프로그램 6,216명, 사랑의교실 14,174명, 치유선도 프로그램 21명이다.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실시현황]

(단위: 명)

구분	참여인원	사랑의 교실	치유 선도프로그램	경찰 선도프로그램
2017년	20,092	9,559	179	10,354
2018년	25,714	12,508	214	12,992
2019년	25,940	18,929	196	6,815
2020년	23,464	15,243	56	8,165
2021년	20,411	14,174	21	6,216

자료: 경찰청

그런데, 2021년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는 경찰 선도프로그램 운영 경찰서가 없었으며, 광주울산경북 등의 지역은 치유선도 병원이 없는 등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21년 시·도경찰청 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랑의 교실	243	17	9	8	17	6	4	4	1	36	19	26	15	16	6	23	8	24	4
치유선도 (병원)	45	16	3	3	3	·	2	·	1	7	3	1	1	1	1	1	·	1	1
경찰선도 (경찰서)	173	31	15	8	5	·	6	5	1	19	12	7	9	7	13	7	2	23	3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경찰 선도프로그램은 경찰서별로 소년범 수, 학교전담경찰관(SPO)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 중이므로, 일부 경찰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사랑의 교실로 경찰선도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치유선도 프로그램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병원 중 희망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지역 내 병원의 희망 여부에 따라 미운영 지역이 발생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치유 선도가 필요한 대상자가 생길 경우 인근 지역에 연계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사랑의 교실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 선도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나, 치유선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의사 등의 정신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므로, 사랑의 교실 상담사의 상담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2021년 시·도 경찰청별 소년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청이 1,903명, 울산청이 1,771명, 경북청이 2,437명으로, 치유선도 병원이 없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년범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유선도 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치유선도 프로그램 대상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치유선도 병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시·도경찰청별 소년범 검거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72,752	66,259	66,204	64,584	54,074
서울청	12,265	11,193	10,854	9,630	7,638
부산청	6,379	5,738	5,234	4,441	3,312
대구청	3,650	3,277	3,482	3,076	2,833
인천청	4,903	4,706	4,680	4,579	3,734
광주청	2,777	2,438	2,528	2,636	1,903
대전청	2,487	2,246	2,440	2,227	1,823
울산청	1,784	1,509	1,402	1,432	1,771
세종청	0	0	322	259	342
경기남부청	14,055	12,458	12,856	12,588	9,980
경기북부청	4,637	4,745	4,569	4,650	3,982
강원청	2,147	1,881	1,692	1,704	1,543
충북청	2,387	2,171	2,288	2,328	1,820
충남청	2,990	3,087	2,723	2,640	2,432
전북청	2,400	2,399	2,080	2,344	2,108
전남청	2,284	1,973	2,167	2,457	2,265
경북청	2,954	2,620	2,731	2,798	2,437
경남청	3,630	2,986	3,333	3,718	3,338
제주청	1,012	828	821	1,066	799
기 타	11	4	2	11	14

주: 1. 음영으로 표시한 시·도경찰청이 치유선도병원이 없는 지역임
 2. 세종청의 경우 2019년에 개청되었음
 자료: 경찰청

치유선도 프로그램의 경우 경찰청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두면, 실제 집행은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발생하게 된다.³⁾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이 치유선도 운영병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은 지역별 선도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며, 치유선도 병원이 확보되어있지 않을 경우 선도심사위원회가 선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선도 프로그램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는 치유 선도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치유선도 인프라에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선도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치유선도 병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선도프로그램 대상자 1명~3명 이하 100만원, 4명 150만원 지급

가. 현황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¹⁾ 사업은 베트남에 디지털포렌식·현장감식·화재안전 분야의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랩(Lab)을 구축하고, 포렌식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예산 17억 4,300만원 중 6억 1,500만원(35.5%)을 집행하였고, 6억 2,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9,1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치안활동강화	2,194	2,194	0	0	2,194	970	703	521
·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 량강화	1,743	1,743	0	0	1,730	615	624	49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21년 공사계약이 유찰되어 불용되었음에도 기자재 공급계약과 감리계약 등을 연말에 체결하여 예산을 이월하였고, 계약 선금을 계약예규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국제협력 사업으로, 디지털포렌식 랩²⁾ 구축, 포렌식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사업으로 구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국제치안활동강화(일반회계 3133-312)의 내역사업

2) 디지털 분석 디지털 증거 분석실을 구축

분된다.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 기간·규모 : '20년~'22년(3년간) / 총 32억 3,700만원		
▶ 내용 :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에 ① '디지털포렌식LAB' 구축 및 장비 지원 ② 현장 감식 기자재 지원 ③ 포렌식·현장감식·화재교통 교육 지원(초청연수·전문가 파견)		
구 분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건축 / 기자재	1. 디지털포렌식랩 리모델링	416
	2. 디지털포렌식 LAB 내 기자재 지원	1,028
	3. 현장감식 분야 기자재 지원	740
전문가 파견	■ 인원·기간 : (경찰청) 3명x6회(2주)/(국과수) 3명x2회(2주)	138
초청 연수	■ 인원·기간 : (고위급) 10명x2회(1주) <총 20명> (실무급) 20명x5회(2주) <총 100명> ■ 기관 : 경찰청(고위급), 경찰대학·국과수(실무급)	596
비대면 연수	■ 코로나19 상황 감안, 동영상 제작 및 실시간 화상강의 (총 4회)	200
모니터링	■ 연 4회, 현지출장 모니터링 실시	119

자료: 경찰청

2021년 예산에는 전체 예산액 17억 4,300만원 중 6억 1,500만원(35.3%)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대면연수 및 사업관리 출장 추진이 어려웠으며, 디지털포렌식랩 구축 공사 계약이 유찰되면서 연내 공사 계약이 무산되어 공사비가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랩 관련 계약 현황]

세사업 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 발생 이유
디지털포렌 식랩 구축	416	28	99	289	3차례 유찰로 공사계약 무산
포렌식 기자재 지원	1,028	481	538	9	낙찰 차액
초청연수	186	59	0	127	코로나19로 고위급 초청연수만 진 행하고, 실무급 초청연수 불용
전문가 파견	40	0	0	40	코로나19 상황으로 파견불가
비대면연수	50	44	0	3	집행잔액
사업 모니터링	23	0	0	23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장 불가
합 계	1,743	615	637	491	

자료: 경찰청

그런데, 디지털포렌식랩 구축사업의 경우 공사 계약이 유찰되어 무산되고, 해당 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랩에 필요한 관급자재³⁾계약, 공사감리계약, 구축된 디지털포렌식랩에 들어갈 기자재⁴⁾ 구매 계약(이하 “공사관련계약”이라 한다)을 연말에 체결하고 선금 이외의 금액을 이월하였다.

3) 공사에 관련된 자재로서 발주기관(경찰청)이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자재로, 디지털포렌식랩 구축사업의 경우 책상 파티션 등 사무용품이다.

4) 컴퓨터, 모니터 및 디지털증거 분석용 소프트웨어

[디지털포렌식랩 관련 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일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디지털포렌식랩 구축공사		-	285	0	0	0	계약 유찰로 불용
공사 관련 계약	관급자재 계약	21.12.24	43	0	43	0	공사 계약 무산으로 이월
	공사감리 계약	21.12.30	45	0	43	2	
	디지털 포렌식랩 기자재 구매계약	21.12.28. (포렌식, 모바일) 21.12.29. (영상, 음성)	1,028	481	538	9	

자료: 경찰청

계약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관급자재·기자재는 디지털포렌식랩이 구축되어야 해당 공간에 지원되는 자재이므로, 디지털포렌식랩 구축공사가 이루어져야 집행이 가능한 계약이다.⁵⁾⁶⁾

2021년에는 디지털포렌식랩 구축공사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용되었으며, 2022년에는 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향후 디지털포렌식랩 구축공사의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찰청이 공사관련계약 예산을 이월한 것은 적절한 집행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축공사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 공사관련 계약 예산도 함께 불용하고 향후 구축공사 추진 여부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청은 2022년에 디지털포렌식랩 구축공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위해 2억 7,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공사비로 예산을 전용하였다. 경찰청은 전용한 예산으로 6.13일 착공하여 9월초에 준공할 예정이다.

5)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감리는 공사 계약이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지만, 관급자재 및 기자재 지원은 과업 특성상 공사 계약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 실제로 2022년 5월말 현재 전용한 예산으로 디지털포렌식랩 구축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관련 계약이 모두 과업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국제치안활동강화 사업 전용 현황]

(백만원)

프로그램 (코드)	단위사업 (코드)	세부사업 (코드)	~에서		~으로	
			세목(코드)	예산액	세목(코드)	예산액
국가안보 확보 (3100)	국제교류 협력활동 (3133)	국제치안 활동강화 (ODA) (312)	자산취득비 (430-01)	△275		
					공사비 (420-03)	275
합계				△275		275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동 사업은 '22년도 사업을 완수하기로 베트남과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법」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디지털포렌식랩공사의 경우 2022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전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예산의 전용 및 집행방식은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디지털포렌식랩 기자재사업의 경우 21년 12월 디지털포렌식랩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 1,900만원 중 4억 8,100만원(47.2%)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디지털포렌식랩 기자재사업이 물품 구매계약임에도 선금을 지급한 것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7) 경찰청은 공사 계약이 무산된 것은 '21. 12월로 '22년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이 완료된 시점이었고, 이에 따라 베트남과 협의된대로 '22년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계약인 경우 계약 상대방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지급 가능 계약 적용범위]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적용범위)

경찰청은 물품의 현지 설치 및 사용자 교육 등 용역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랩 기자재 사업은 컴퓨터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제안요청사항도 소프트웨어 등의 구매⁹⁾이므로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물품 구매 계약’에 해당하며, 조달계약 시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은 공사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공사가 집행되어야 집행될 수 있는 다른 계약을 연말에 체결 후 이월하고, 기자재 계약의 선금을 계약예규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9)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ODA) 영상·음성 증거분석 기자재 구매’, 입찰공고번호 20211235503-00, 2021.12.25. 공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지자체 협의 강화 및 집행률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가. 현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¹⁾ 사업은 교통안전활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 13억 9,200만원을 전액 집행(교부)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통안전활동	69,068	69,068	146	±953	69,214	65,592	577	3,04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1,392	1,392	0	0	1,392	1,392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편성 관련 사전 협의가 미흡하였고, 집행률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청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하고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은 7:3으로 국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30%(1인당 3만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331-312(교통안전활동)의 내역사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방법 상이
지원금액	10만원 이상	
지원방법	교통카드나 상품권 또는 현금 등	
국비지원비율	30%(1인당 3만원 한도)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2021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의 집행률은 96.2%로 양호한 수준이나, 충청북도 보은군·충청남도 청양군·경상남도 거창군 등은 집행률이 0%로 나타나고, 강원도 등은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나타는 등 지자체별 실집행률 격차가 있었다.

[2021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서울특별시	321.0		321.0	321.0		0	100
대구광역시	187.5		187.5	187.5		0	100
인천광역시	80.4		80.4	80.3		0	100
광주광역시	56.1		56.1	56.1		0	100
대전광역시	104.7		104.7	104.7		0	100
울산광역시	41.3		41.3	41.3		0	100
경기도	280.8		280.8	246.9		33.9	87.9
강원도	40.8		40.8	30.2		10.7	73.9
제주특별자치도	16.2		16.2	16.2		0	100
전라남도	24.6		24.6	24.6		0	100
경상북도	19.2		19.2	19.2		0	100
충청북도	보은군	2.7	2.7	0		2.7	0.0
	청주시	21.6	21.6	21.6		0	100
	제천시	9.9	9.9	9.9		0	100
	단양군	2.7	2.7	1.5		1.2	56.7
	영동군	6.0	6.0	6.0		0	100
충청남도	청양시	2.1	2.1	0.0		2.1	0.0
	홍성군	5.1	5.1	5.1		0	100
	천안시	25.8	25.8	25.8	-	0	100
	보령시	6.3	6.3	3.9		2.4	62.7
	서산시	7.5	7.5	7.5		0	100
	예산군	2.7	2.7	2.7		0	100
	당진시	1.2	1.2	0.9		0.3	75
전라북도	무주군	0.3	0.3	0.2		0.1	57.7
	전주시	40.2	40.2	40.2		0	100
	남원시	2.7	2.7	2.7		0	100
	부안군	2.1	2.1	2.1		0	100
	고창군	2.7	2.7	2.7		0	100
경상남도	진주시	19.8	19.8	19		1.0	95.0
	창원시	20.1	20.1	20.1		0	100
	창녕군	2.7	2.7	2.7		0	100
	양산시	14.1	14.1	14.1		0	100
	산청군	1.5	1.5	1.5		0	100
	밀양시	4.2	4.2	4.2		0	100
	김해시	10.0	10.0	10.0		0	100
	거창군	2.7	2.7	0.0		2.7	0.0
거제시	2.7	2.7	2.7		0	100	
소 계	1,392	0	1,392	1,335	-	57.0	96.0

주: 음영부분은 집행률 80% 이하 지자체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집행률·반납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시정조치요구를 받았고, 2021년에는 집행률, 반납추이, 지방자치단체 의사 등을 반영하여 2차 보조금을 재조정하여 교부하도록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²⁾ 그러나, 2021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볼 때, 보조금 교부 시 집행률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1년 동 사업의 지자체별 실집행률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① 경찰청의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였고, ② 국고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집행률, 반납추세 등을 교부금액의 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전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수요를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러한 사전 협의를 미흡하게 하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2차 국고보조금 교부 전인 5월말까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7개 지방자치단체 중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률이 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집행률이 0%로 나타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국고보조금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다.

2) 고려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내실화 필요(제도개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지자체별 목표인원 대비 자진반납 인원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자체별 실제 소요에 맞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이 과소 또는 과다 교부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 65세이상 면허소지자, 자진반납 추세,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를 선정하여 1차 교부 후, 매월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행률, 반납추세, 지자체 의사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하여 2차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22년도 사업부터는 3차 교부를 실시하여 지자체별 실제 소요에 맞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안을 도입 	<p>조치 완료</p>

[2021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국고보조금	1차 교부금액	5월말 집행률	2차 교부금액	12월말 집행률	
서울특별시	321.0	160.5	0	160.5	100	
대구광역시	187.5	93.8	100	9.37	100	
인천광역시	80.4	38.6	0	41.8	100	
광주광역시	56.1	28.1	100	28.0	100	
대전광역시	104.7	52.4	99.4	52.3	100	
울산광역시	41.3	19.7	0.2	21.6	100	
경기도	280.8	140.4	61.0	140.4	87.9	
강원도	40.8	20.4	28.4	20.4	73.9	
제주특별자치도	16.2	8.1	0	8.1	100	
전라남도	24.6	12.3	57.7	12.3	100	
경상북도	19.2	9.6	74.2	9.6	100	
충청북도	보은군	2.7	1.4	0	1.3	0.0
	청주시	21.6	10.8	0	10.8	100
	제천시	9.9	5.0	0	4.9	100
	단양군	2.7	1.4	57.1	1.3	56.7
	영동군	6.0	3.0	0	3.0	100
충청남도	청양시	2.1	1.1	0	1.0	0.0
	홍성군	5.1	2.6	0	2.5	100
	천안시	25.8	25.8	42.6	12.9	100
	보령시	6.3	3.2	9.4	3.1	62.7
	서산시	7.5	3.8	100	3.7	100
	예산군	2.7	1.4	100	1.3	100
	당진시	1.2	6.0	0	6.0	75
전라북도	무주군	0.3	0.2	100	0.1	57.7
	전주시	40.2	20.1	0	20.1	100
	남원시	2.7	1.4	0	1.3	100
	부안군	2.1	1.1	100	1	100
	고창군	2.7	1.4	0	1.3	100
경상남도	진주시	19.8	9.9	0	9.9	95.0
	창원시	20.1	10.1	0	10.0	100
	창녕군	2.7	1.4	0	1.3	100
	양산시	14.1	7.1	19.7	7.0	100
	산청군	1.5	0.8	100	0.7	100
	밀양시	4.2	2.1	100	2.1	100
	김해시	10.0	7.5	0	2.5	100
	거창군	2.7	1.4	0	1.3	0.0
거제시	2.7	1.4	0	1.3	100	
합 계	1,392	697.0	41.0	695.0	96.0	

자료: 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국고보조금을 2021년 국고보조금을 3월과 6월에 나누어 2차례 교부하였으나, 2차 교부금액 조정 시 집행률, 반납추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보조금 교부 시 집행률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2차 교부금을 교부한 6월 당시 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19개였음에도 경찰청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금을 크게 감액하지 않고 2차 교부금액을 1차 교부금액과 유사하게 교부하였다.

또한, 2차 교부 전까지의 집행률이 같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조정규모에 차이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남도 거창군은 모두 5월말 집행률이 0%이나, 충청남도 청양군은 50% 이상 2차 교부금이 감액된 반면, 충청북도 보은군과 경상남도 거창군은 1차 교부금액과 유사하게 교부되었다.

[2021년 5월말 집행률이 0%인 지자체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명	1차 교부금액 (3월)(A)	5월말 집행률	2차 교부 금액 (6월)(B)	교부금 조정규모 (B-A)	전체 교부금액	전체 집행금액	집행률 (2021년 말)
충청북도 보은군	1.4	0	1.3	△0.1	2.7	0	0
충청남도 청양군	2.1	0	1.0	△1.1	3.1	0	0
경상남도 거창군	1.4	0	1.3	△0.1	2.7	0	0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의사에 따라 2차 교부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2차 교부 시기를 조정하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그 집행 추이를 살펴본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교부금 교부 과정에서 집행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

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액이 불용된 지방자치단체와 국고보고금이 부족해 자체 예산을 추가 지출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존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는 예산 운용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전액 불용 및 자체예산 추가집행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자체명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		국고보조금 불용금액	자체예산 집행금액
		국고보조금 집행금액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비		
국고보조금 전액 불용	충청북도 보은군	0	0	2.7	6.3
	충청남도 청양시	0	0	2.1	4.9
	경상남도 거창군	0	0	2.7	10
국고보조금 일부 미집행	경기도	246.9	1,500	33.9	0
	강원도	30.2	94.2	10.7	0
	충청북도 단양군	1.5	3.6	1.2	0
	충청남도 보령시	3.9	14.7	2.4	0
	충청남도 당진시	0.9	2.1	0.3	0
	전라북도 무주군	0.2	8.9	0.1	0
	경상남도 진주시	19	54.1	1.0	0
자체예산 추가 지출	인천광역시	80.3	188	0	112
	전라남도	24.6	163	0	37.9
	경상북도	19.2	44.8	0	90.6
	충청북도 영동군	6	14	0	16
	충청남도 서산시	7.5	17.5	0	5
	충청남도 예산군	2.7	6.3	0	7
	경상남도 김해시	10	23	0	25
	경상남도 거제시	2.7	6.3	0	1

주: 자체예산 집행금액이란, 매칭사업비 외 자체예산을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수요 및 예산에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률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사업의 운영수량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부처간 협의 강화 필요

가. 현 황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¹⁾은 무인단속장비 및 시스템을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이다. 2021년 예산 1,151억 6,800만원 중 1,088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3,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6억 3,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무인단속 장비 구매·운영	115,168	115,168	5,118	△208	120,078	108,806	1,634	9,636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첫째,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은 어린이단속장비 운영 수량의 과다 예측으로 인하여 예산 불용 및 이·전용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예산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구매·운영사업은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하는 세사업과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는 세사업으로 구분된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은 내용연수(7년)가 경과한 노후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은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이전·철거비, 우편료·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정기검사·이동식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교통안전활동(일반회계 1331-313)의 내역사업

[2021년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 세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불용사유
무인 단속 장비 구매	11,205	5,118	0	16,323	13,970	1,599	754	(이월) 장비 구매관련 조달청 계약에 기일이 소요되어 이월 (불용) 장비구매 낙찰 차액 불용
무인 단속 장비 운영	103,963	0	△209	103,754	94,836	35	8,883	(이월) 관리용역비 계 약 조달수수료 미집행 으로 이월 (불용)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지 연으로 우편료 등 공공 요금 7,686백만원 및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 1,198백만원 불용

자료: 경찰청

2021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지연으로 인하여 우편료 등 공공요금 불용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요금은 무인단속장비 단속 결과 과태료 처분 고지 등에 필요한 우편료, 무인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경찰청은 2021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 437억 9,500만원 중 337억 8,100만원(77%)만 집행하고, 76억 8,500만원은 불용을, 23억 2,800만원은 이·전용 등을 하였다.

[2021년 무인단속장비 운영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용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회선 사용료 등	43,795	0	△2,328	41,467	33,781	0	7,685

자료: 경찰청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²⁾의 개정 이전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와 개정 이후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모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³⁾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50%이다.

경찰은 2021년 예산 편성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계획에 맞추어 3,612대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실제로는 계획의 45%인 1,628대의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만 운영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우편료·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집행이 저조하였다.

[2021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황 및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대)

세사업 명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예산		무인단속장비 운영 대수	
	예산액	집행액	예산편성시 계획	실제 운영
기존 노후단속장비	29,842	29,957	9,196	9,764(평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13,953	3,824	3,612 (‘20년 설치 2,087대 + ’21년 설치 3,050대×50%)	1,628(평균)

자료: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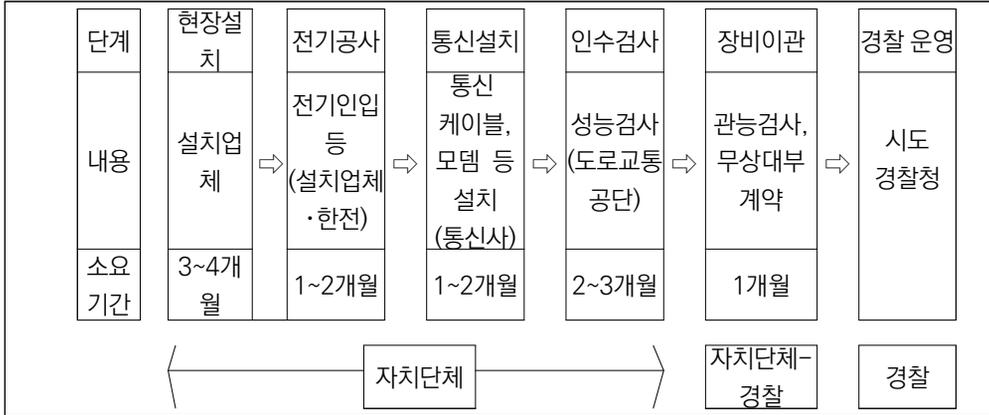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가 계획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컸던 이유는 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가 현장 설치 공사 이후에도 전기·통신 연결공사, 인수검사(성능검사) 등으로 경찰에 이관되어 운영되기까지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2)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3232-300) 사업

무인단속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공사 이후, 전기·통신 연결공사와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성능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청에 이관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2021년 기준으로 설치공사 완료 이후 4~7개월 시간이 소요되어야 경찰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 흐름도]



자료: 경찰청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누적 설치 물량은 7,808대인 반면, 경찰 운영 물량은 3,696대로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게 된 것이다. 설치 완료 이후 경찰 운영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2020년 2,052대에서 2021년 4,112대로 확대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경찰 운영 현황]

(단위: 대)

	구분	2020년	2021년
지방자치단체 설치	설치계획	2,710	5,421
	설치공사 완료	2,602	5,206
	누적 설치 물량(A)	2,602	7,808
경찰 운영	경찰 신규 운영	550	3,146
	누적 경찰 운영(B)	550	3,696
	운영 대기 물량(A-B)	2,052	4,112

자료: 경찰청

이러한 설치물량과 실제 운영물량의 차이를 고려할 때, 경찰은 2021년 예산 편성 시 무인단속장비 설치 후 인수검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면밀하게 검토 하여 2021년에 경찰이 운영하게 될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공공요금만 예산에 편성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2020년 사업 실시 시 지방자치단체 설치공사 이후 경찰이 운영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설치물량(2,602대)과 신규 물량(550대)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예산을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계획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예산의 불용 및 이·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의 운영 가능 수량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소요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와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 설치 규모에 대하여 협의하여 경찰청에 이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무인단속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공사 이후, 전기·통신 연결공사와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성능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청에 이관되는 절차를 거친다.⁴⁾ 무인단속장비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찰에 이관·운영되어야 본래의 목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2020년~2022년)로 인하여 2019년 이전에 비하여 무인단속장비 설치부터 경찰청 이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완료 후부터 경찰 이관시까지 평균 소요기간]

(단위: 개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소요기간	3~4	7~8	5~6

자료: 경찰청

4)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흐름도는 39페이지 표 참고

특히, 2020년과 2021년 도로교통공단이 한 해 동안 인수검사 가능한 물량이 설치공사 완료 건수보다 적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인수검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검사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실제로 인수검사 물량은 2020년(1,233대) 대비 2021년(3,865대)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신규 설치 물량(5,206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020년-2022년 설치공사 및 인수검사 현황]

(단위: 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획	2,710	5,421	2,794	10,925
설치공사 완료	2,602	5,206	278	8,086
인수검사 완료	1,233	3,865	1,889	6,987
인수검사 대기물량	1,369	2,818	1,341	-

주: 2022년 설치공사 완료 및 인수검사 완료 대수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경찰청

이에 따라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경찰청에 이관·운영되지 못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무인단속장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장비(7,808대)의 57.9%인 4,525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대, %)

어린이 보호구역 수	무인단속장비 설치 완료 수(A)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B)	비율(B/A)
16,759	7,808	4,525	57.9

자료: 경찰청

설치 이후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신규 무인단속장비가 본래의 목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내용연수만 지나게 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설치업체가 설치 후 2년까지만 무상으로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장비 운영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설치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 유지·관리 책임기간 역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설치 완료 이후 경찰청에 이관·운영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와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 설치 규모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경비경호활동¹⁾ 사업은 집회 시위 대응, 선거 및 국제행사 등 각종 경비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호·경비에 필요한 장비, 경비동원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예산 441억 7,700만원 중 424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다.

경비경호활동 사업에는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전기요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예산 3억 3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경비경호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비경호활동	44,177	44,177	69	231	44,477	42,433	19	2,025
전기공급시설 운영	303	303	0	0	303	303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은 일부 시설의 사용량이 저조하고, 사용량이 저조함에도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청은 전기공급시설의 위치 조정·폐지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은 경찰버스가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경찰버스가 장시간 주·정차 대기하는 경우에 공회전을 하지 않고 냉·난방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무시동 냉·난방장치가 설치된 경찰버스에 전기공급시설을 연결하면 공회전 없이 버스 내 냉난방이 가능하게 된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경비경찰활동(일반회계 2131-311)의 내역사업

[전기공급시설 활용 예시]



자료: 경찰청

2022년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공급시설은 총 98개소이다. 2019년 이전에 설치된 전기공급시설은 29개소는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의 기부금으로 설치되었다.²⁾ 경찰청은 대형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방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³⁾을 통해 64개소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에 추가로 6개소를 설치하였다.

2) 29개소 중 일부라도 경찰청이 비용을 부담한 곳은 3개소이다.

3) 2019년 추가경정예산 중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총 26억 4,060만원이다.

- 전기공급시설 26억 4,060만원 = 64개소 × 1개소당 4,126만원

[전기공급시설 현황]

(단위: 개소)

설치시기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남부	경남	제주
계	98	78	5	1	1	4	5	2	2
'18년 이전	29	29	·	·	·	·	·	·	·
'19년(추경)	63	43	5	1	1	4	5	2	2
'20년	6	6	·	·	·	·	·	·	·

주: '19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64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서울역 앞 전기공급시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사로 경찰버스 주차가 불가하여 폐지하였음('21.5.16.)

자료: 경찰청

전기공급시설 1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600만원⁴⁾이며, 그동안 경찰청이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한 예산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 26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9,400만원이었다.

[연도별 전기공급시설 설치 비용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설치시기	설치개소	경비 총계	한전 부담	경찰청 예산
계	99	3,058	264	2,794
'18년 이전	29	291	264	27
'19년(추경)	64	2,640	·	2,640
'20년	6	127	·	127

자료: 경찰청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은 해당 구역에 배치된 경찰버스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낮고 노상에 설치되는 전기공급시설로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전·철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요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

4)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경찰청이 제출한 예산편성 근거에 따른 금액이다.

구분	내용	단가
전기공급시설	공사비	36,709천원
	분전함 제작	4,300천원
	표준시설부담금	4,991천원
	소계	46,000천원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 설치 절차]

전기 공급 시설	1단계	▶ 각 지방청으로 예산 재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비용 세부내역 총 1,986만원 = 분전함 구매 495만원 + 설치공사비 713만원 + 표준시설부담금 578만원 + 도로복구비용 200만원
	2단계	▶ 각 지방청, 한전과 설치 가능 여부 협의 및 확정	
	3단계	▶ 각 지방청, 지자체에 굴착·접용 허가 신청→ 허가 ▶ 사유지인 경우 소유주와의 협의 필요	
	4단계	▶ 각 지방청, 조달절차 진행 및 업체 선정	
	5단계	▶ 업체, 설치 공사 진행 ▶ 설치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 실시	

주: 설치비용은 2022년 기준이며, 설치공사비·도로복구비용은 평균치로, 장소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
자료: 경찰청

그런데, 2021년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kWh 미만인 전기공급시설이 전체 98개소 중 31개소(31.6%)로, 그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경찰버스의 무시동 냉·난방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소비전력이 11kWh임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하루(9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용량이 100kWh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전기공급시설이 1년에 하루도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21년 연간사용량 100kwh 미만 전기공급시설 현황]

연번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1	종로 궁정교회 앞 1(청와대 인근)	16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좌측
2	종로 궁정교회 앞 2(청와대 인근)	17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우측 1
3	종로 연무관 앞(청와대 인근)	18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우측 2
4	종로 부속청사 앞(청와대 인근)	19	인천 남동 인천시청 정문 앞
5	종로 영풍빌딩 북측	20	광주 동부서 맞은편(5.18 광장)
6	종로 경복궁역 6번 출구 앞 2	21	세종 고용부~복지부 사이 1
7	종로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1	22	세종 고용부~복지부 사이 2
8	종로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2	23	세종 국토부~기재부 사이 2
9	종로 벽산광화문시대 앞	24	경기 남부 의왕 서울구치소 1
10	종로 도림빌딩 앞 2	25	경기 남부 의왕 서울구치소 2
11	남대문 시청역 1번 출구 앞	26	경기 남부 평택 K-6 함정리 게이트 앞
12	남대문 시청역 4-5번 출구 사이	27	경기 남부 평택 K-6 도두리 게이트 앞
13	남대문 한화빌딩 앞	28	경남 창원중부 시청 앞
14	남대문 SK서남주유소 앞(서울역 인근)	29	경남 창원중부 경남도교육청 앞
15	남대문 롯데시티호텔 앞	30	제주 제주도청 1청사 주차장
		31	제주 제주도청 2청사 앞

주: 음영 처리한 10개소는 2020년, 2021년 모두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kWh미만인 전기공급시설임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회시위, 국가행사 등의 감소로 경찰부대 동원 수요가 줄어들어 사용량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9년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한 이후로 2년('20년~'21년) 연속 연간사용량 100kwh 미만인 곳이 10개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공급시설 설치 당시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경찰청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청과 한전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공급시설을 사용

5) 경찰청은 경찰부대가 연중 상시 배치되는 장소, 서울 도심권 등 대규모 집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지자체 청사 등 민원성 집회가 빈발하는 장소로서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연중 경찰부대 동원 횟수 20회 이상, 타 지역의 경우 10회 이상인 곳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전기공급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후보지역을 설정하고 경비수요, 비용효율성, 안전사고 가능성, 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검토 절차를 거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年 196만원)이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사용량이 저조한 전기공급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공공요금 또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경찰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시설 관련 계약 내용]

계약내용			전기요금	
계약종별	공급방식	계약전력	기본요금(월)	전력량요금 등
일반용전력(갑)	저압(380V)	1)47kW	2)32만원	사용량에 따라 부과
1) 47kW=(경찰버스 무시동 냉·난방장치 소비전력 최대 15kW×3대)+예비 2kW				
2) 32만원 = 28.9만원(계약전력 47kW × kW당 6,160원) + 부가세				
<한전 월간 전기요금표(한전 기본공급약관 별표1)> 2-가. 일반용전력(갑) I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16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 여름(6~8월) 105.6원 봄·가을(3~5월, 9~10월) 65.1원 겨울(11~2월) 92.2원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전기공급시설 설치 시 경비수요, 비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면밀하게 검토·선정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전기사용량이 저조한 전기공급시설의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⁶⁾하는 등 기본요금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6) 계약 해지 후 3년 이내 재사용신청시에는 재사용수수료(22.7월 기준 66,000원) 부담 후 사용 가능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16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억 3,700만원이며, 28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0.7%인 11억 4,500만원을 수납하고 16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37	1,537	1,537	2,812	1,145	1,657	10	40.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52억 6,100만원이며, 이 중 93.4%인 3,599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2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85,228	385,228	385,261	359,938	64	25,259	93.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산은 6,943억 4,600만원, 부채는 131억 3,400만원으로 순자산은 6,812억 1,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41억 400만원, 일반유형자산 6,754억 8,300만원, 무형자산 93억 3,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4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27억 5,600만원(9.9%)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자산재평가, 신청사 취득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588억 9,700만원(9.6%)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1억 5,200만원, 장기차입부채 99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1억 2,200만원(227.4%) 증가하였다.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 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71억 6,600만원(254.5%)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694,346	631,590	62,756	9.9
Ⅰ. 유동자산	4,104	4,696	△592	△12.6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675,483	616,586	58,897	9.6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9,334	6,281	3,053	48.6
Ⅵ. 기타비유동자산	5,425	4,027	1,398	34.7
부 채	13,134	4,012	9,122	227.4
Ⅰ. 유동부채	3,152	1,195	1,957	163.8
Ⅱ. 장기차입부채	9,982	2,816	7,166	254.5
Ⅲ. 장기충당부채	0	1	△1	△10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681,212	627,578	53,634	8.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221억 4,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984억 8,300만원, 관리운영비 3,358억 3,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225억 9,000만원(43.3%) 감소한 4,221억 4,700만원이며, 이는 전국단위 공직선거 미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지출 감소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1개의 프로그램으로 984억 8,3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143억 7,000만원과 경비 1,214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7,400만원과 자산처분이익 5억 700만원, 기타수익 115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98,483	449,147	△350,664	△78.1
II. 관리운영비	335,833	299,195	36,638	12.2
III. 비배분비용	0	56	△56	△100.0
IV. 비배분수익	12,169	3,661	8,508	232.4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422,147	744,737	△322,590	△43.3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422,147	744,737	△322,590	△43.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275억 7,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812억 1,200만원으로 전기 대비 536억 3,400만원(8.5%)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144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3,225억 9,0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3,554억 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조정항목이 719억 9,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4,089억 4,900만원과 무상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25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794억 1,3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627,578	613,126	14,452	2.4
II. 재정운영결과	422,147	744,737	△322,590	△43.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96,369	751,774	△355,405	△47.3
IV. 조정항목	79,413	7,415	71,998	971.0
V. 기말순자산(I-II+III+IV)	681,212	627,578	53,634	8.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②재외선거관리 사업¹⁾, ③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 ④ 인건비 사업 등이 있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은 회의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수당 1억 4,600만원 감액(172억원→170억원)되었고,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공항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예상되어 2억원 감액(108억원→106억원)되었고,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은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비대면 진행에 따른 1억 200만원 감액(5억원→4억원)되었고 인건비 사업은 과거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21억 2,400만원 감액(2,194억원→2,173억원) 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선거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이 있으며, 선거전용통신망 구축비용 27억 3,000만원 증액(34억→61억원)되었다²⁾.

1)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2)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법과 원칙에 따른 완벽한 선거 관리, ②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③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위탁선거관리사업과 관련하여, ①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어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경비의 사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②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세입·세출 예산 외 경비의 집행률이 높지 않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출기준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대통령선거관리사업과 관련하여, ① 예방단속사업은 실제 소요대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대통령선거관리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대통령선거 시기 변경으로 인하여 선거경비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므로, 원활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을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위탁선거관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현황

위탁선거관리사업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경선 및 협동조합의 조합장, 국립대학 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2021년 예산 1억 7,900만원 중 1억 1,400만원(63.5%)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선거관리	179	179	0	0	179	114	0	6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대표, 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탁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게 한 취지는 공공단체등의 대표, 임원 등의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위탁선거의 유형으로는 ①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와 ② 단체가 임의적으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선거(정당,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가 있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1-306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수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해에 가장 많은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위탁선거는 2019년이었으며, 조합장의 임기가 4년임에 따라 2023년에 동시조합장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2021년 추진한 위탁선거는 개별조합장, 국립대학 총장 선거 등을 비롯하여 총 37건이었다.

[2021년 위탁선거 현황]

(단위: 개)

위탁 유형	선거명	최근 5년간 위탁선거 관리 현황						
		합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합 계	1,555	37	45	1,376	27	70	
의무	동시조합장	1,344	0	0	1,344	0	0	
	개 별 조 합 장	농협 (축협포함)	112	12	27	6	12	55
		수협	10	2	2	1	0	5
		산림	10	4	1	1	1	3
	국립대학 총장	46	12	8	15	8	3	
	대한체육회장	1	1	0	0	0	0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2	1	0	0	0	1	
	지방체육회장	3	3	0	0	0	0	
	중 양 회 장	농협	1	0	1	0	0	0
		수협	1	0	0	1	0	0
		산림조합	2	0	1	0	1	0
		중소기업	1	0	0	1	0	0
		새마을금고	2	1	0	0	1	0
	임의	신협	1	1	0	0	0	0
정비사업조합 임원		1	0	0	0	0	1	
새마을금고임원		13	0	4	5	2	2	
신용협동조합 임원		1	0	0	-	1	0	
기타		4	0	1	2	1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 관련 경비의 경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어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경비의 사례를 고려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각 위탁선거별 준비·관리, 계도·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운용은 관할위원회³⁾가 경비 산출하여 위탁단체에 통보하면, 위탁단체가 납부하고, 관할위원회가 경비를 집행 후 집행잔액을 위탁단체에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 2)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⑤ 관할위원회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를 제4항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가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3)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위원회를 말한다.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구 분	내 용	
경비부담	위탁단체	국가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 이하 운용방식 설명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통상적인 국가재정 절차
경비 산출	· 중앙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관할위원회 통지 · 관할위원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	
납부 (위탁단체 → 선관위)	· 위탁선거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 :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집행 (선관위)	·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업무별·시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중앙, 시·도위원회는 통합적 사무수행을 통한 능률적 예산집행을 위해 관할위원회로부터 경비를 납부받아 일괄집행 가능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 집행잔액으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 목적 외 집행 불가	
반환 (선관위 → 위탁단체)	· 중앙, 시·도위원회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 ·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	
기타	·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 제출(관할위원회 → 상급위원회 → 중앙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절차사무편람」

이에 따라 위탁선거관리사업 예산은 전체 위탁선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경우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국비 예산은 1억 7,900만 원이지만, 위탁단체는 국비의 7배 이상인 12억 3,7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위탁선거관리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위탁선거 수		70	27	1,376	45	37
국비		2,202	965	663	419	179
위탁단체 부담액	납부액	1,946	877	37,968	1,733	1,237
	집행액	1,460	571	22,597	1,123	908
	반환액	486	306	10,371	610	32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절차사무편람」

「국가재정법」 제17조⁴⁾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면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세출 등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⁵⁾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선거관리경비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 4)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5)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배 관련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구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19 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18 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16 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대상선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고, 선거기간이 연도 말에서 연초에 걸쳐 있는 선거의 경우 경비의 이월처리 문제 등이 있으므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⁶⁾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⁷⁾이 발의되어 있어,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재정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탁선거는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과 달리 매년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 외 운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속적으로 상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2023년에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예산 외 운용 위탁선거관리 경비가 크게 증가될 예정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위탁선거경비의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반환 등 구체적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을 전제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세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세입·세출 외 운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세입·세출 외 운용을 위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7) 의안번호 21044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0987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21년에는 위탁선거경비의 예산 내 편입과 관련된 연구용역⁸⁾을 실시하였으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1년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결산 내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⁹⁾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관리경비 결산명세서의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한 것은 위탁선거관리경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다른 세입·세출 외 운용경비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¹⁰⁾의 사례와 비교할 때, 투명성 강화 제도 마련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경우 운용계획, 심의, 운용결과 공시 등 전반적인 운영절차를 모두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영경비의 추산·납입·관리·정산·결산보고서의 위원회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법률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산명세서를 보고하는 제도¹¹⁾ 이외에도 운용계획의 수립¹²⁾, 운용위원회의 운영계획·결산명

8)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재정성과연구원, 2021.3.

9) 2022.3.30. 공문 접수.

세입·세출 예산 외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목별, 기능별 결산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10) 산림청장이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관리하는 자금으로, 복권 수익금의 5.846%를 배분받아 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1)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2)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서 등에 대한 심의¹³⁾ 등 추가적인 투명성 강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위탁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집행·반환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집행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감독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자체감사를 통해서 위탁선거관리경비가 산출·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경비의 규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비 예산보다 크다는 점, 1년에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만으로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반적인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집행 등에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¹⁴⁾ 결과에서도 국회 결산서 보고 이외에도 위탁선거경비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용계획의 수립, 운용결과 공시 등 투명성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재정성과연구원,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2021.3.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투명성 강화방안]

구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위탁선거경비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강화 ○ (개선내용) 위탁선거경비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명세서 작성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탁선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
위탁선거경비운 용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탁단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개선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연도마다 위탁선거경비의 수입·지출 등을 포함한 위탁선거경비운용계획을 마련
위탁선거경비 운용결과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내용) 결산명세서를 홈페이지 게재

자료: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재정성과연구원, 2021.3.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른 세입·세출 외 운용경비의 사례를 참고하여 위탁 선거관리 경비 전반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세입·세출외 운용에 대한 근거와 함께 법률에 규정되도록 노력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세입·세출 예산 외 경비의 집행률이 낮지 않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출기준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위탁선거관리 사업 국비 예산 1억 7,900만원 중 1억 1,400만원(63.5%)을 집행하였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 경비로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12억 3,700만원 중 9억 800만원(73.4%)를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및 세입·세출 예산 외 경비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위탁선거관리 (1131-306, 국비)	179	0	0	179	114	63.5	65
위탁선거관리경비 (세입·세출 예산 외, 위탁단체 부담)	1,237	0	±26	1,237	908	73.4	32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먼저, 위탁선거관리 사업 국비 예산은 2017년~2021년 집행률이 41.5%~69.5%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2018년, 2019년 결산 국회시정조치요구사항으로,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21년 위탁선거관리 예산은 과거 집행률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7.3% 감액된 179백만원을 편성¹⁵⁾하였으나, 2021년 역시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연도별 위탁선거관리 사업예산(국비)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7	2,202	2,202	2	△1,228	977	914	41.5	0	63
2018	965	965	0	0	965	439	45.4	0	526
2019	663	663	0	△223 134	574	461	69.5	0	113
2020	419	419	0	0	419	247	58.8	0	172
2021	179	179	0	0	179	114	63.5	0	6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국비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출장 감소 및 대면 업무협약에 제약이 있어 국내 여비 등에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소환법 개정법률안¹⁶⁾의 국회 계류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편람의 제작

15) 20년 : 419백만원 → 21년 : 179백만원 (△240백만원)

16) 의안번호 210696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8. 정부 제출

을 하지 않으면서 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비 집행 등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2020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불용 규모가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로 인한 집행 부진은 예상 가능했다고 보인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편람 제작의 경우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위탁선거관리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세입·세출 외 위탁선거관리경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업무협의 관련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였고, 위탁단체 대상 37개 단체 중 4개 단체에서 무투표 사유¹⁷⁾가 발생하여 투표관리 예산 등의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 외 위탁사업관리경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기능별(기능별 업무 사례)	납부액	집행액	반환액
선거관리일반(위원 수당 등)	262	189	73
선거운동관리(소견발표회 개최 등)	126	105	21
투 표 관 리(투표용지 인쇄 등)	313	267	46
개 표 관 리(개표소 임차 등)	115	68	47
계 도 홍 보(선거 홍보사업)	38	23	15
예 방 단 속(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364	255	109
포 상 금	0	0	0
부 가 경 비	19	1	18
합 계	1,237	908	32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 무투표 사유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 수가 1인인 때,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인 때,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 수가 1인인 때,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표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별 분야에서 집행률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 외 경비의 2017년~2021년 집행률이 64.8%~73.4%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비가 과다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위탁선거관리 위탁단체 부담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선거 수					
납부액(A)	1,946	877	37,968	1,733	1,237
집행액(B)	1,460	571	27,597	1,123	908
반환액	486	306	10,371	610	329
집행률(B/A)	75	65.1	72.7	64.8	73.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세출 외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산출기준이 202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에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세입·세출 외 경비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산출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도 적정 규모로 산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대통령선거관리사업 분석

대통령선거관리사업¹⁾은 20대 대통령선거(2022.3.9.)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예산 170억 5,800만원 중 138억 4,100만원(81.1%)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통령 선거관리	17,058	17,058	0	△3	17,055	13,841	0	3,21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7년 이후로 대통령선거는 12월에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은 항상 단년도 사업이었다. 그런데 2017. 3. 10.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7. 5. 9. 실시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시기가 변경되어 2022년에는 최초로 3월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7년 이후 대통령선거일]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1987. 12.16.	1992. 12.18.	1997. 12.18.	2002. 12.19.	2007. 12.19.	2012. 12.19.	2017. 5.9.	2022. 3.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선거가 3월에 실시되게 됨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에 실시되지만,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1년에도 일부 편성되었다.²⁾ 2021년도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은 선거일정 변동에 따라 선거관리 예산도 단년도 편성에서 2개년도 편성으로 바뀌게 된 첫 해이므로, 향후 대통령선거관리예산 편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1년 예산 규모(170억 5,800만원)는 제20대 대선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2,833억 700만원의 6% 수준이다. 제19대 대선에 집행된 금액(예비비 포함)과 2,067억 8,000만원과 비교하면, 제20대 대선에 집행된 금액은 2021년 138억 4,100만원, 2022년 2,832억 2,500만원으로, 총 2,970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제19대 대선 집행액 대비 902억 8,600만원(43.7%) 증가한 것이다.

[2007년 이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예산 편성,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제17대 대선 (2007년)	제18대 대선 (2012년)	제19대 대선 (2017년)	제20대 대선		
				2021년	2022년 예산안 (제20대)	소계
예산편성액	145,676	146,288	180,070	17,058	266,249	283,307
예비비	0	0	22,980	0	0	0
집행액	112,921	135,498	206,780	13,841	283,225	297,066

주: 2022년의 경우 집행액은 6월 말 기준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는 제도·홍보·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1년에 편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위법행위 예방단속 예산의 과다 편성 개선 필요

가. 현황

예방단속 사업³⁾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예방·안내 활동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에는 예산 45억 1,400만원 중 26억 6,100만원(58.9%)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예방단속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통령선거관리	17,058	17,058	0	△3	17,055	13,841	81.2	0	3,214
예방단속	4,514	4,514	0	△2	4,512	2,661	58.9	0	1,85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예방단속사업은 실제 소요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대통령선거관리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위법행위의 예방단속을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련 활동 정황 및 정보수집, 각종 행사 모임 현장에서의 안내·감시, 선거비용 자료수집·관리 등 단속행정 업무보조를 수행하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공간에서의 선거관련 활동 정황 및 정보수집, 불법게시물 모니터링, 디지털포렌식 조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원단은 항상 운영되는 상시지원단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집중 예방단속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거지원단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 위법행

3) 대통령선거관리(일반회계 1131-300)사업의 내역사업

위 예방·단속⁴⁾사업에서는 상시 지원단에 대한 운영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거지원단 관련 비용은 대통령선거관리, 지방선거관리 등 각 선거관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 현황]

구분	신분	법상 구성 인원수					예산편성
		구분	시기	중앙 위원회	시·도 위원회	구·시· 군 위원회	
사이버 공정 선거 지원단	일반인 채용	상시 지원단	상시 (1. 1. ~ 12. 31.)	5인 이상 10인 이하	-	-	위법행위 예방·단속 (1133-333)
		선거 지원단	선거일전 60일 (2021.1.8.)~ 선거일후 10일	10인 이내 추가 구성	-	-	각 선거관리 사업
			선거일전 120일 (2021.11.9.) ~ 선거일	-	30인 이내	-	
공정 선거 지원단	일반인 채용	상시 지원단	상시	10인 이내	10인 이내	10인 이내	위법행위 예방·단속 (1133-333)
		선거 지원단	선거일 전 60일~ 선거일 후 10일까지	10인 이내 추가	10인 이내 추가	20인 이내 추가	각 선거관리 사업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코드: 일반회계 1133-333

이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관련하여 2021년 대통령선거관리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120일 전(2021.11.9.)부터 채용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련 예산이다. 2021년 대통령 선거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예방단속사업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 등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경비, 일반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예방단속사업 예산편성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14백만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수당 및 운영경비 등 2,063백만원 - 위법행위 예방·단속 : 일반경비·단속차량 임차 등 1,477백 -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디지털포렌식네트워크 구축 등 974백
--

이 중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경비를 살펴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120일전(2021.11.9.)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당·운영경비 등으로 20억 6,300만원 편성되었다. 그런데, 예산의 53.2%에 해당하는 10억 9,8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예방단속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통령선거관리	17,508	17,508	0	0	17,508	13,841	79	3,214	452
예방단속	4,515	4,515	0	0	4,515	2,661	59	0	1,851
사이버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2,063	2,063	0	0	2,063	1,098	53.2	0	96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408명의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규모를 산출⁵⁾하였다. 그러나,

5)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건비 등 : 1,423백만원
: 최저임금(8,720원)×8시간×25일×2개월×408명
◦ 식대, 4대보험료 : 346백만원

실제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예상인원(408명)의 57%인 232명의 인원만 고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거시기에는 시·도위원회에 최대 510명⁶⁾까지 선발이 가능하여 최대 정원의 80% 수준인 408명의 선발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단계적 선발 및 지방의 인력수급 곤란 등으로 1단계로 일부의 인원만 채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산으로 선거일 120일 전(2021.11.8.)부터 선거일까지 근무하는 1단계 채용 인원을 232명만 채용하고, 2022년 예산으로 선거일 60일전(2022.1.8.)부터 근무하는 2단계 채용 인원 183명을 추가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은 예산 편성 당시인 2020년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는 점, 2020년(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1단계와 2단계로 유사한 규모로 나누어 채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소요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소속	채용인원			예산 현황	
	연도	1단계	2단계	예산액	집행액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제18대 대선	220		2,847	1,090
	제20대 국선	381		3,852	2,812
	2017 (제19대 대선)	280 *대통령 탄핵에 따라 선거가 긴급하게 실시되어 통합 채용		2,079	1,414
	2020 (제21대 국선)	253	189	4,680	3,517
	2021 (제20대 대선)	232	0	2,063	1,098
	2022 (제20대 대선)	0	183	3,686	정산 중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반경비·단속차량 임차 등 294백만원

6)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 30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침을 보면, 1단계를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를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 10일 후까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채용인원을 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단계별로 운영하였다.

[2020년, 2021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른 운영인원안]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담당업무	중앙		서울·경기		13개 시·도		특별자치시·도 (세종·제주)	
		1단계 계	2단계 계	1단계 계	2단계 계	1단계 계	2단계 계	1단계 계	2단계 계
검색요원	게시물검색	6	14	13	24	10	20	6	14
전문요원	위법성검토	2	3	3	3	2	3	1	2
	디지털포렌식	1	2	2	2	1	1	1	1
	데이터분석	1	1	1	1	1	1	1	1
합 계		10	20	19	30	14	25	9	1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이전 선거와 유사하게 단계별로 나누어 채용할 것을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소요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실제 채용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2. 대통령 선거 예산 편성 및 배정시기의 법적 정비 필요

가. 현황

현행 「공직선거법」 제277조7)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계도·홍보·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이외 경비로 나누어 편성일 및 배정일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도·홍보·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하고, 선거일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되어야 하고, 이외의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되어야 한다.

나. 분석의견

대통령선거 시기 변경으로 인하여 선거경비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므로, 원활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을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3.10.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7.5.9.에 실시되면서, 임기만료에 의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2022.3.9.로 변경되었다. 향후 탄핵·법률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3월에 실

7)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시되게 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의 예산의 편성 및 배정시기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경비는 기본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해야 하며, 계도·홍보·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하고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경비의 편성·배정 시기]

<p>1. 계도·홍보·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p>2. 계도·홍보·단속사무 외 선거에 필요한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

이에 따라 20대 대선일(2022.3.9.)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및 배정시기를 살펴보면, 계도·홍보·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계도·홍보·단속사무 이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편성연도(2022년) 이전에 해당 예산을 배정(2021.12.17.)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규정에 따른 시기	21대 대선에 적용한 시기
계도·홍보·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편성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	2021.9.10.이 속하는 연도인 2021년에 편성
	배정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배정	2021.7.12.까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배정
계도·홍보·단속사무 외 선거에 필요한 경비	편성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	2022.2.15.이 속하는 연도인 2022년에 편성
	배정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2021.12.17.까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배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거에는 선거일이 12월이었으므로 선거일전 240일, 선거일전 180일,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가 모두 동일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3월 초로 변경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도·홍보·단속사무 외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2022년에 편성함에 따라 해당 경비의 법정 배정시기는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활한 선거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 5. 28. 계도·홍보·단속사무 이외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⁸⁾도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881, 2021년 12월 14일 대표발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선거관리경비 예산의 편성·배정시기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월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에 집행이 필요한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전 120일 까지 배정하도록 하고(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는 현행 유지),
-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억 4천만원이며, 45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3.5%인 38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5,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40	2,840	2,840	4,568	3,813	755	0	83.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2021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46억 5,700만원이며, 이 중 93.4%인 2,09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73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5억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소방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0,761	220,761	224,657	209,822	7,319	7,515	93.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소방청의 자산은 5,533억 3,600만원, 부채는 1,400만원으로 순자산은 5,533억 2,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8억 8,100만원, 투자자산 3억 3,100만원, 일반유형자산 5,305억 4,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3억 6,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5억 2,300만원(1.2%)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건축물 등 자산재평가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47억 1,100만원 증가, 소방안전정보시스템 등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42억 6,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00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선수수익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1,3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53,336	546,813	6,523	1.2
Ⅰ. 유동자산	3,881	6,506	△2,625	△40.3
Ⅱ. 투자자산	331	392	△61	△15.6
Ⅲ. 일반유형자산	530,548	525,837	4,711	0.9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17,215	12,953	4,262	32.9
Ⅵ. 기타비유동자산	1,362	1,125	237	21.1
부 채	14	1	13	1,300.0
Ⅰ. 유동부채	14	1	13	1,300.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553,323	546,812	6,511	1.2
Ⅰ. 기본순자산	102,344	102,344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42,948	418,464	△75,516	△18.1
Ⅲ. 순자산 조정	108,031	26,004	82,027	315.4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960억 9,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254억 7,000만원, 관리운영비 848억 6,800만원, 비배분비용 7억 5,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2억 1,700만원, 비배분수익 137억 7,600만원을 합한 149억 9,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330억 6,800만원(81.6%) 증가한 2,960억 9,600만원이며, 이는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보조비 증가, 토지 등 자산재평가손실 관련 평가손실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383억 1,8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은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2,254억 7,000만원)으로만 구성된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83억 8,500만원과 경비 264억 8,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감가상각비 7억 5,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24,253	85,935	138,318	161
가. 프로그램 총원가	225,470	87,060	138,410	158.9
나. 프로그램 수익	1,217	1,125	92	8.2
II. 관리운영비	84,868	83,785	1,083	1.3
III. 비배분비용	752	752	0	0
IV. 비배분수익	13,776	7,444	6,332	85.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96,096	163,028	133,068	81.6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296,096	163,028	133,068	81.6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468억 1,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533억 2,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5억 1,1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960억 9,6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820억 2,7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대비 2,205억 8,0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2,244억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8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820억 2,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546,812	336,594	210,218	62.5
II. 재정운영결과	296,096	163,028	133,068	81.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0,580	373,176	△152,596	△40.9
IV. 조정항목	82,027	70	81,957	117,081.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553,323	546,812	6,511	1.2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등이 있다.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UN재등급 분류 수검 사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2023년도로 연기될 예정임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비 전액인 3.2억이 감액(437억원→434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립소방박물관건립 사업, ②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등이 있다.

소방 유물·역사를 보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548억원이 신규증액되었고, 국가 주요항만에 소방선박 도입 및 시설확충을 위해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이 118억원 증액(316억원→434억원)되었다.

소방청은 ① 재난현장대응 기반 강화, ② 빅데이터 활용 소방정책 과학화 ③ 현장대원 건강·안전 체계적 지원, ④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설치 계획과 실제 설치 사항이 다르므로 소방청은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형사다리차, 산불전문진화차 등 장비도입 시기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소방청에서 일괄하여 납품 계약하고 대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기술평가위원 수당, 장비수리비 등을 집행하는 것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방청은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사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설치 계획 미흡

가. 현 황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사업은 재난발생시 시·도 소방본부 및 유관기관 통합재난관리 통신망 지원을 위해 소방청 등에 전용회선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소방청은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억 9,600만원 중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300만원은 불용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내역사업은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으로만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	1,964	1,964	323	0	2,284	1,956	85.6	0	328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396	396	0	0	396	143	36.1	0	25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설치 계획과 실제 설치 사항이 다르므로 소방청은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방청은 2021년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내역사업 예산 편성 시 정부서울청사와 소방청 간 속도 20Mbps 회선, 정부서울청사와 중앙119구조본부 간 속도 20Mbps 회선, 정부서울청사와 4개 특수구조대 간 속도 10Mbps 회선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정부서울청사와 소방청 간 속도 100Mbps 회선,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 간 속도 100 Mbps 회선, 중앙119구조본부와 대구운영센터 간 속도 100Mbps 회선,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 회선,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소방본부 간 회선 등을 설치하여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예산을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간 연결하는 방식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도 소방본부의 기반장치(관리·녹취장치 등) 예산 미확보 등으로 시·도와 소방청 간 전용회선 연결을 통해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했고, 이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용회선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등 집행 내역을 변경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본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전용회선 연결방법 및 속도 등에 대한 계획은 2021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청은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회계연도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내역사업 결산 세부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편성내역	예산액	집행내역	집행액
- 정부서울청사↔소방청(20Mbps) 6백만원×12개월=72백만원 - 정부서울청사↔중앙119구조본부 (20Mbps) 7백만원×12개월=84백만원 - 정부서울청사↔4개 특수구조대 (10Mbps) 4개소×5백만원×12개월= 240백만원	396	- 정부서울청사↔소방청(100Mbps) 8백만원×6개월=48백만원 -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100Mbps) 10백만원×6개월=60백만원 - 중앙119구조본부↔대구운영센터 (100Mbps) 2백만원×6개월=12백만원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시·도 소방본부 3.8백만원×6개월=23백만원	143

자료: 소방청

가. 현 황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¹⁾은 대형 소방고가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기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소형사다리차 배치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방청은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57억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국고보조율 50%)하였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²⁾은 일반 소방펌프차 진입이 곤란한 산림지역에 기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산불전문진화차 배치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7억 5,0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국고보조율 50%)하였다.

[2021회계연도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 및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형사다리차 확충	5,700	5,700	0	0	5,700	5,700	100.0	0	0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3,750	3,750	0	0	3,750	3,75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2-314

2) 코드: 일반회계 1132-315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형사다리차, 산불전문진화차 등 장비도입 시기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소방청에서 일괄하여 납품 계약하고 대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방청은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과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각각 57억원, 37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동 사업들은 국고보조율 50%로 지방비 매칭 사업이다.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형사다리차 총 57대(매년 19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에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대구 등 9개 시·도는 2021년에 소형사다리차 도입을 완료하였으나 부산, 전북, 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2021년에 도입을 완료하지 못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다.

[2021회계연도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소방청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서울	300	300	300	300	0	300	297	0	3	99.0
부산	600	600	600	600	0	600	420	180	0	70.0
대구	600	600	600	600	0	600	597	0	3	99.5
인천	300	300	300	300	0	300	285	0	15	95.0
경기	600	600	600	600	0	600	587	0	13	97.8
강원	600	600	600	600	0	600	589	0	11	98.0
충북	300	300	300	300	0	300	294	0	6	98.0
충남	600	600	600	600	0	600	584	0	16	97.3
전북	300	300	300	300	0	300	204	96	0	68.0
전남	300	300	300	300	0	300	217	83	0	72.3
경북	600	600	600	600	0	600	586	0	14	97.7
경남	600	600	600	600	0	600	575	0	25	95.8

자료: 소방청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불전문진화차 총 27대(2021년 10대, 2022년 8대, 2023년 9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부산, 대구 등 8개 시·도에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세종, 충북, 충남 등 4개 시·도는 2021년에 산불전문진화차 도입을 완료하였으나 부산, 대전, 세종,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에서는 2021년에 도입을 완료하지 못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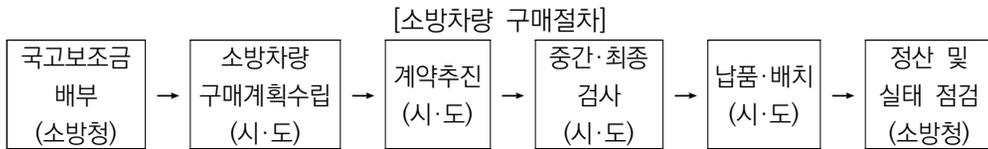
[2021회계연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소방청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부산	375	375	375	375	0	375	229	146	0	61.1
대구	375	375	375	375	0	375	356	0	19	94.9
대전	375	375	375	375	0	375	235	140	0	62.7
세종	375	375	375	375	0	375	286	89	0	76.3
경기	750	750	750	750	0	750	722	0	28	96.3
충북	375	375	375	375	0	375	253	122	0	67.5
충남	375	375	375	375	0	375	368	0	7	98.1
경북	750	750	750	750	0	750	503	247	0	67.1

자료: 소방청

소방차량 구매절차를 살펴보면, 소방청에서 시·도로 국고보조금을 배부한 후 시·도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납품·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소방청에서 정산 및 실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 소방청

소방차량 등 장비 도입 시 시·도별로 자체 계약을 통하여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로 소방차량 도입 완료 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력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도별 산불전문진화차 규격 현황]

항목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차대	볼보 FL	벤츠 유니목	벤츠 유니목	벤츠 유니목	벤츠 유니목	벤츠 유니목	벤츠 유니목	벤츠 유니목
새시	싱글	싱글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싱글
물탱크	3,500L	3,000L	3,000L	2,600L	3,000L	3,000L	3,000L	2,800L
폼탱크	400L	0	200L	200L	200L	200L	200L	200L
발전기	0	6kva 이상	5kw 이상	0	7.5kva 이상	0	5kw 이상	0
고압펌프	150m 이상	200m 이상	150m 이상	100m 이상	200m 이상	200m 이상	200m 이상	200m 이상
펌프 실히터	0	0	0	0	0	0	0	0
가열장치	0	0	0	0	0	0	0	0

자료: 소방청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소방청은 2022년부터 구매관련 매뉴얼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도와 협의해 통합구매 효과가 높은 소방장비를 선정해 중앙차원의 통합구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방청은 시·도에 배치되는 소방차량 등 구매 시 통합구매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장비가 적정한 단가, 규격으로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 현황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¹⁾은 표준화된 소방정보시스템 시·도 확산 지원, 공공헬기 공공활용시스템 구축,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119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소방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방청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38억 7,300만원 중 88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6,400만원은 불용하였다.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²⁾은 소방청 홈페이지, 업무포털, 성과관리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방청은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5억 7,200만원 중 15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정보 시스템 구축	12,670	12,670	1,203	0	13,873	8,869	63.9	4,240	764
소방행정 정보화	1,572	1,572	0	0	1,572	1,503	95.6	0	6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50-500

2) 코드: 일반회계 1150-506

나. 분석의견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기술평가위원 수당, 장비수리비 등을 집행하는 것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방청은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사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과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각각의 낙찰차액 11억 4,600만원, 8,400만원 중 4억 400만원, 1,4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과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지침」에서 낙찰차액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해석하여 감리비, 조달수수료 이외에 조달평가수수료, 기술평가위원 수당 등에도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한 119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의 감리비 6,200만원을 소방안전정보시스템 4차 구축 내역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집행한 것도 낙찰차액 사용이 가능한 감리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청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년도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소방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소방정보시스템,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유지관리	3,369	284	- 조달평가수수료(2) - 조달수수료(22)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장비교체 및 고도화사업	410	23	조달수수료(3)
	2021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HW2	176	0	-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8	0	-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 고도화 ISP	190	10	조달수수료(4)
	2021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127	3	조달수수료(1)
	소방 비상위성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및 지구국 설치사업	357	63	조달평가수수료(2) 조달수수료(3)
	2021년도 비상위성통신망 유지관리 용역	49	12	- 조달평가수수료(2) - 조달수수료(1) - 장비수리비(1)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670	20	조달수수료(5)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용역	62	15	불용
	소방안전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	2,622	537	- 기술평가 수당(4) - 조달수수료(19) - 감리용역(156) - 119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감리용역(62)
	소방안전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156	5	불용
	소방안전정보시스템 4차 구축 상용SW	307	0	-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	585	73	- 감리용역(52) - 평가위원수당(1) - 조달수수료(7)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52	0	-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200	15	- 조달수수료(1)	

세부사업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건축 소프트웨어 구매(쇼핑몰) 화학재난 통합대응시스템(1차) 건축사업	380	73	- 조달수수료(5) - 감리용역(50)
	화학재난 통합대응시스템(1차) 건축사업 감리용역	50	13	조달수수료(2)
	합계	9,770	1,146	404
소방행정 정보화 (정보화)	2021년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 유지관리 위탁용역	243	19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 유지관리 위탁용역 조달 수수료(2) 및 기술평가수 당(2)
	2021~2022년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562	23	사이버보안관제센터 보 안관제 위탁용역 조달수 수수료(5) 및 기술평가수당 (2)
	2021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257	8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 스템 유지관리 조달수수 료(2)
	소방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45	34	소방 지능정보화 전략계 획수립 조달수수료(1)
합계	1,207	84	14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67-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